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5-42호

2015년 9월 10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규 칙

전라남도 규칙 제3074호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전라남도 훈령 제1340호 전라남도 119안전종합상황실의 근무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남도 훈령 제1341호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라남도 훈령 제1342호 전라남도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폐지규정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0호 감동지구(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지세목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1호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2호 2015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5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738호 측량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746호 전라남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말소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74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755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757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시군 행정

목포시 고시 제2015-18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2-6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5-18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03호)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목포시 공고 제2015-85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국도시점소공원/화장실)사업 실시계획 공고
여수시 고시 제2015-218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5-219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시 공고 제2015-1558호	여수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광양시 고시 제2015-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15-166호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구례군 고시 제2015-42호	구례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성군 고시 제2015-61호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군 고시 제2015-85호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진군 공고 제2015-365호	강진 군계획시설(중로 2-10)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규칙 제3074호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를 “위원장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119안전종합상황실 근무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훈령 제1340호

전라남도 119안전종합상황실의 근무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남도 119안전종합상황실 근무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119안전종합상황실의 근무 및 운영규정”을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의 근무 및 운영규정”으로 한다.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의 근무 및 운영규정

제1조 중 “119안전종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119안전종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19안전종합상황실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2항 중 “방호구조과장”을 “방호예방과장”으로 한다.

제25조의 제1항 중 “종합상황실”을 “119상황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상황보고처리		
긴급 <input type="checkbox"/>	보고 <input type="checkbox"/>	참고 <input type="checkbox"/>
1차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차 <input type="checkbox"/>	3차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문자 <input type="checkbox"/>	FAX <input type="checkbox"/>
1분내 <input type="checkbox"/>	3분내 <input type="checkbox"/>	지역책임 <input type="checkbox"/>

전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061)286-0900, 팩)061-286-0910

수 신 : 수신처 참조		보고일시 : . . . :	
참 조 :		작 성 자 :	
발 신 : 전남119종합상황실		보고책임자 :	
발 신 지	전남소방본부	접수시간	. . . :
제 목			수 신 처
1. 화재발생 개요 ○ 일 시 : . . . () : ※ ○○센터 km, 본서(현장대응단) km ○ 장 소 : ○ 대 상 : ○ 소 유 자 : ○ 원 인 : ※ 개 요 : 2. 피해상황 ○ 인명피해 : ○ 재산피해 : - 부동산 : m ² - 동 산 : 3. 동원상황 ○ 인 원 : 명(소방 , 경찰 , 기타) ○ 장 비 : 대(펌프 , 구조 , 지휘 , 탱크 , 기타) 4. 조치상황 ○ ○ ○ ○ 5. 기 타 ○ 날씨	청 와 대		
	국무총리실		
	국 민 안 전 처		
	장 관		
	차 관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상황센터	○	
	기 타 기 관		
	행정자치부		
	국 정 원		
	검 찰 청		
	시 . 도		
	시장·도지사		
	부시장·부지사		
	소 방 본 부 장		
상 황 실			
보 도 기 관			
K B S			
M B C			
S B S			
Y T N			

[별표 2]

119종합상황실의 근무방법(제7조제2항 관련)

○ 다음의 3교대제 근무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를 우선 실시한다.

- 「주간-주간-주간-야간-휴무-야간-휴무-야간-휴무」 방식
-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방식
- 「주간-야간-비번-휴무」 방식

※ 「휴무」는 대형재난사고에 따라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번 활동 없이 24시간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훈령 제1341호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연·사회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 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임무) ①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 이라 한다)은 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상시에는 재난상황통신담당이, 재난상황 발생시에는 자연재난과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상황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의 현황파악, 상황유지 및 보고
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3. 재난상황의 상급기관 보고 및 관계 지방행정기관·단체 등에 전파
4. 시군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5. 주요 재난 발생시 관계부처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6.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도민안전실장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② 자연재난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관하여 도민안전실장을 보좌하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을 관장한다.

제 2 장 상황실 운영 등

제5조(운영) 상황실은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제6조(근무반 편성) ① 제3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이하 “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한다.

② 근무반은 1개반 2명씩 3개조로 편성·운영한다.

③ 상황실장은 5급으로 하고, 상황반원은 6급 이하로 한다.

제7조(상황실 근무) ① 근무반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하고, 48시간 휴식한다.

② 당일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 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③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실장은 도민안전실장의 지휘를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연말연시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④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수칙 및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

제8조(근무자의 복무) 상황실 근무자는 “별표1” 의 근무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상황 보고 및 전파

제9조(상황 보고 및 전파 등) ① 상황실 또는 수습주무부서에서는 재난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없이 재난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상황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최초보고 : 재난 등의 상황을 처음 인지한 상황실 또는 수습주무 부서에서 재난 등의 발생 개요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를 말한다. 【별지 1호 서식】
- 2.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 등의 수습상황을 수습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를 말한다.
- 3. 최종보고 : 재난 등의 상황수습이 종료된 후 수습주무부서에서 재난 등의 상황에 대한 수습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하는 보고를 말한다.
- 4. 최초보고는 상황실장 또는 수습주무부서장이 하고,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는 수습주무부서장이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재난유형에 따라 관련 부서, 해당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없이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0조(기록유지) ① 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 의 서식에 의한 일일상황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③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 하여야 한다.
- ④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하여 주요 재난에 대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유형별·상황단계별 행동메뉴얼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처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관련 정보 공유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12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① 상황유지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상황유지 업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급식제공) 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황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의 근무환경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의 정비·개선을 위한 비용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상황실은 재난상황 관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황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재난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상황실 근무수칙

□ 근무시간 : 08:00 ~ 익일 08:00(3교대 근무)

□ 준수사항

- 근무반은 지정 근무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상황 인수·인계
 - 상황실장은 자연재난과장, 도민안전실장에게 상황보고 및 근무신고
- 반장은 재난상황 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보고
 - 대형 재난 또는 긴급 사안인 경우, 상황접수 즉시 자연재난과장, 도민안전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에게 보고
 - 휴무일인 경우에는 간부자택(관사)에 전화보고 후 별도 보고서 작성 보고
 - 시·군상황실, 119종합상황실, 관련부서 등에 구체적인 상황확인 및 필요조치 강구
- 반장은 인명구조, 민방위경보발령 등 긴급조치 필요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구조요원·장비 등 동원 요청
 - 상황진행 내용을 일정시간대 별로 계속 파악보고 및 기록유지
 - 상황접수 누락, 보고 및 조치 지연 사례가 없도록 확인 철저
 - 대규모 재난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에는 자연재난과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직원비상 소집 조치

【 별표 2 】

상황실 근무자 업무분장

- 상황실장
 -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지휘
 - 주요 재난상황 보고 및 수명사항 조치
 - 각종 재난에 대한 종합판단 및 시·군 상황보고 지휘

- 반 장
 - 재난상황 신고, 접수 및 전파
 - 주요 재난상황 파악 및 요약정리 보고
 - 재난상황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비상연락 소집
 -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실장 업무 보좌

- 반 원
 - 재난상황 신고, 접수 및 전파
 - 상황실 근무일지 작성
 - 시·군 상황근무자 파악 및 근무상황 확인 점검
 - 상황실 내 시설·장비 유지 관리

【별지 제1호 서식】

재난 발생 상황 보고

- 년 · 월 · 일(요일) 시간,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

(사고개요 요약, 2-3줄)

□ 사고개요

- 출 처 : 접수일시 및 보고기관 · 파악매체 등
-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간
- 장 소 : 주소, 도, 시, 구, 동, 번지, 회사명, 대표자명 등
- 피해내용
 - 사고원인 및 사고시설, 고장설비
 - 인명 · 재산, 국민생활 · 산업활동 영향 등 피해내용
- 파급피해 · 영향 : 2차 유발사고 내용, 피해, 영향

□ 조치사항

- 시간대별 대응조치사항, 복구인력 · 장비 동원, 복구내용 등

□ 향후전망 및 대책

- 파급피해 · 영향, 복구완료 예상시기, 및 추가 조치계획 등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재난안전상황실 일일 상황근무 일지

근무자 현황

직 급	성 명	근무일시	비 고

상황 접수(NDMS, 유선, FAX 등) 및 전파 현황

구분	접수	전파	미 전파	비고
계				
0월 0일				
0월 0일				

종합 상황관리 (자연재난 : 예보, 주의보, 경보, 등)

구분	발효 일시	발 효 지 역	조치사항	전파 일시	전파 부서	비 고

주요재난 상황전파

접수 매체	사고 유형	발생 일시	접수 일시	발생 장소	재난상황	전파 일시	전파 부서 (유관기관)

주요 처리사항

○

인수·인계사항

○

전라남도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훈령 제1342호

전라남도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폐지규정

전라남도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0호

감동지구(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지세목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에서 시행중인 감동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감동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3. 사업목적 및 개요
 - 목적 : 노후 저수지 개보수와 용수로 현대화로 재해 사전 예방 및 영농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동촌리, 대곡리 지내
 - 수혜면적 : 321.9 ha
 - 사업내용
 - 저수지 2개소
 - 양수장 1개소
 - 부대공사 : 1식 (가설사무실 등)
 - 공사기간 : 2012. 12 ~ 2016. 12.(4개년)
 - 사 업 비 : 6,205백만원
4. 시행(변경)계획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역개발부(☎061-850-25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토지 세목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리동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의 종류
합계				1필지		845	845					
1	보성	조성	동촌	482-5	답	845	845	손행명 (지분11분의3) 안중빈 (지분11분의2) 안선경 (지분11분의2) 안선희 (지분11분의2) 박영호 (지분77분의14)	순천시 저전동 60-1 알파크맨션 203 순천시 저전동 60-1 알파크맨션 203 순천시 해룡면 장성배기길 272, 602동107호 (부영아파트) 순천시 연향동 1515 중흥파크에스클래스빌 503-203 보성군 조성면 조성수촌길 52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1호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4-188호(2014 6. 26)로 고시한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1.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고시 조서 : 다음
2. 관계 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광양시청 택지조성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

I. 개발계획(변경) 승인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일원

나. 면적 : 636,55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POSCO 후관공장 등 광양제철소의 지속적 설비 확장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대책 필요

○ 제철 연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 종사자 및 부양인구를 위한 안정적인 택지 공급

○ 기존 광양제철 배후주거단지(금호동 일원) 및 중마동 신시가지 일대 수변공간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 중마동 일대 도시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대상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균형적 개발 추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광양시장

나. 소재지 : 광양시 시청로 33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2014. 6) ~ 환지처분일(2018. 5. 30)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36,550	100.0	
주거용지	311,668	49.1	
단독주택용지	124,269	19.6	
일반형	113,702	17.9	
블록형	10,567	1.7	
공동주택용지	127,878	20.1	
준주거시설용지	59,521	9.4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도시기반시설용지	324,882	50.9	
공 원	38,455	6.0	
근린공원	31,785	5.0	2개소, 공원내 저류지중복결정(2,846m ²)
어린이공원	6,670	1.0	4개소
녹 지	78,803	12.4	
원층녹지	45,576	7.2	
연결녹지	6,248	1.0	
경관녹지	26,979	4.2	
교육시설	27,152	4.2	
초등학교	14,120	2.2	1개소
중학교	13,032	2.0	1개소
광장	3,186	0.5	1개소
주차장	7,639	1.2	7개소(노외주차장)
도 로	169,647	26.6	
일반도로	163,910	25.7	
보행자도로	5,737	0.9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① 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비고
합 계			-	87	11,755	169,647	
일반 도로	소 계		-	56	10,835	160,553	
	광로	소계	-	1	392	1,117	
		2류	50-53	1	392	1,117	
	대로	소계	-	5	2,394	71,379	
		2류	30-36	2	1,389	45,249	
		3류	26	3	1,005	26,130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비고
일반도로	중로	소계	-	25	4,343	56,769	
		1류	20	1	126	2,520	
		2류	15~18	5	1,071	16,497	
		3류	12	19	3,146	37,752	
	소로	소계	-	25	3,706	31,288	
		1류	10	8	1,564	15,640	
		2류	8	15	1,770	14,160	
		3류	4	2	372	1,488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	31	920	5,728		
	소로	소계	-	31	920	5,728	
		2류	8	4	104	832	
		3류	6	27	816	4,896	
기타						3,366	가각부

②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		7,639	
주차장	주1	마동 산18-16입	857	
주차장	주2	마동 137-133답	1,251	
주차장	주3	마동 99대	1,176	
주차장	주4	마동 46전	1,619	
주차장	주5	마동 산21-20입	915	
주차장	주6	공유수면	1,257	
주차장	주7	공유수면	564	

③ 광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		3,186	
교통광장	광1	광영동 산18-2	3,186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①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		38,455	
근린공원	근1	공유수면	17,868	
근린공원	근2	공유수면	13,917	
어린이공원	어1	마동 산20-1입	1,654	
어린이공원	어2	마동 141-1답	1,506	
어린이공원	어3	마동 137-42답	1,785	
어린이공원	어4	마동 137-96답	1,725	

② 녹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합 계	-		78,803	
완충녹지	완1	광로2-8호선변	14,765	
완충녹지	완2	대로 2-1호선변	24,412	
완충녹지	완3	대로2-26호선변	5,046	
완충녹지	완4	마동 184-1답	1,353	
완충녹지	완5	마동 산24-5입	-	
연결녹지	연1	마동 산21-23입	186	
연결녹지	연2	마동 33-26답	2,021	
연결녹지	연3	마동 39-24대	505	
연결녹지	연4	마동 38-4전	516	
연결녹지	연5	마동 65-2도	345	
연결녹지	연6	마동 90-1입	345	
연결녹지	연7	마동 139-3대	805	
연결녹지	연8	마동 144-6대	1,045	
연결녹지	연9	마동 144-1전	480	
경관녹지	경1	공유수면	7,772	
경관녹지	경2	마동 118-7전	3,905	
경관녹지	경3	마동 산24-5입	15,302	
경관녹지	경4	마동 산16-44입	-	

3)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① 학교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		27,152	
학교	초1	마동 산25-1입	14,120	
학교	중1	마동 137-110답	13,032	

4)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우수지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		2,846	
저류시설	유1	공유수면	2,846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다음

○ 토지 등(토지)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토지 등(물건)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광양시청 택지조성과(061-797-3431)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와우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일원	636,550	-	636,55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와우2지구	와우지구 일원	636,550	-	636,550	09.07.13 (최초결정)

- 토지 등(토지)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토지 등(물건)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내용	
합 계(174건)											
1	마동	39-20	소계				박진화	전남 광양시 와우길 96-18 (마동)	국 (기획재정부)	토지소유자	미등기
			주택	brick 세멘기와	79.51	m ²	박진화				
			상가	brick스라브	16.8	m ²	박진화				
			보일러실	brick스레트	4.83	m ²	박진화				
			화장실	brick스라브	5.25	m ²	박진화				
			담장	brick	9	m ²	박진화				
			담장	brick	5.6	m ²	박진화				
			계단	brick	0.56	m ²	박진화				
			차양	판넬	6.12	m ²	박진화				
			바다포장	콘크리트	8	m ²	박진화				
			장독대	Con'c	0.65	m ²	박진화				
			물탱크	Con'c	2.4	m ²	박진화				
			대문	철재	1	식	박진화				
			문주	brick	1	식	박진화				
			기름보일러		1	EA	박진화				
			평상	철재	2	EA	박진화				
			화단경계석1	적벽돌	1.5	m ²	박진화				
			화단경계석2	적벽돌	0.96	m ²	박진화				
			감나무	20년생, H5.0	7	주	박진화				
			천리향	H2.0	3	주	박진화				
			치자나무		1	주	박진화				
			느릅나무		1	주	박진화				
			철쭉나무		1	주	박진화				
			회양목		4	주	박진화				
			금목서		1	주	박진화				
			동력분무기		1	대	박진화				
			정미기		1	대	박진화				
			양수기		1	대	박진화				
2	마동	41-1	소계				이연기	전남 광양시 와우길 151 (마동)	국(건설부)	토지소유자	미등기
			방	조립식판넬	16.23	m ²	이연기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와상(고정식)	목재	4	식	이연기				
			바닥돌	자연석	8	m ²	이연기				
3	마동	45	소계				이연기	전남 광양시 와우길 151 (마동)			
			주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114	m ²	이연기		동광양농업 협동조합장	근저당권자	
			주택	목조 석고 보드형글	21	m ²	이연기				
			보일러실	적벽돌 스타브	2.3	m ²	이연기				
			보일러실	조립식 판넬형글	0.8	m ²	이연기				
			견사	적벽돌형글	1	m ²	이연기				
			담장	브릭	3.4	m ²	이연기				
			담장	적벽돌	19.5	m ²	이연기				
			수도대	Con'c	2.1	m ²	이연기				
			발코니	적벽돌,Con'c	8.1	m ²	이연기				
			조경석축	조경석축	193	m ²	이연기				
			울타리	목조	26.53	m ²	이연기				
			울타리기초	Con'c	1.98	m ²	이연기				
			대문	목조	2	식	이연기				
			대문철장식	철재	1	식	이연기				
			문주	적벽돌	0.54	m ²	이연기				
			기름보일러		1	EA	이연기				
			정화조		1	EA	이연기				
			난간	철재	3	식	이연기				
			평상	목재	1	EA	이연기				
			화단	조경석	151.6	m ²	이연기				
			조경석	0.6*0.7*0.4	98	EA	이연기				
			화단경계석	자연석	6.85	m ²	이연기				
			잔디	잔디	269	m ²	이연기				
			선인장	10년생, H0.3	100	주	이연기				
			철쭉나무	15년생, HL5	73	주	이연기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내용	
			감나무	15년생, H3.5	5	주	이연기				
			감나무	10년생, H3.0	3	주	이연기				
			향나무	17년생, H3.0	26	주	이연기				
			향나무	7년생, H2.0	12	주	이연기				
			동백나무	17년생, H2.0	8	주	이연기				
			사철나무		60	주	이연기				
			천리향	17년생, HL5	2	주	이연기				
			천리향	15년생, HL5	1	주	이연기				
			천리향	7년생, HL0	2	주	이연기				
			천리향	5년생, HL0	2	주	이연기				
			소나무	20년생, H2.5	2	주	이연기				
			금송	20년생, HL5	3	주	이연기				
			금송	15년생, HL5	2	주	이연기				
			금송	7년생, HL0	11	주	이연기				
			황금송	8년생, HL5	5	주	이연기				
			황금송	6년생, HL5	2	주	이연기				
			묘목	3년생, H0.5	100	주	이연기				
			돌탑		4	EA	이연기				
			육송	12년생, HL5	3	주	이연기				
			홍송	6년생, HL5	3	주	이연기				
			무궁화나무	12년생, H2.5	32	주	이연기				
			백일홍	5년생, HL5	2	주	이연기				
			물앵두나무	15년생, H4.0	1	주	이연기				
			물앵두나무	3년생, HL0	1	주	이연기				
			사과나무	17년생, H3.0	1	주	이연기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내용	
			감나무	15년생, H5.0	1	주	이연기				
			피라칸사스	15년생, H3.5	1	주	이연기				
			돈나무	5년생, H1.0	9	주	이연기				
			석류나무	20년생, H4.0	1	주	이연기				
			아왜나무		7	주	이연기				
			소사나무		1	주	이연기				
			주목나무		1	주	이연기				
			조경등		3	식	이연기				
4	마동	56-35	소계				이연기	전남 광양시 와우길 151 (마동)	국 (기획재정부)	토지소유자	미등기 건물
			상가및사무실	브릭치장 벽돌스레트 스라브	260	m ²	이연기				
			창고	브릭목조 스투트	27.06	m ²	이연기				
			창고	목조스레트	10.6	m ²	이연기				
			창고	브릭스레트	6	m ²	이연기				
			담장	브릭	1.68	m ²	이연기				
			프락1	Con'c	24.2	m ²	이연기				
			프락2	Con'c	4.9	m ²	이연기				
			석축	자연석	90	m ²	이연기				
			기름보일러		1	EA	이연기				
			연탄보일러		1	EA	이연기				
			영업권	브로이카구, 416-21-13442	1	식	이연기				
			사철나무	5년생, H2.5	3	주	이연기				
			컨테이너	3*6	1	식	이연기				
5	마동	167-11	소계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전남 광양시 백운로 1331 (마동)			
			사무실(1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11.8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광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보일러실	브릭조합판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사무실 (2층숙소)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71.5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광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사무실(옥탑)	철근 콘크리트 스타브	19.5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광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계단	스텐	1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배수관(옥상)	스텐	3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기계실	철근콘크리트	40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기계실보호대	철재, 150mm강관	3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웬스	강관 아연도철선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케노피	철골기둥 콘크리트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간판	철재	2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조명등		6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물탱크 (비상용)	콘크리트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스프링클러 설비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주유기	복식	2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주유원 대기부스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액중펌프 제어판	(사무실내, LP G전기판넬)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비상발전기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기름보일러		1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영업권	416-81-60371 소매, 엘피지 충전소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담장 (가드레일)	철근 콘크리트	71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옹벽	핀블록	833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토지에 포함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내용	
			계단	콘크리트	66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옹벽 (담장보호용)	철근 콘크리트	65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담장 (진입유도용)	철근 콘크리트	62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바닥	Con'c	1452.3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배수로(물홈)	철제덮개	17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화단1	블록	52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화단2	도로경계	30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철쭉나무	10년생, H0.5	320	주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소나무	H8	1	주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반송	5년생, H0.5	5	주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사철나무	5년생, H0.5	6	주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매실나무	4년	30	주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동백나무	10년생, H2.0	10	주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가로등	D80, H2.6	4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CCTV		4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전광판	LED(0.4*2.0)	0.8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전광판	LED(0.4*0.8)	0.56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폴사인	스테인레스 스틸(5*5)	1	개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입간판	스테인레스 스틸(0.8*2.0)	1	개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현수막설치대	스텐	25	m ²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세차기하우징	5.4*5.1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차량감지기 센서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세차기 (물탱크등 시설물포함)	3.6*3.6	1	대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물탱크 (세차용)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차량하부 세척모터	전동식	1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차량하부 세차 노즐	철재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세차기 유도레일	철재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세차 모터기	3상유도 전동기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컴프레샤	3.7KW (SYCA-2365)	1	EA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배전,분전반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오폐수처리기	진영환경 제작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오폐수 처리 흡	철재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기계실	판넬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LPG 저장탱크	20t	1	식	(유)제철엘피지 충전소				
6	마동	39-20 앞 공유 수면	소계				박진화	전남 광양시 와우길 86 (마동)	국 (기획재정부)	토지소유자	
			창고	목조합석	11.2	m ²	박진화				
			우산각	철재	6.25	m ²	박진화				
			계사	철재	4.8	m ²	박진화				
			컨테이너	컨테이너	19.2	m ²	박진화				
			감나무	15	3	주	박진화				
			복숭아나무	10	1	주	박진화				
			매실나무	10	2	주	박진화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자두나무	10년	1	주	박진화				
			대추나무	15년	1	주	박진화				
			동백나무	8년	2	주	박진화				
			철쭉나무	3년	1	주	박진화				
			배나무	3년	3	주	박진화				
			석류나무	15년생, H3.0	1	주	박진화				
			담장	그물망	1	식	박진화				
			울타리	철재	1	식	박진화				
			닭장	그물망	1	식	박진화				
			닭		23	마리	박진화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2호

2015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15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 평야부 우량농지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시설계량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명 : 신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위치 : 전남 강진군 신전면 용화리 외 2개리
 - 사업면적 : 216ha (수혜면적187.0ha)
 - 사업비 : 5,545,152천원(국비 4,436,122, 군비 1,109,030)
 - 사업기간 : 2015. 10월 ~ 2016. 5. 30일(8개월)
 - 시행자 : 강진군수
3. 사업효과
 - 농지의 집단화에 따른 현대화 등으로 영농편익 도모
 -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 경쟁력 제고
4. 세부내용
 -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는 강진군 안전건설과(☎ 061-430-33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5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897호선	노선명	송광~북흥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5m (0.43km)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변경 지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등 				
비 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시 점	종 점	중 요 통과지	총연장 (km)
결 정	지방도	897호선	송광~북흥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7,256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63-4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18-3	-	0.4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송광사진입도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 등 권리의 명세서 :

○ 편입토지 : 34필지 / 7,256㎡

5. 설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장 소 :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 061-286-7442)

순 천 시 도 시 과 (☎ 061-749-6315)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98	중로1-7호선	송광면 신평리1-1	일반 도로	-	09.03.2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98	중로1-7호선	송광면 신평리1-1	일반 도로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	소로3-1	· 일부구간 폭원변경 (L=489m, B=16m)	· 기존도로에 있는 송광사산문 및 왕벚나무를 존치하기위해 녹지분리대를 설치하여 일부구간 폭원을 변경하는데 그 사유가 있음.

편입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 명	주 소	
1	영광	군서	만곡	263-5	잡	959	14	국	환경부	
2	영광	군서	만곡	265-1	답	176	19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3	영광	군서	만곡	273-8	답	10	10	공	순천시	
4	영광	군서	만곡	273-7	답	6	6	공	순천시	
5	영광	군서	만곡	273-1	답	1,824	518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6	영광	군서	만곡	274	답	1,768	213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7	영광	군서	만곡	274-2	답	52	52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8	영광	군서	만곡	275-2	전	67	40	김동규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9	영광	군서	만곡	279	임	3,997	21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10	영광	군서	만곡	266-2	대	294	12	국	환경부	
11	영광	군서	만곡	267	대	182	32	국	환경부	
12	영광	군서	만곡	273-9	답	196	196	공	순천시	
13	영광	군서	만곡	270-2	답	212	212	공	순천시	
14	영광	군서	만곡	269-2	답	1,531	314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15	영광	군서	만곡	271-8	답	228	228	공	순천시	
16	영광	군서	만곡	300-2	답	506	59	송광사 영농조합법인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100	
17	영광	군서	만곡	271-1	답	314	248	국	환경부	
18	영광	군서	만곡	271-9	답	95	95	공	순천시	
19	영광	군서	만곡	1174	구	1,498	60	국	국토교통부	
20	영광	군서	만곡	299-6	답	190	190	공	순천시	
21	영광	군서	만곡	299-1	답	134	109	국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 명	주 소	
22	영광	군서	만곡	1165	천	35,148	110	국	국토교통부	
23	영광	군서	만곡	298-1	답	1,291	222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24	영광	군서	만곡	298-5	답	322	322	공	순천시	
25	영광	군서	만곡	291-1	답	1,752	461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26	영광	군서	만곡	291-5	답	443	443	공	순천시	
27	영광	군서	만곡	290-1	답	1,273	476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28	영광	군서	만곡	290-5	답	532	532	공	순천시	
29	영광	군서	만곡	289-1	답	230	198	공	순천시	
30	영광	군서	만곡	289-6	답	1,436	1,436	공	순천시	
31	영광	군서	만곡	288	답	899	104	최형식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288	
32	영광	군서	만곡	288-1	답	56	56	공	순천시	
33	영광	군서	만곡	218-1	답	938	57	최형식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288	
34	영광	군서	만곡	218-5	답	199	191	공	순천시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종별 및 시설물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m^2)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73-1	버스정류장		1동	공	순천시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부지 설치
2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73-1	매실나무	2.5*1.5 h=2m	46주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3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300-2	매실나무	2*2 h=2m	43주	송광사 영농조합법인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100	
4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91-1	매실나무	4*4 h=2.5m	110주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5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90-1	매실나무	3*3 h=2.5m	22주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6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90-1	매실나무	5*4 h=3m	94주	대한불교 조계종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7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73-4	왕벚나무	h=6m	30주	공	순천시	가로수
8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270-1	왕벚나무	h=6m	36주	공	순천시	가로수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지방도	옥곡-산내 (861호선)	108,426	광양 광영동 583-22(도)	진월 망덕리 60-24(잡)	광영동 망덕리	2.76	진월~광영간 지방도사업시행
변경			108,744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0월 ~ 2016년 9월(당초)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0월 ~ 2019년 12월(변경)

3. 편입용지조서 붙임(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지적 (㎡)	소유자	비고
1	광양 진월 망덕리	산119-84	임	985	281	백영기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76	추가
2	광양 진월 망덕리	산119-72	임	2,401	37		추가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41)

광양시 건설과(☎ 061-797-3466)

전라남도 고시 제2015-27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도로의 종류 : 지방도		노선번호 : 861호	노선명 : 옥곡-산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L=2.76km) (광양시 광영동 583-22~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60-24) · 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도로 미관의 훼손 방지 · 교통에 대한 위협 방지 		
비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738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일반현황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	비고
일반측량업	04-003358	여진개발	신경섭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12	2015.8.31.	

기술자현황

기술등급	성명	비고
특급 기술자	김연규	
초급 기능사	박진호	

임원현황

성명	주소	비고
신경섭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120번길 37, 101호(토평동)	대표이사

장비현황

구분	보유현황	등급
보유장비	○ 토탈스테이션 : 규격 SET530RK, 기기번호 141857	각도부 2급 거리부 3급
	○ 레벨 : 규격 B40, 기기번호 152421	3급

전라남도 공고 제2015-746호

전라남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말소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 말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등록업종 (번 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말소일
보수단청업 (113)	주식회사 한정건설 (유순청)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234-2	2015. 9. 3

전라남도 공고 제2015-74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제150773호)	(주)선화종합건설 (윤재성)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21	2015. 9. 4

전라남도 공고 제2015-755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구분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범위	등록일자
전문 설계업 1종	제 전문1종-60 호	(주)엔탑 (이재신, 양윤석)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앞들길 24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015. 9. 2

전라남도 공고 제2015-757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10

전라남도지사

1. 규 칙 명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 개정 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내역 반영
 - 부패행위 관련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 엄중문책 조항 신설 등
 - 현행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미비점 보완
 - 【별표1】의 징계양정 조정 및 【별표5】의 공금횡령, 유용 등 금액 세분화
3. 개정 내용
 - 부패행위 관련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 엄중 문책 규정(안 제2조 제2항)
 -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규정
 -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 규정(안 제2조제3항제3호 신설, 안 제4조제2항)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 성실의 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로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기준 마련(파면-해임~감봉-견책)
 - 성(性)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별표 1)
 - 성폭력 비위의 유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추가 (현재는 미성년자만 규정)
 - 성희롱·성매매를 각각 구분하여 징계기준을 정함.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별표 1의2)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시 처분기준 구체화(중징계 → 파면-해임, 직권면직 → 강등-정직)

- 2회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정직-강등 → 해임-정직),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 사고 처분기준 세분화 등

○ 성실의무 위반 유형 중 공금횡령 처분기준 변경(안 별표 1)

- 현행 파면 → 파면-정직(금액별 구체적 징계기준은 별표 5에 규정)

○ 청렴의무 위반행위 징계사유 중 공금횡령, 공금유용 징계사유를 금액별로 구분·세분화(안 별표 5)

- 공금 등 횡령 : 현행 파면

→ 100만원 이상(파면), 50만원 ~ 100만원(해임 이상), 50만원 미만(정직 이상)

※ 금품수수 비위 중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준용

- 공금 등 유용 : 현행 비위 중합(강등 이상), 비위 경합(감봉 이상)

→ 300만원 이상(정직 이상), 300만원 미만(감봉 이상)

4. 개정 규칙안 : 다음

5. 의견 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15년 9월 30일(입법예고 기간 내)까지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제출자 연락처 (성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58564/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전화 061-286-2260, 팩스 061-286-4724, E-메일 : capitalk@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을 “그 의결 대상이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것으로” 를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과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05.12.29, 2009.2.13, 2009.5.13, 2011.9.5, 2012.2.27, 2014.11.13. 2015.9.)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바. 기 타	파면-정직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업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마. 음주운전 바.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감봉 정직-감봉 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별표 1의2와 같음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고,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1의2】 (신설 2012. 2. 27, 개정 2014. 3. 20, 2014. 11. 3, 2015. 9.)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경징계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중상해의 경우	중징계	정직-해임
	사망사고의 경우		강등-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임-파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강등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은폐하여 승진한 경우		중징계	강등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5.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6. 음주운전 횡수(공무원 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 (신설 2010.5.13, 개정 2010.11.12, 2011.3.11, 2012.2.27, 2014.11.13)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개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과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1.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금품향응요구, 정가상습 수좌 알선 시 : 해임이상 3.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해임 등이 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취업을 영구배제
가.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다.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	○						
라. 접대성 성매수							
1) 접대성 성매수 1회		○					
2) 접대성 성매수 2회 이상	○						
마. 접대성 골프							
1) 접대성 골프 1회				○			
2) 접대성 골프 2회		○					
3) 접대성 골프 3회 이상	○						
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행위 중개			○				
사.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 등 중개 행위			○				

징계 사유		징계 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2. 업무상 횡령 및 배임								1.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해임 등이 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취업을 영구배제
가. 공금 등 횡령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나. 공금 등 유용	3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다.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								
1)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정도가 경한 경우						○		
라. 업무상 배임								
1)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2) 비위의 정도가 경한 경우						○		
3. 청렴도 조례 위반								고의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	
4.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2회 이상 위법부당한 지시						○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알선청탁 행위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 의무 위반						○		
다. 이해관계직무에 회피 등을 상담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			
라. 부정 알선청탁 및 부당지시에 의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			
마.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		
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의 차용 및 부동산의 무상 임차						○		
사. 기준을 위반하는 외부강의 등							○	
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경조사의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						○		
자. 그 밖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중한 경우							○	

- ※ 1. “직무관련자”에는 직무관련공무원을 포함하고, 5년 이내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 ※ 2. “금품 등”이란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정의한 금품 등을 말한다. 단, 경제적 이익 등이 금전으로 환산이 곤란할 경우 그 이익이 현저할 경우 중징계, 기타는 경징계
- ※ 3. “수수”에는 본인이 수수(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수수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 ※ 4. 횡수는 공무원 전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사면된 전력도 포함한다.

목포시 고시 제2015-18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2-6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시 용해동 23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2-67호선)사업 【사업명 : 목포의료원 ~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9. 10

목포시장

■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항목	구분	고시 내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위 치 : 목포시 용해동 238-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2-67호선)사업 ○ 사 업 명 : 목포의료원 ~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L=60m, B=15m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을로 203 ○ 성 명 : 목포시장(건설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2015. 9. 10. ~ 201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 생략(건설과 비치)	
8. 실시계획 공람완료		○ 공람 기간 : 2015. 8. 6. ~ 8. 20. (14일간) ○ 공람 장소 : 건설과	
9. 기타 문의		○ 전화 061-270-3484(건설과)	

가. 토지 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1,056	1,029					
1	용해	236-30	대	2	2		신안군			
2	용해	236-33	대	3	3		신안군			
3	용해	238-4	대	19	19		목포시			
4	용해	238-19	대	115	115		목포시			
5	용해	236-31	대	4	4		기 획 재정부			
6	용해	236-32	대	3	3		기 획 재정부			
7	용해	238-14	대	5	5		목포시			
8	용해	238-20	대	86	86		목포시			
9	용해	238-1	대	327	327	목포시 용해동 238	조연식	목포시 용당동 1095-12	목포단위농 협협동조합	근저당권
10	용해	236-1	전	93	93	광주시 북구 운암동 406-5	전경숙			
11	용해	209-49	도	45	45		국 토 해양부			
12	용해	931-4	도	158	158		국 토 해양부			
13	용해	234-47	대	13	13	목포시 송림로 77-2(용해동)	김근자			
14	용해	234-43	대	8	8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602-1	김재철			
15	용해	234-48	대	62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93, 502동805호 (가락동,가락 쌍용아파트)	최진석			
16	용해	234-49	도	65	65		신안군			
17	용해	234-44	대	7	7		신안군			
18	용해	234-46	도	9	9		신안군			
19	용해	234-45	도	2	2		신안군			
20	용해	236-35	대	30	3		신안군			

나. 지장물 조서

연 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 구분	물건 종류	규조	지붕 형식	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용해	238-1	대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	84.83	목포시 용해동 238	조연식	목포시 용당동 1095-12	목포단위 농협 협동조합	근저 당권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	20.28					
				건물	주택	블록	스레이트	13.65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	6.3					
				기타	비닐 하우스	철재	공란	22.8					
				기타	담장	석축	공란	40.5					
				기타	담장	블록	공란	82.7					
				기타	담장	웬스	공란	10.8					
				기타	문주	블록	공란	1.87					
				기타	화단	콘크리트	공란	23					
				기타	계단	블록	공란	4.38					
				기타	마당	콘크리트	공란	53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	69.02					
				기타	대문	철재	공란	1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	21.73					
2	용해	234-31	대	건물	상가	블록	기와	36.50	목포시 송림로 77-2 (용해동)	김근자			
				부속사	창고	블록	조립식	16.60					
				부속사	화장실	블록	조립식	5.58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규조	지붕형식	면적(m ²)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타	담장	블록	공란	13.30					
				기타	대문	유리	공란	1.00					
				기타	간판	공란	공란	2.00					
3	용해	234-32	대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	78.65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93, 502동 805호 (가락동, 가락 쌍용아파트)	최진석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	13.04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	13.30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2.38					
				기타	기추	스레트	공란	11.90					
				기타	물탱크	블록	공란	1.80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66.08					
				기타	문주	블록	공란	1.32					
				부속사	창고	블록	함석	2.8					
				기타	화단	콘크리트	공란	27					
				기타	담장	블록	공란	94.81					
				기타	마당	콘크리트	공란	59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	45.38					
				부속사	창고	블록	조립식	3.42					
				기타	대문	샤시	공란	2					

목포시 고시 제2015-18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03호)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북교동 5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명 : 목포 도시재생선도지역 기반시설(공원) 조성공사】 편입 지장물 소유자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9. 10

목포시장

■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구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위 치 : 목포시 북교동 57번지 일원(북초교 인근)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공원/소공원)사업 ○ 사업명칭 : 목포 도시재생선도지역 기반시설(공원) 조성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공원면적 : 542.5㎡ ○ 사업내용 - 체력단련시설 4조, 파고라 1조, 점토 및 식생 블록포장, 조경 식재 등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목포시 양을로 203 ○ 성명 : 목포시장(도시재생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5. 03. 12. ○ 준공예정일 : 201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변 경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목포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문의	○ 전화 061 - 270 - 3686(목포시청 도시재생과)	

편입 지장물 조서(변경)

□ 사업명 : 목포 도시재생선도지역 기반시설(공원) 조성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지붕형식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당초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조석조 및 적벽돌치장 슬래브	80.05	m ²	김기증	목포시 북교동 57			북교57 제1호
	변경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조석조 및 적벽돌치장 슬래브	80.05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1-1	당초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조석조 및 적벽돌치장 슬래브	57.91	m ²	김기증	목포시 북교동 57			북교57 제1호
	변경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조석조 및 적벽돌치장 슬래브	57.91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1-1	당초			창고	철근콘크리트조석조 슬래브지붕	10.2	m ²	김기증	목포시 북교동 57			북교57 제1호
	변경			창고	철근콘크리트조석조 슬래브지붕	10.2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1-1	당초			차양1	합판밧스레트 (플라스틱)	7.2	m ²	김기증	목포시 북교동 57			북교57 제1호
	변경			차양1	합판밧스레트 (플라스틱)	7.2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1-1	당초			계단	철재	1	식	김기증	목포시 북교동 57			북교57 제1호
	변경			계단	철재	1	식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1	당초			담장1	자연석	12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담장2	블록	9.35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담장1	자연석	12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담장2	블록	9.35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대문 (문주포함)	철재	1	식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대문 (문주포함)	철재	1	식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담장3	블록	22.27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담장3	블록	22.27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주택	블록조 기와	45.09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주택	블록조 기와	45.09	m ²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화단1	-	1	식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화단2	-	1	식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화단1	-	1	식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화단2	-	1	식	김기회	목포시 북교동 57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지붕형식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차양2	합판 및 스텔트 (플라스틱)	5.1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차양2	합판 및 스텔트 (플라스틱)	5.1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차양3	합판 및 스텔트 (플라스틱)	3.61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차양3	합판 및 스텔트 (플라스틱)	3.61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마당	콘크리트	54.60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마당	콘크리트	54.60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담장4	자연석	10.71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담장4	자연석	10.71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화장실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96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화장실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96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주택	벽돌조 슬래브지붕	19.60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주택	벽돌조 슬래브지붕	19.60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화단3	-	1	식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화단3	-	1	식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담장5	적별돌	4.00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담장5	적별돌	4.00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마당	콘크리트	36.00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마당	콘크리트	36.00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무화과	-	3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무화과	-	3	주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동백	-	3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동백	-	3	주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단풍	-	1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단풍	-	1	주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당초			향나무	-	1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향나무	-	1	주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지붕형식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눈향나무		1	주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종려나무		1	주						
				회양목		2	주						
				매화		1	주						
				목련		1	주						
				골단초		3	군						
				장미		2	군						
			화초		1	군							
		변경			눈향나무		1	주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종려나무		1	주						
				회양목		2	주						
				매화		1	주						
				목련		1	주						
				골단초		3	군						
			장미		2	군							
		화초		1	군								
1-3	당초			차양4	목조스레트 (플라스틱)	5.2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차양4	목조스레트 (플라스틱)	5.2	m ²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1-4	당초			빨래대	-	2	조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변경			빨래대	-	2	조	김기희	목포시 북교동 57				
2	당초	북교	58	주택	석구조강판지붕	48.00	m ²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창고	벽돌조 슬래브지붕	7.6	m ²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화단	블록(경계)	1	식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계단	콘크리트	1	식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담장	블록	34.92	m ²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마당	콘크리트	42.4	m ²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대문	샤시	1	식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감나무	조경수	1	주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구기자	-	5	주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무궁화	-	3	주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당초			무화과	-	10	주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2-1	당초			대문	철재	1	식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2-2	당초			빨래대	-	2	조	김정배	신안군 장산면 장산중앙길 192-1				

목포시 공고 제2015-85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국도시점소공원/화장실)사업 실시계획 공고

1. 목포시 대의동2가 1-127번지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47호)사업 【사업명 : 2015 관광지 노후화장실개선사업 국도시점 공중화장실 개축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9. 10

목포시장

■ 실시계획 공고 내용

구분 항 목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위 치 : 목포시 대의동2가 1-127번지(유달산우체국 옆)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소공원 147호)사업 ○ 사업명칭 : 2015 관광지 노후화장실개선사업 국도시점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공원면적 : 579.6㎡ ○ 화장실 신축 • 건축면적 : 23.4㎡ • 연면적 : 23.4㎡ •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 주 구 조 : 경량철골구조 • 동 수 : 1동 • 층 수 : 지상1층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목포시 양을로 203 ○ 성명 : 목포시장(환경보호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착수일 : 2015. 10.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1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목포시 대의동2가 1-127번지(목포시, 대, 공원)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목포시청 환경보호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 열람 기간 : 2015. 09. 10. ~ 09. 24.(14일간) ○ 열람 장소 : 목포시청 환경보호과	
9. 기타 문의	○ 061-270-8469(목포시청 환경보호과)	

여수시 고시 제2015-218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 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0

여수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남산동 113-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명 칭 : 남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사용형태	면적 (㎡)		비 고
		당 초	변 경	
계		38,524	39,380	증 856㎡
정 비 기 반 시 설	진입도로	22,116	22,116	변경없음
	주차장	3,388	3,388	변경없음
	산책로	255	255	변경없음
	녹지	12,765	13,621	변경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
- 5. 사업시행기간(변경) : ▮ 당초: 2012. 8. 20. ~ 2015. 12. 31.
 ↳ 변경: 2012. 8. 20. ~ 2017.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다음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8. 관계도서: 여수시 공원과, 도시계획과
-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원과(☎061-659-4634),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합 계						38,524	-	-	기정
						39,380	-	-	변경
1	여수시	남산동	113-3	전	145	145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3-3	전	145	145	공	여수시	변경
2	여수시	남산동	109	도 로	4,064	942	국	건설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109	도 로	4,064	942	국	건설부	변경
3	여수시	남산동	113-2	전	47	47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3-2	전	47	47	공	여수시	변경
4	여수시	남산동	114-2	전	75	75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4-2	전	75	75	공	여수시	변경
5	여수시	남산동	116	전	38	38	조인섭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272-14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6	전	38	38	공	여수시	변경
6	여수시	남산동	117-1	전	89	89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7-1	전	89	89	공	여수시	변경
7	여수시	남산동	114	전	95	95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4	전	95	95	공	여수시	변경
8	여수시	남산동	120-5	전	211	211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0-5	전	211	211	공	여수시	변경
9	여수시	남산동	117	전	473	473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7	전	473	473	공	여수시	변경
10	여수시	남산동	118	전	17	13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8	전	17	13	공	여수시	변경
11	여수시	봉산동	59	전	101	69	최동립	광주 서구 양동 61 금호아파트 가동 105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9	전	101	69	공	여수시	변경
12	여수시	봉산동	57-1	임 야	57	57	최동립	광주 서구 양동 61 금호아파트 가동 105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7-1	임 야	57	57	공	여수시	변경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3	여수시	봉산동	42	도 로	8,505	786	국	건설부	기정
	여수시	봉산동	42	도 로	8,505	786	국	건설부	변경
14	여수시	봉산동	산10-2	도 로	848	23	국	건설부	기정
	여수시	봉산동	산10-2	도 로	848	23	국	건설부	변경
15	여수시	봉산동	57	임 야	184	184	최동립	광주 서구 양동 61 금호아파트 가동 105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7	임 야	184	184	공	여수시	변경
16	여수시	남산동	119	전	20	20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9	전	20	20	공	여수시	변경
17	여수시	봉산동	56	전	595	595	최동립	광주 서구 양동 61 금호아파트 가동 105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6	전	595	595	공	여수시	변경
18	여수시	봉산동	55	전	136	136	최동립	광주 서구 양동 61 금호아파트 가동 105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5	전	136	136	공	여수시	변경
19	여수시	남산동	120	전	580	580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0	전	580	580	공	여수시	변경
20	여수시	남산동	121	전	658	658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1	전	658	658	공	여수시	변경
21	여수시	남산동	122	전	192	192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2	전	192	192	공	여수시	변경
22	여수시	남산동	132	전	740	740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2	전	740	740	공	여수시	변경
23	여수시	남산동	133	전	499	499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3	전	499	499	공	여수시	변경
24	여수시	남산동	134	전	436	302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4	전	436	302	공	여수시	변경
25	여수시	남산동	산12	임 야	793	43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산12	임 야	793	43	공	여수시	변경
26	여수시	남산동	136	전	106	106	공	여수시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6	전	106	106	공	여수시	변경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7	여수시	남산동	135	전	380	206	최영진	전남 여수시 문수동 450-1 부영아파트 906-410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5	전	380	206	공	여수시	변경
28	여수시	남산동	166-2	임 야	661	250	김건중	광주 북구 풍향동 23-93 금성맨션 601호	기정
	여수시	남산동	166-2	임 야	661	250	공	여수시	변경
29	여수시	남산동	256-1	전	788	788	국	기획재정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256-1	전	788	788	공	여수시	변경
30	여수시	남산동	262	전	1,008	953	장귀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2-25	기정
	여수시	남산동	262	전	1,008	953	공	여수시	변경
31	여수시	남산동	277	전	975	96	황세영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244	기정
	여수시	남산동	277	전	975	96	공	여수시	변경
32	여수시	남산동	275	전	936	412	손복례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244	기정
	여수시	남산동	275	전	936	412	공	여수시	변경
33	여수시	남산동	283	전	569	11	여수온천관광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527	기정
	여수시	남산동	283	전	569	11	공	여수시	변경
34-1	여수시	남산동	284	전	537	441	심재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350	기정
	여수시	남산동	284	전	537	441	심재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350	변경
34-2	여수시	남산동	284-1	전	432	358	심재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350	기정
	여수시	남산동	284-1	전	432	358	심재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350	변경
35	여수시	남산동	112-1	도 로	51	12	국	건설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2-1	도 로	51	12	국	건설부	변경
36	여수시	남산동	110-1	도 로	214	159	국	건설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0-1	도 로	214	159	국	건설부	변경
37	여수시	남산동	112-2	전	11	11	국	기획재정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2-2	전	11	11	국	기획재정부	변경
38	여수시	남산동	107-1	도 로	336	336	국	기획재정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107-1	도 로	336	336	국	기획재정부	변경
39	여수시	남산동	112	전	83	83	국	재정경제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2	전	83	83	국	재정경제부	변경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40	여수시	남산동	101	전	2,585	1,690	국	기획재정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101	전	2,585	1,690	공	여수시	변경
41	여수시	남산동	113	전	1,768	1,768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13	전	1,768	1,768	공	여수시	변경
42	여수시	남산동	125	전	744	744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5	전	744	744	공	여수시	변경
43	여수시	남산동	126	전	122	122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6	전	122	122	공	여수시	변경
44	여수시	남산동	124	전	304	304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4	전	304	304	공	여수시	변경
45	여수시	남산동	산11	임 야	595	326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산11	임 야	595	326	공	여수시	변경
46	여수시	남산동	123	전	545	545	이계형	서울 종로구 채부동 15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3	전	545	545	공	여수시	변경
47	여수시	남산동	127	전	139	59	이이남	부산 사하구 다대1동 382-3 자유아파트 108-1202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7	전	139	59	공	여수시	변경
48	여수시	남산동	128	전	99	74	이이남	부산 사하구 다대1동 382-3 자유아파트 108-1202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8	전	99	74	공	여수시	변경
49	여수시	남산동	129	전	866	31	오기탁	부산 서구 초장동 3가 65	기정
	여수시	남산동	129	전	866	31	공	여수시	변경
50	여수시	남산동	130	전	893	561	최영진	전남 여수시 문수동 450-1 부영아파트 906-410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0	전	893	561	공	여수시	변경
51	여수시	남산동	131	전	126	126	국	여수시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1	전	126	126	공	여수시	변경
52	여수시	남산동	168-1	전	110	110	국	기획재정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168-1	전	110	110	공	여수시	변경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53	여수시	남산동	139	전	830	34	송정숙	전남 여수시 남산동171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9	전	830	34	국	여수시	변경
54	여수시	남산동	137	전	169	169	최영진	전남 여수시 문수동 450-1 부영아파트 906-410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7	전	169	169	공	여수시	변경
55	여수시	남산동	138	전	985	942	최영진	전남 여수시 문수동 450-1 부영아파트 906-410	기정
	여수시	남산동	138	전	985	942	공	여수시	변경
56	여수시	남산동	165	전	1,620	764	유치현	전남 여수시 중앙동 774	기정
	여수시	남산동	165	전	1,620	1,620	유치현	전남 여수시 중앙동 774	변경
57	여수시	남산동	166	전	1,150	474	최동림 외 1인	광주 서구 양동 61 금호아파트 가동 105호	기정
	여수시	남산동	166	전	1,150	474	공	여수시	변경
58	여수시	남산동	166-3	임 야	5,065	5,065	김미라 외 4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718	기정
	여수시	남산동	166-3	임 야	5,065	5,065	공	여수시	변경
59	여수시	남산동	255-2	전	343	120	정병채	전남 여수시 둔덕동 648 한려주공아파트 112-904	기정
	여수시	남산동	255-2	전	343	120	공	여수시	변경
60	여수시	남산동	264	전	565	291	김용길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25-3	기정
	여수시	남산동	264	전	565	291	공	여수시	변경
61	여수시	남산동	286-1	도 로	179	179	국	기획재정부	기정
	여수시	남산동	286-1	도 로	179	179	공	여수시	변경
62	여수시	남산동	276	전	205	205	이춘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미아파트 1동 706호	기정
	여수시	남산동	276	전	205	205	공	여수시	변경
63	여수시	남산동	267-1	전	644	644	김대신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590-1	기정
	여수시	남산동	267-1	전	644	644	공	여수시	변경
64	여수시	남산동	274-5	전	1,727	1,010	김옥희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472	기정
	여수시	남산동	274-5	전	1,727	1,010	공	여수시	변경
65	여수시	봉산동	51	전	21	21	최동림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1	전	21	21	공	여수시	변경

일련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66	여수시	봉산동	54	전	208	208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4	전	208	208	공	여수시	변경
67	여수시	봉산동	56-1	전	7	7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6-1	전	7	7	공	여수시	변경
68	여수시	봉산동	58	전	167	167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8	전	167	167	공	여수시	변경
69	여수시	봉산동	60	입야	8	8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60	입야	8	8	공	여수시	변경
70	여수시	봉산동	산10	입야	9,293	9,293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산10	입야	9,293	9,293	공	여수시	변경
71	여수시	봉산동	58-2	전	161	161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58-2	전	161	161	공	여수시	변경
72	여수시	봉산동	4-2	전	310	310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4-2	전	310	310	공	여수시	변경
73	여수시	봉산동	4-5	전	166	166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4-5	전	166	166	공	여수시	변경
74	여수시	봉산동	4-3	전	592	592	최동립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101동219호(학동,아남아파트)	기정
	여수시	봉산동	4-3	전	592	592	공	여수시	변경

여수시 고시 제2015-219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웅천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 9. 10

여수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웅천지구 택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
 - 여수시의 새로운 중심부로 떠오르는 웅천지구를 친환경적인 복합 주거기능의 신시가지로 개발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
 - 나. 사업의 개요 : 택지개발 2,800,43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가. 위 치 : 여수시 웅천동 일원
 - 나. 면 적: 2,800,439㎡

기 정			변 경		
- 1공구	(2003~2010년)	692,802.5㎡	- 1공구	(2003~2010년)	692,802.5㎡
- 2공구	(2009~2016년)	1,204,965.9㎡	- 2공구	(2009~2016년)	1,204,965.9㎡
·2-1공구		20,685.4㎡	·2-1공구		20,685.4㎡
·2-2공구		44,294.9㎡	·2-2공구		44,294.9㎡
·2-3공구		640,961.7㎡	·2-3공구		640,517.5㎡
·2-4공구		9,711.0㎡	·2-4공구		9,711.0㎡
·2-5공구		194,602.9㎡	·2-5공구		194,704.8㎡
·2-6공구		294,710.0㎡	·2-6공구		295,052.3㎡
- 3공구	(2009~2016년)	902,670.6㎡	- 3공구	(2009~2016년)	902,670.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992. 12. 21 ~ 2016. 12. 31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결정 고시도(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결정 고시도(변경) :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9.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 및 공영개발과(061-659-45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웅천지구 택지조성)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I.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첨부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3,000)

II.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첨부 : 용도지구 결정(변경)도(S=1:5,000)

III. 용도구역 결정(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첨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IV.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① 교통시설(변경없음)

② 공간시설(변경없음)

③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④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⑤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첨부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3,000)

V.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3. 상업용지(변경없음)
-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6.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첨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3. 상업용지(변경)
-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6.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첨부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③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별표 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별표 2 : 구릉지주택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별표 3 : 아파트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별표 4 : 테라스하우스 및 타운하우스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별표 5 : 지구중심상업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별표 6 : 관광·휴양상업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별표 7 :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별표 8 :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용도 계획표(변경없음)

별표 9 : 산업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별표10 :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별표11 : 건축물 색채계획표(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I.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00,439	-	2,800,439	100.0	
주 거 지 역	소계	1,367,922	-	1,367,922	48.9	
	전용주거지역	122,303	-	122,303	4.4	
	제1종전용주거지역	81,315	-	81,315	2.9	
	제2종전용주거지역	40,988	-	40,988	1.5	
	일반주거지역	941,196	-	941,196	33.6	
	제1종일반주거지역	407,816	-	407,816	14.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4,755	-	214,755	7.7	
	제3종일반주거지역	318,625	-	318,625	11.3	
	준주거지역	304,423	-	304,423	10.9	
상 업 지 역	소계	229,544	-	229,544	8.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29,544	-	229,544	8.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1,202,973	-	1,202,973	42.9	
	보전녹지지역	375,802	-	375,802	13.4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827,171	-	827,171	29.5	
미 지 정		-	-	-	-	

■ 첨부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3,000)

II.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송현지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웅천동 1423일원		86,205	-	

■ 첨부 : 용도지구 결정(변경)도(S=1:5,000)

III. 용도구역 결정(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5	웅천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웅천동 일원	2,800,439	-	2,800,439	

■ 첨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IV.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①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 로(변경없음)

1)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76	32,345	521,675.5	37	8,439	120,813.0	73	19,176	325,924.5	66	4,730	43,214.0	
일 반	계	119	28,625	456,595.5	26	7,013	103,363.0	66	18,443	316,588.5	27	3,169	36,644.0
	대로	4	5,792	173,760.0	-	-	-	4	5,792	173,760.0	-	-	-
도 로	중로	31	11,956	189,350.5	6	3,310	66,200.0	16	5,852	88,306.5	9	2,794	34,844.0
	소로	84	10,877	93,485.0	20	3,703	37,163.0	46	6,799	54,522.0	18	375	1,800.0
보 행 자 전 용 도 로	계	57	3,720	33,356.0	11	1,426	17,450.0	7	733	9,336.0	39	1,561	6,570.0
	중로	4	815	13,820.0	1	319	6,380.0	3	496	7,440.0	-	-	-
	소로	53	2,905	19,536.0	10	1,107	11,070.0	4	237	1,896.0	39	1,561	6,570.0
기타 (가각전제 등)			31,724.0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	30	주간선 도로	22,820 (2,386)	26호광장가장리 1886-6답 (지구경계북서측)	웅천동구역계 웅천동산256-1입 (지구경계남동측)	일반도로		전고 133호 '97.5.20	()는 웅천지구내 연장임
기정	대로	2	18	30	주간선 도로	1,738	대로2-7 시전동514-3답	대로2-7 시전동597답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9	30	주간선 도로	793	대로2-18 시전동1097-4도	지구경계(서측) 시전동974전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7	30	주간선 도로	875	대로2-7 웅천동1215-3전	지구경계(북동측) 웅천동1587구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2	20	집산도로	857	대로2-18 웅천동1037-1전	대로2-19 웅천동989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3	20	보조간선 도로	940	대로2-7 웅천동594-4도	대로2-17 웅천동1225-3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1	20	보조간선 도로	940	대로2-17 웅천동1236-1전	대로2-7 웅천동1521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2	20	국지도로	112	대로2-18 웅천매립지	마리나(해수면)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3	20	특수도로	319	소로1-305 웅천매립지	관광휴양상업1단지 웅천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1	84	20	국지도로	119	대로2-18 웅천매립지	중로3-39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5	20	국지도로	342	중로1-84 웅천매립지	중로3-98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4	15	집산도로	1,122	중로1-42 웅천동1,000전	중로3-94 웅천동661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5	15	국지도로	229	대로2-7 웅천동487-1답	대로2-18 웅천동1061-81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6	15	집산도로	457	대로2-7 웅천동443답	대로2-18 웅천동1068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7	15	국지도로	183	대로2-7 웅천동477-3도	중로1-43 웅천동616-1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0	15	집산도로	650	중로1-43 웅천동297답	중로2-116 웅천동산131-2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3	15	집산도로	981	중로2-123 웅천동1486답	대로2-18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5	15	특수도로	180	중로1-42 웅천동995전	경관녹지(북서측) 웅천동912-5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86	15	특수도로	198	대로2-19 웅천동992답	중로1-42 웅천동993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87	15	특수도로	118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소로1-202 웅천동 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114	15	집산도로	158	대로2-7 웅천동388-5답	중로1-43 웅천동373-1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5	15	집산도로	965	중로1-43 웅천동352답	지구경계(북동측) 웅천동산127-3입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16	15	국지도로	204	대로2-17 웅천동161-2답	소로1-297 웅천동157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7	15	국지도로	45	소로3-915 웅천동산132-3입	대로2-17 웅천동산132-3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8	15	국지도로	107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2-83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9	15	국지도로	80	중로2-44 웅천동530전	중로2-120 웅천동575-1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0	15	국지도로	321	대로2-7 웅천동509-1도	중로2-44 웅천동산75-1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1	15	국지도로	110	중로1-43 웅천동618전	중로2-120 웅천동585-5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2	15	국지도로	123	중로1-43 웅천동629대	중로2-44 웅천동625-1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3	19.5	집산도로	117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2-83 웅천동1486답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420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9	12	국지도로	375	중로1-84 웅천동매립지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599	중로3-94 웅천동663전	중로2-115 웅천동73-2입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2	12	국지도로	82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2-83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3	12	국지도로	76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2-83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4	12	집산도로	391	중로2-44 웅천동661전	중로2-115 웅천동89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6	12	국지도로	193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마리나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7	14	국지도로	385	중로1-85 웅천동매립지	중로1-85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8	14	국지도로	273	대로2-7 웅천동1613구	어항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02	10	국지도로	232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07	10	특수도로	82	중로1-42 웅천동1045-2입	소로1-208 웅천동850-2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08	10	특수도로	272	소로1-210 웅천동1052전	중로2-44 웅천동868-9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09	10	국지도로	108	중로1-42 웅천동1045-10전	대로2-18 웅천동1061-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0	10	국지도로	370	소로1-209 웅천동848전	중로2-44 웅천동781-12전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15	10	국지도로	71	대로2-18 웅천동483-2도	중로2-45 웅천동46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6	10	국지도로	146	중로2-76 웅천동440답	중로2-45 웅천동463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7	10	국지도로	157	중로2-77 웅천동475-1답	중로2-114 웅천동383-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85	10	국지도로	210	소로1-202 웅천동매립지	소로1-202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86	10	국지도로	260	소로1-202 웅천동매립지	소로1-202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87	10	특수도로	141	중로2-77 웅천동608-1대	중로2-114 웅천동383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88	10	국지도로	99	중로2-77 웅천동637전	중로2-114 웅천동373-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89	10	특수도로	31	대로2-7 웅천동383-5답	소로1-217 웅천동470-7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90	10	특수도로	34	소로1-217 웅천동470-6도	소로1-287 웅천동472-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91	10	특수도로	35	소로1-287 웅천동472-1전	소로1-288 웅천동37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92	10	국지도로	362	중로2-114 웅천동389답	중로2-114 웅천동378-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3	10	국지도로	122	중로1-43 웅천동369전	중로3-94 웅천동681-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4	10	국지도로	122	중로1-43 웅천동639-1전	중로3-94 웅천동691-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5	10	국지도로	114	중로3-94 웅천동665전	경관녹지(북측) 웅천동700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6	10	국지도로	585	중로2-115 웅천동산110-1유	중로2-116 웅천동156-5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7	10	국지도로	205	소로1-296 웅천동148-3전	중로2-116 웅천동157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8	10	특수도로	161	대로2-7 웅천동821-1도	소로1-210 웅천동848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99	10	국지도로	256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중로1-42 웅천동1020-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0	10	국지도로	88	중로2-76 웅천동454답	중로2-45 웅천동460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1	10	국지도로	16	소로1-216 웅천동445-2답	소로2-1096 웅천동445-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2	10	특수도로	160	중로1-43 웅천동295답	대로2-7 웅천동280-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03	10	국지도로	47	대로2-17 웅천동1242-3답	소로2-933 웅천동1243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4	10	특수도로	79	중로1-82 웅천동매립지	중로3-96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05	10	특수도로	112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중로1-83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06	11	국지도로	133	중로2-44 웅천동808전	중로2-44 웅천동752-1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4	8	국지도로	133	소로1-209 웅천동1045-5전	소로1-209 웅천동1048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5	8	국지도로	319	소로1-209 웅천동502-7답	소로1-209 웅천동1061-31입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6	8	국지도로	116	소로1-209 웅천동1061-2전	소로2-905 웅천동1061-3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7	8	국지도로	86	소로1-209 웅천동1061-2전	소로2-908 웅천동1042-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8	8	국지도로	162	소로1-209 웅천동1040-1전	소로1-209 웅천동1061-40입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09	8	국지도로	463	중로2-76 웅천동1078답	중로2-909 웅천동1070-7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10	8	국지도로	16	중로2-76 웅천동1068답	소로2-909 웅천동1069-4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11	8	국지도로	66	소로2-909 웅천동1069-4답	소로2-912 웅천동1070-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12	8	국지도로	65	소로2-909 웅천동1072대	소로2-957 웅천동1070-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23	8	국지도로	520	소로1-296 웅천동산111-7입	지구경계(북동측) 웅천동157-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33	8	국지도로	503	소로1-303 웅천동1244전	소로1-303 웅천동1243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57	8	국지도로	100	소로2-909 웅천동1070-7잡	소로2-909 웅천동1075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77	8	국지도로	450	소로1-210 웅천동1061-21전	소로1-210 웅천동781-1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78	8	국지도로	126	소로1-210 웅천동1061-21전	소로2-1077 웅천동828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79	8	국지도로	57	소로1-210 웅천동839-3전	소로2-1077 웅천동829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80	8	국지도로	62	소로1-210 웅천동839-1전	소로2-1077 웅천동83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81	8	국지도로	69	소로1-210 웅천동781-9전	소로2-1077 웅천동835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82	8	국지도로	77	소로1-210 웅천동781-11전	소로2-1077 웅천동797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83	8	국지도로	94	소로1-294 웅천동639-1전	중로2-122 웅천동629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18	8	국지도로	132	소로1-294 웅천동653대	중로2-122 웅천동626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84	8	국지도로	110	소로1-294 웅천동651대	중로2-122 웅천동626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85	8	국지도로	101	소로1-293 웅천동682-6답	소로1-294 웅천동670-5대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86	8	국지도로	101	소로1-293 웅천동366답	소로1-294 웅천동650-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87	8	국지도로	101	소로1-293 웅천동368답	소로1-294 웅천동639-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88	8	특수도로	44	중로2-115 웅천동142전	소로2-923 웅천동142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089	8	특수도로	47	소로2-923 웅천동144임	소로1-297 웅천동150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090	8	특수도로	55	소로1-296 웅천동산118임	소로2-923 웅천동산112-2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091	8	국지도로	132	중로2-115 웅천동360답	소로1-293 웅천동682-6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92	8	국지도로	132	중로2-115 웅천동356-1답	소로1-293 웅천동366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93	8	국지도로	148	소로2-1092 웅천동356-1답	소로1-293 웅천동367-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94	8	국지도로	74	소로1-292 웅천동390답	소로1-292 웅천동379-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95	8	국지도로	98	소로1-292 웅천동397전	소로2-1094 웅천동392-1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96	8	국지도로	341	소로1-300 웅천동460답	소로2-1096 웅천동46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97	8	국지도로	51	소로2-1096 웅천동451답	소로2-1096 웅천동448수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98	8	국지도로	16	중로2-76 웅천동447답	소로2-1096 웅천동448수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99	8	국지도로	16	소로1-300 웅천동460답	소로2-1100 웅천동459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00	8	국지도로	360	중로2-76 웅천동1067답	소로2-1100 웅천동1066-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01	8	국지도로	87	소로2-1100 웅천동1064-1답	소로2-1100 웅천동458-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02	8	국지도로	187	소로1-299 웅천동1021대	소로2-1103 웅천동1028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03	8	국지도로	112	소로1-299 웅천동1026-3잡	소로2-1102 웅천동1034-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04	8	국지도로	175	소로1-299 웅천동1026전	소로1-299 웅천동1019-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05	8	특수도로	91	중로3-96 웅천동매립지	해수면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111	8	국지도로	117	소로2-933 웅천동1242-5전	소로2-1112 웅천동164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12	8	국지도로	80	소로2-933 웅천동1252-5전	소로2-933 웅천동164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14	8	국지도로	39	중로3-96 웅천동매립지	관광휴양상업1단지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15	8	국지도로	36	중로3-37 웅천동매립지	관광휴양상업2단지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16	8	국지도로	124	중로3-39 웅천동매립지	관광휴양상업2단지 웅천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19	8	국지도로	117	중로3-37 웅천동매립지	중로3-37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20	8	국지도로	198	중로3-39 웅천동매립지	중로3-39 웅천동매립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21	9	국지도로	130	아파트5-2 웅천동산141-1입	중로2-117 웅천동산132-3입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61	6	특수도로	15	중로1-42 웅천동1047전	소로3-872 웅천동1047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2	6	특수도로	14	소로3-873 웅천동850-2전4	소로1-207 웅천동850-2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3	4	특수도로	13	소로2-904 웅천동1051전	소로1-208 웅천동105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4	4	특수도로	13	소로2-905 웅천동1061-1전	소로1-298 웅천동106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5	4	특수도로	28	소로2-906 웅천동1061-18전	소로2-905 웅천동1061-18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6	4	특수도로	28	소로2-905 웅천동1061-4전	소로2-906 웅천동1061-4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7	4	특수도로	26	대로2-18 웅천동1059대	소로2-905 웅천동1058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8	6	특수도로	14	소로3-875 웅천동822-1답	소로1-298 웅천동822-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69	6	특수도로	23	대로2-7 웅천동502-7답	소로3-876 웅천동502-7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75	4	국지도로	149	중로3-68 웅천동703전	수도27 웅천동706-4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76	4	특수도로	29	중로3-94 웅천동73-18입	중로3-68 웅천동73-24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91	6	특수도로	25	대로2-18 웅천동1042-2도	소로3-874 웅천동1040-2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92	6	특수도로	24	대로2-18 웅천동1030답	소로3-877 웅천동1069-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93	6	특수도로	24	대로2-18 웅천동1029답	소로2-909 웅천동1029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72	6	국지도로	9	소로3-561 웅천동1047전	소로2-904 웅천동1047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73	6	국지도로	8	소로2-904 웅천동1047전	소로3-562 웅천동850-2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74	6	국지도로	8	소로3-591 웅천동1040-1전	소로2-908 웅천동1040-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75	6	국지도로	8	소로2-905 웅천동822-1답	소로3-568 웅천동822-1답	일반도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76	6	국지도로	8	소로3-569 웅천동502-1답	소로2-905 웅천동502-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77	6	국지도로	8	소로3-592 웅천동1069-1답	소로2-909 웅천동1069-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78	6	국지도로	8	소로3-887 웅천동821답	소로2-1077 웅천동82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79	6	특수도로	29	대로2-7 웅천동832-2도	소로2-1077 웅천동83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0	4	특수도로	11	소로1-216 웅천동464답	소로3-898 웅천동463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1	6	국지도로	5	소로3-888 웅천동1064-2답	소로2-1100 웅천동1064-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82	4	특수도로	21	대로2-18 웅천동1037-1전	소로3-893 웅천동1037-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3	4	특수도로	10	중로2-76 웅천동458-1답	소로3-894 웅천동1078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4	6	특수도로	32	소로1-292 웅천동394답	대로2-7 웅천동406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5	6	특수도로	33	중로1-43 웅천동351-5답	소로1-292 웅천동398-1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6	6	특수도로	31	대로2-7 웅천동794-1도	소로2-1077 웅천동795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7	6	특수도로	7	소로1-298 웅천동821답	소로3-878 웅천동821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8	6	특수도로	20	대로2-18 웅천동1064-2답	소로3-881 웅천동1064-2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89	4	특수도로	3	중로2-76 웅천동455답	소로3-895 웅천동455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90	4	특수도로	4	소로2-76 웅천동440-5답	소로3-897 웅천동440-5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91	4	특수도로	10	중로2-115 웅천동351-1답	소로3-899 웅천동353-2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92	4	국지도로	7	소로3-911 웅천동1026-2도	소로2-1102 웅천동1026-2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93	4	국지도로	6	소로3-912 웅천동1033-3대	소로2-1102 웅천동1033-3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94	4	국지도로	9	소로3-913 웅천동1078답	소로2-1100 웅천동1077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95	4	국지도로	25	소로3-914 웅천동455답	소로2-1100 웅천동459답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96	6	국지도로	57	중로1-42 웅천동1001-2전	종교1 웅천동998-3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97	4	국지도로	18	소로3-915 웅천동440-4답	소로2-1096 웅천동444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98	4	국지도로	5	소로3-916 웅천동463답	소로2-1096 웅천동463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99	4	국지도로	6	소로3-917 웅천동353-2답	소로2-1093 웅천동353-2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00	4	특수도로	54	소로1-296 웅천동산122-18입	소로2-923 웅천동산122-15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01	4	특수도로	22	중로2-80 웅천동235-3전	소로1-296 웅천동산122-18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02	4	특수도로	15	중로2-80 웅천동산121입	소로1-296 웅천동155답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04	4	특수도로	10	대로2-7 웅천동1248-2도	소로2-933 웅천동1248-5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05	4	특수도로	30	소로2-1078 웅천동840전	소로1-210 웅천동839-3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06	4	특수도로	30	소로2-1077 웅천동1061-43전	소로2-1078 웅천동841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07	4	특수도로	15	소로1-298 웅천동1061-45전	소로2-1077 웅천동1061-43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08	4	특수도로	16	중로2-45 웅천동1061-8입	소로2-1100 웅천동1061-8입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09	4	특수도로	16	중로1-42 웅천동1045-1전	소로2-1104 웅천동1018-2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10	4	특수도로	24	소로1-208 웅천동1061-23전	소로1-210 웅천동845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11	4	특수도로	21	대로2-18 웅천동1026-2도	소로3-892 웅천동1026-2도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12	6	특수도로	31	대로2-19 웅천동매립지	소로1-285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13	2.5	특수도로	212	중로1-83 웅천동매립지	중로1-82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14	6	국지도로	31	소로2-1119 웅천동매립지	관광휴양상업2단지 웅천동매립지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15	4	특수도로	578	중로1-81 웅천동1284전	중로2-117 웅천동산132-3입	보행자 전용도로			

2. 주차장(변경없음)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노외주차장	-	41,137.5	-	41,137.5		
기정	17	노외주차장	초등학교1 남측단독주택지 웅천동1054-1일원	600.1	-	600.1		
기정	21	노외주차장	지구중심상업2단지남측 웅천동487일원	1,042.9	-	1,042.9		
기정	49	노외주차장	단독주택7단지내 웅천동1068일원	182.4	-	182.4		
기정	75	노외주차장	아파트3-1단지서측 웅천동982일원	17,053.6	-	17,053.6		
기정	76	노외주차장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5,721	-	5,721		
기정	77	노외주차장	공공업무4단지동측 웅천동매립지	1,116.6	-	1,116.6		
기정	78	노외주차장	단독주택2단지내 웅천동1061-21일원	446.5	-	446.5		
기정	79	노외주차장	단독주택3단지내 웅천동1016일원	398.2	-	398.2		
기정	80	노외주차장	단독주택4단지내 웅천동1064-1일원	406.5	-	406.5		
기정	81	노외주차장	지구중심상업1단지남측 웅천동460일원	402.7	-	402.7		
기정	82	노외주차장	지구중심상업2단지주변 웅천동473일원	1,743	-	1,743		
기정	83	노외주차장	단독주택6단지내 웅천동649-1일원	441	-	441		
기정	84	노외주차장	단독주택6단지내 웅천동639-1일원	413	-	413		
기정	85	노외주차장	단독주택6단지내 웅천동86-1일원	793	-	793		
기정	86	노외주차장	단독주택5단지내 웅천동382일원	459	-	459		
기정	87	노외주차장	단독주택8단지내 웅천동1243일원	866	-	866		
기정	88	노외주차장	마리나주변 웅천동매립지	3,777	-	3,777		
기정	89	노외주차장	관광휴양상업2단지내 웅천동매립지	3,014	-	3,014		
기정	90	노외주차장	관광휴양상업3단지내 웅천동매립지	2,261	-	2,261		

② 공간시설(변경없음)

1. 녹지(변경없음)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녹지	-	-	405,224.0	-	405,224.0		
기정	완30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공공업무1단지접면) 웅천동758-3일원	1,829.7	-	1,829.7		
기정	완32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2단지접면) 웅천동836-1일원	1,602.0	-	1,602.0		
기정	완34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1단지접면) 웅천동503-2일원	1,117.8	-	1,117.8		
기정	완36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500일원	1,171.9	-	1,171.9		
기정	완37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아파트4단지접면) 웅천동1208-5일원	4,307.0	-	4,307.0		
기정	완38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8단지접면) 웅천동1217-3일원	2,549.0	-	2,549.0		
기정	완41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타운하우스접면) 웅천동1479-1일원	4,000.0	-	4,000.0		
기정	완42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아파트6-2단지접면) 웅천동1456일원	2,173.0	-	2,173.0		
기정	완43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타운하우스접면) 웅천동1501-5일원	4,058.0	-	4,058.0		
기정	완46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아파트7단지접면) 웅천동1535-1일원	2,229.0	-	2,229.0		
기정	완47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관광휴양산업3단지접면) 웅천동1554일원	10,891.0	-	10,891.0		
기정	완52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3단지접면) 웅천동1037-1일원	163.1	-	163.1		
기정	완53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1030일원	1,282.2	-	1,282.2		
기정	완54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1037-1일원	164.0	-	164.0		
기정	완55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4단지접면) 웅천동1061-8일원	1,020.0	-	1,020.0		
기정	완56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1061-9일원	1,106.7	-	1,106.7		
기정	완57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1단지접면) 웅천동1061-28일원	683.7	-	683.7		
기정	완61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접면) 웅천동1068일원	197.2	-	197.2		
기정	완63	녹지	완충녹지	대로2-19호선변(고층아파트접면) 웅천동매립지	501.9	-	501.9		
기정	완64	녹지	완충녹지	대로2-19호선변(고층아파트접면) 웅천동매립지	187.7	-	187.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완65	녹지	완충녹지	대로2-19호선변(고층아파트접면) 웅천동매립지	266.9	-	266.9		
기정	완151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2단지접면) 웅천동828-3일원	1,760.5	-	1,760.5		
기정	완152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8단지접면) 웅천동1248-5일원	416.0	-	416.0		
기정	완153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5단지접면) 웅천동389-2일원	2,047.0	-	2,047.0		
기정	완154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2-1단지접면) 웅천동261-1일원	1,810.0	-	1,810.0		
기정	완155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2-2단지접면) 웅천동243-5일원	1,173.0	-	1,173.0		
기정	완156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6-1단지접면) 웅천동1235일원	1,744.0	-	1,744.0		
기정	완157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5-1단지접면) 웅천동258일원	1,901.0	-	1,901.0		
기정	완158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5-2단지접면) 웅천동217일원	1,136.0	-	1,136.0		
기정	완159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4단지접면) 웅천동1064-2일원	201.0	-	201.0		
기정	완160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3단지접면) 웅천동1026-2일원	357.7	-	357.7		
기정	완161	녹지	완충녹지	대로2-18호선변(단독주택3단지접면) 웅천동1032일원	913.1	-	913.1		
기정	완162	녹지	완충녹지	대로2-17호선변(아파트5-2단지접면) 웅천동208일원	1,292.0	-	1,292.0		
기정	완163	녹지	완충녹지	대로2-7호선변(단독주택2단지접면) 웅천동794-1일원	297.0	-	297.0		
기정	경68	녹지	경관녹지	북측지구계주변 웅천동705일원	93,112.0	-	93,112.0		
기정	경69	녹지	경관녹지	오층사공원주변 웅천동666일원	1,064.0	-	1,064.0		
기정	경75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지남측 웅천동235-2일원	3,324.0	-	3,324.0		
기정	경78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동측지구계주변 웅천동산131-4일원	14,646.0	-	14,646.0		
기정	경86	녹지	경관녹지	동측지구계주변 웅천동산169일원	79,428.0	-	79,428.0		
기정	경90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3,230.0	-	3,230.0		
기정	경93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1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802.0	-	802.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94	녹지	경관녹지	청소년문화공원남서측 웅천동매립지	1,215.5	-	1,215.5		
기정	경98	녹지	경관녹지	지구북서측경계(망마공원) 웅천동910일원	65,342.5	-	65,342.5		
기정	경100	녹지	경관녹지	지구서측고층아파트집면 웅천동991일원	3,417.9	-	3,417.9		
기정	경164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2단지주변 웅천동663-1일원	290.0	-	290.0		
기정	경165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2단지주변 웅천동664일원	226.0	-	226.0		
기정	경166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2단지주변 웅천동702일원	1,043.0	-	1,043.0		
기정	경167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2단지주변 웅천동73-28일원	479.0	-	479.0		
기정	경168	녹지	경관녹지	구룡지구택2단지주변 웅천동75-15일원	2,270.0	-	2,270.0		
기정	경169	녹지	경관녹지	단독주택6단지주변 웅천동87일원	613.0	-	613.0		
기정	경170	녹지	경관녹지	지구중심상업주변 웅천동611일원	1,598.0	-	1,598.0		
기정	경171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1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111.0	-	111.0		
기정	경173	녹지	경관녹지	중로3-92호선변(관광휴양상업1단지집면) 웅천동매립지	2,630.0	-	2,630.0		
기정	경174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1,796.0	-	1,796.0		
기정	경175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3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3,546.0	-	3,546.0		
기정	경176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3단지주변 웅천동1557-6일원	1,950.0	-	1,950.0		
기정	경177	녹지	경관녹지	아파트6-1단지주변 웅천동227-3일원	2,896.0	-	2,896.0		
기정	경178	녹지	경관녹지	아파트4단지주변 웅천동292일원	2,954.0	-	2,954.0		
기정	경179	녹지	경관녹지	아파트2-1단지주변 웅천동306-1일원	2,641.0	-	2,641.0		
기정	경180	녹지	경관녹지	아파트2-2단지주변 웅천동337일원	4,407.0	-	4,407.0		
기정	경181	녹지	경관녹지	중로2-80호선변 웅천동234-3일원	1,227.0	-	1,227.0		
기정	경182	녹지	경관녹지	중로2-80호선변 웅천동162일원	1,809.0	-	1,809.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183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12-2일원	368.0	-	368.0		
기정	경184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12-6일원	1,227.0	-	1,227.0		
기정	경185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22-16일원	698.0	-	698.0		
기정	경186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02-1일원	2,518.0	-	2,518.0		
기정	경187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22-17일원	389.0	-	389.0		
기정	경188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산147일원	2,237.0	-	2,237.0		
기정	경189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142일원	416.0	-	416.0		
기정	경190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143일원	410.0	-	410.0		
기정	경191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145일원	442.0	-	442.0		
기정	경192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1단지주변 웅천동128-4일원	2,618.0	-	2,618.0		
기정	경193	녹지	경관녹지	고등학교주변 웅천동358-1일원	8,193.0	-	8,193.0		
기정	경194	녹지	경관녹지	중학교1주변 웅천동404일원	9,931.0	-	9,931.0		
기정	경195	녹지	경관녹지	아파트3-1단지서측 웅천동매립지	133.0	-	133.0		
기정	경196	녹지	경관녹지	관광휴양상업3단지주변 웅천동1556일원	3,629.0	-	3,629.0		
기정	경197	녹지	경관녹지	구릉지주택2단지주변 웅천동82일원	553.0	-	553.0		
기정	경198	녹지	경관녹지	오층사공원주변 626전	39.0	-	39.0		
기정	경199	녹지	경관녹지	오층사공원주변 627전	111.0	-	111.0		
기정	연196	녹지	연결녹지	아파트 2단지 사이 웅천동253-1일원	2,493.0	-	2,493.0		
기정	연197	녹지	연결녹지	아파트 5단지 사이 웅천동257-1일원	2,258.0	-	2,258.0		
기정	연198	녹지	연결녹지	고등학교주변 웅천동341일원	3,483.0	-	3,483.0		
기정	연199	녹지	연결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1,895.0	-	1,895.0		
기정	연200	녹지	연결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2,319.0	-	2,319.0		
기정	연201	녹지	연결녹지	관광휴양상업2단지주변 웅천동매립지	4,246.0	-	4,246.0		

2. 공 원(변경없음)

1) 공원 총괄표

구 분	도시계획구역	
	개 소	면 적(m ²)
합 계	8	543,649.9
근 린 공 원	5	483,850.9
역 사 공 원	2	26,826.0
문 화 공 원	1	32,973.0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9	공원(웅천공원)	근린공원	대로2-7호선주변 웅천동	366,093.0	-	366,093.0		
기정	71	공원(오층사공원)	역사공원	지구중심상업지복측 웅천동624일원	11,202.0	-	11,202.0		
기정	72	공원(청소년문화공원)	근린공원	아파트3단지주변 웅천동1007일원	34,562.7	-	34,562.7		
기정	88	공원(암골못공원)	근린공원	테라스하우스동남측 웅천동99일원	23,171.0	-	23,171.0		
기정	89	공원(웅천못공원)	근린공원	구릉지주택지남측 웅천동228일원	36,490.0	-	36,490.0		
기정	91	공원(자당공원)	역사공원	지구남동측단독주택지구주변 웅천동1419일원	15,624.0	-	15,624.0		
기정	92	공원(해변문화공원)	문화공원	매립지해안변 웅천동매립지	32,973.0	-	32,973.0		
기정	147	공원(친수공원)	근린공원	마리나상부 웅천동매립지	23,534.2	-	23,534.2		

③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시설(변경없음)

1) 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배수지	-	9,309.0	-	9,309.0		
기정	26	배수지	웅천동543-2일원 중로2-44호선주변	7,566.0	-	7,566.0		
기정	27	배수지	웅천동706-4일원 구룡지구택지서측	1,343.0	-	1,343.0		
기정	28	배수지	웅천동73-54일원 테라스하우스북측	400.0	-	400.0		

④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변경없음)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공공청사	-	지구중심상업2단지변 웅천동371일원	2,631.0	-	2,631.0		

2. 학 교(변경없음)

1) 학교 결정(변경)조서

① 유치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유치원	-	5,366.0	-	5,366.0		
기정	110	유치원1	유치원	웅천동328-2일원 중로2-80호선서측	3,150.0	-	3,150.0		
기정	111	유치원2	유치원	웅천동1252-4일원 소로2-933호선서측	2,216.0	-	2,216.0		

② 초등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초등학교	-	50,705.7	-	50,705.7		
기정	79	응천1초교	초등학교	응천동852일원 대로2-7호선서측	19,896.7	-	19,896.7		
기정	80	응천2초교	초등학교	응천동1396-1일원 중로1-81호선변 자당공원동측	14,729.0	-	14,729.0		
기정	81	응천3초교	초등학교	응천동297일원 중로2-80호선변 암골못공원주변	16,080.0	-	16,080.0		

③ 중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	중학교	-	31,577.3	-	31,577.3		
기정	92	응천1중	중학교	응천동290일원 중로1-43호선변 암골못공원주변	16,285.0	-	16,285.0		
기정	95	응천2중	중학교	응천동845일원 단독주택2단지주변	15,292.3	-	15,292.3		

④ 고등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8	응천고교	고등학교	응천동338-1일원 중로2-80호선변 암골못공원주변	17,065.0	-	17,065.0		

⑤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1)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하수도시설2	오수중계펌프장	청소년문화공원 동측	2,031.1	-	2,031.1		

■ 첨부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3,000)

V.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1)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단독1단지 (점포주택 63필지) 24,369.0	1	1,025.4	-1	299.7	점포주택
			-2	242.8	점포주택
			-3	240.0	
			-4	242.9	
	2	970.2	-1	251.9	점포주택
			-2	238.3	점포주택
			-3	250.0	점포주택
			-4	230.0	점포주택
	3	808.8	-1	206.9	
			-2	202.4	
			-3	199.9	
			-4	199.6	점포주택
	4	656.7	-1	220.8	점포주택
			-2	221.9	점포주택
			-3	214.0	점포주택
	5	2,755.8	-1	219.5	점포주택
			-2	216.8	점포주택
			-3	216.0	점포주택
			-4	216.4	점포주택
			-5	216.2	점포주택
			-6	221.6	점포주택
			-7	206.6	점포주택
			-8	206.6	
			-9	206.6	
			-10	206.6	
			-11	207.6	
			-12	207.6	
			-13	207.7	점포주택
	6	2,827.4	-1	219.0	점포주택
			-2	216.5	
			-3	217.3	
			-4	217.4	
			-5	217.4	
			-6	220.4	점포주택
			-7	225.8	점포주택
			-8	212.7	
			-9	213.7	
			-10	213.8	
			-11	213.7	
			-12	213.6	
			-13	226.1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7	1,010.3	-1	250.8	점포주택
			-2	250.7	점포주택
			-3	250.6	점포주택
			-4	258.2	점포주택
	8	1,502.4	-1	210.5	점포주택
			-2	216.5	점포주택
			-3	212.3	점포주택
			-4	216.6	점포주택
			-5	216.6	점포주택
			-6	215.1	점포주택
			-7	214.8	점포주택
	9	1,049.7	-1	208.8	점포주택
			-2	210.3	점포주택
			-3	210.1	점포주택
			-4	210.2	점포주택
			-5	210.3	점포주택
	10	2,029.2	-1	225.3	점포주택
			-2	223.5	
			-3	223.4	
			-4	223.6	
			-5	225.1	
			-6	224.9	
			-7	224.8	
			-8	223.8	
			-9	234.8	점포주택
			-10	226.7	점포주택
	11	1,979.0	-1	226.7	점포주택
			-2	226.7	
			-3	226.8	
			-4	226.7	
			-5	214.3	
			-6	214.5	
			-7	214.4	
			-8	215.4	
			-9	213.5	점포주택
	12	1,046.0	-1	204.3	점포주택
			-2	210.1	점포주택
			-3	210.2	점포주택
			-4	210.2	점포주택
			-5	211.2	점포주택
	13	848.2	-1	212.3	점포주택
			-2	212.3	점포주택
			-3	212.3	점포주택
			-4	211.3	점포주택
	14	1,547.1	-1	228.0	
			-2	228.0	
			-3	228.9	
			-4	218.8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5	214.8	
			-6	214.8	
			-7	213.8	
	15	1,583.9	-1	224.8	
			-2	224.8	
			-3	226.0	
			-4	235.3	
			-5	224.3	
			-6	224.3	
			-7	224.4	
	16	1,208.6	-1	239.0	점포주택
			-2	237.9	점포주택
			-3	237.9	점포주택
			-4	237.8	점포주택
			-5	256.0	점포주택
	17	1,520.3	-1	217.0	점포주택
			-2	215.0	점포주택
			-3	215.0	점포주택
			-4	215.0	점포주택
			-5	214.9	점포주택
			-6	214.9	점포주택
			-7	228.5	점포주택
단독2단지 (점포주택 52필지) 24,095.9	1	2,211.7	-1	363.4	점포주택
			-2	370.3	점포주택
			-3	369.4	점포주택
			-4	368.3	점포주택
			-5	370.7	점포주택
			-6	369.6	점포주택
	2	972.5	-1	244.7	점포주택
			-2	242.6	점포주택
			-3	243.6	점포주택
			-4	241.6	점포주택
	3	812.8	-1	203.0	점포주택
			-2	203.0	점포주택
			-3	203.9	점포주택
			-4	202.9	점포주택
	4	1,610.7	-1	208.4	
			-2	208.4	
			-3	208.3	
			-4	209.4	
			-5	182.5	
			-6	197.5	
			-7	197.8	
			-8	198.4	
	5	1,231.2	-1	210.9	
			-2	211.0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3	211.0	
			-4	198.8	
			-5	199.7	
			-6	199.8	
	6	1,951.3	-1	220.7	점포주택
			-2	214.6	점포주택
			-3	212.6	점포주택
			-4	210.5	점포주택
			-5	218.2	
			-6	218.1	
			-7	218.2	
			-8	218.2	
			-9	220.2	점포주택
	7	1,721.7	-1	221.6	
			-2	222.5	
			-3	220.5	
			-4	220.5	
			-5	209.9	
			-6	208.9	
			-7	208.9	
			-8	208.9	
	8	1,739.7	-1	222.9	점포주택
			-2	222.8	
			-3	222.9	
			-4	223.9	
			-5	208.9	
			-6	210.8	
			-7	212.7	
			-8	214.8	점포주택
	9	1,936.1	-1	219.4	점포주택
			-2	219.4	
			-3	219.4	
			-4	220.5	
			-5	212.0	
			-6	211.1	
			-7	211.1	
			-8	211.1	
			-9	212.1	점포주택
	10	2,164.3	-1	222.1	점포주택
			-2	222.1	
			-3	222.2	
			-4	222.2	
			-5	221.2	
			-6	211.7	
			-7	210.7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8	210.7	
			-9	210.7	
			-10	210.7	점포주택
	11	2,443.8	-1	222.5	점포주택
			-2	222.5	
			-3	222.5	
			-4	222.5	
			-5	223.5	
			-6	224.3	
			-7	221.2	
			-8	221.2	
			-9	221.2	
			-10	221.2	
			-11	221.2	점포주택
	12	1,514.3	-1	216.8	점포주택
			-2	216.0	점포주택
			-3	215.8	점포주택
			-4	215.9	점포주택
			-5	215.9	점포주택
			-6	215.9	점포주택
			-7	218.0	점포주택
	13	1,720.4	-1	215.1	점포주택
			-2	215.0	점포주택
			-3	215.1	점포주택
			-4	215.0	점포주택
			-5	215.0	점포주택
			-6	215.1	점포주택
			-7	215.0	점포주택
			-8	215.1	점포주택
	14	2,065.4	-1	202.4	점포주택
			-2	206.3	점포주택
			-3	206.4	점포주택
			-4	206.4	점포주택
			-5	206.3	점포주택
			-6	206.2	점포주택
			-7	206.4	점포주택
			-8	206.3	점포주택
			-9	207.4	점포주택
			-10	211.3	점포주택
단독3단지 (점포주택 22필지)	1	625.8	-1	208.6	점포주택
			-2	208.6	점포주택
11,659.5			-3	208.6	점포주택
	2	2,571.6	-1	223.7	점포주택
			-2	215.6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3	215.6	점포주택
			-4	215.5	점포주택
			-5	215.5	점포주택
			-6	215.5	점포주택
			-7	207.5	
			-8	213.6	
			-9	214.5	
			-10	215.6	
			-11	216.5	
			-12	202.5	
	3	3,364.7	-1	209.1	
			-2	209.4	
			-3	209.4	
			-4	209.5	
			-5	209.5	
			-6	209.5	
			-7	209.5	
			-8	223.5	점포주택
			-9	209.2	점포주택
			-10	209.4	
			-11	209.3	
			-12	209.3	
			-13	209.4	
			-14	209.5	
			-15	209.6	
			-16	209.6	
	4	2,122.5	-1	239.5	
			-2	206.4	
			-3	204.5	
			-4	205.4	
			-5	210.4	
			-6	211.4	
			-7	202.6	
			-8	202.5	
			-9	202.5	
			-10	237.3	
	5	1,228.9	-1	199.3	점포주택
			-2	206.2	점포주택
			-3	206.4	점포주택
			-4	206.3	점포주택
			-5	206.4	점포주택
			-6	204.3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6	1,746.0	-1	218.3	
			-2	218.3	
			-3	218.4	
			-4	217.3	점포주택
			-5	219.2	점포주택
			-6	213.0	점포주택
			-7	212.7	점포주택
			-8	228.8	점포주택
단독4단지 (점포주택 47필지) 17,393.8	1	706.2	-1	235.1	점포주택
			-2	235.1	점포주택
			-3	236.0	점포주택
	2	711.5	-1	236.1	점포주택
			-2	237.2	점포주택
			-3	238.2	점포주택
	3	2,067.5	-1	229.6	
			-2	230.5	
			-3	230.5	
			-4	230.4	
			-5	233.4	
			-6	230.5	
			-7	227.6	
			-8	227.5	
			-9	227.5	
	4	1,101.9	-1	219.2	
			-2	219.2	
			-3	221.1	
			-4	222.1	
			-5	220.3	
	5	1,192.7	-1	239.1	점포주택
			-2	237.2	점포주택
			-3	237.1	점포주택
			-4	237.2	점포주택
			-5	242.1	점포주택
	6	923.6	-1	230.6	점포주택
			-2	230.6	점포주택
			-3	230.6	점포주택
			-4	231.8	점포주택
	7	1,341.1	-1	223.4	점포주택
			-2	222.5	점포주택
			-3	225.5	점포주택
			-4	223.5	점포주택
			-5	223.6	점포주택
			-6	222.6	점포주택
	8	1,388.1	-1	230.1	점포주택
			-2	230.3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3	230.2	점포주택
			-4	230.2	점포주택
			-5	230.2	점포주택
			-6	237.1	점포주택
	9	682.1	-1	222.0	점포주택
			-2	222.0	점포주택
			-3	238.1	점포주택
	10	1,329.0	-1	219.0	점포주택
			-2	222.2	점포주택
			-3	221.9	점포주택
			-4	222.0	점포주택
			-5	221.9	점포주택
			-6	222.0	점포주택
	11	2,043.6	-1	227.3	
			-2	226.1	
			-3	226.1	
			-4	226.1	
			-5	227.2	
			-6	228.2	
			-7	227.1	
			-8	227.2	
			-9	228.3	
	12	1,328.5	-1	215.6	
			-2	215.6	
			-3	215.6	
			-4	215.6	
			-5	233.6	
			-6	232.5	
	13	1,149.0	-1	229.4	점포주택
			-2	228.5	점포주택
			-3	228.4	점포주택
			-4	228.4	점포주택
			-5	234.3	점포주택
	14	1,429.0	-1	238.0	점포주택
			-2	239.1	점포주택
			-3	238.9	점포주택
			-4	240.0	점포주택
			-5	237.0	점포주택
			-6	236.0	점포주택
단독5단지 (점포주택 31필지)	1	4,074	-1	227	점포주택
			-2	227	점포주택
12,978			-3	227	점포주택
			-4	227	점포주택
			-5	227	점포주택
			-6	227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7	227	점포주택
			-8	227	점포주택
			-9	227	점포주택
			-10	226	점포주택
			-11	226	점포주택
			-12	226	점포주택
			-13	226	점포주택
			-14	226	점포주택
			-15	226	점포주택
			-16	226	점포주택
			-17	226	점포주택
			-18	223	점포주택
	2	1,024	-1	256	점포주택
			-2	256	점포주택
			-3	256	점포주택
			-4	256	점포주택
	3	3,208	-1	229	
			-2	229	
			-3	229	
			-4	229	
			-5	229	
			-6	229	
			-7	230	
			-8	229	
			-9	229	
			-10	229	
			-11	229	
			-12	229	
			-13	229	
			-14	230	
	4	2,521	-1	229	
			-2	229	
			-3	229	
			-4	229	
			-5	229	
			-6	230	
			-7	229	
			-8	229	
			-9	229	
			-10	229	
			-11	230	
	5	2,151	-1	239	점포주택
			-2	239	점포주택
			-3	239	점포주택
			-4	239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5	239	점포주택
			-6	239	점포주택
			-7	239	점포주택
			-8	239	점포주택
			-9	239	점포주택
단독6단지 (점포주택 53필지) 28,720	1A	3,852	-1	208	
			-2	215	
			-3	215	
			-4	215	
			-5	215	
			-6	215	
			-7	215	
			-8	215	
			-9	221	점포주택
			-10	220	점포주택
			-11	213	
			-12	213	
			-13	213	
			-14	213	
			-15	213	
			-16	213	
			-17	213	
				2A	2,727
-1	223				
-2	229				
-3	229				
-4	229				
-5	229				
-6	229				
-7	235	점포주택			
-8	223				
-9	223				
-10	224				
-11	224				
	3A	1,011	-12	230	
			-1	274	점포주택
			-2	260	점포주택
			-3	247	점포주택
	4A	2,154	-4	230	점포주택
			-1	199	점포주택
			-2	174	점포주택
			-3	225	점포주택
			-4	229	점포주택
			-5	309	점포주택
			-6	320	점포주택
-7	238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8	229	점포주택
			-9	231	점포주택
	5A	3,202	-1	221	점포주택
			-2	222	
			-3	222	
			-4	222	
			-5	222	
			-6	222	
			-7	222	점포주택
			-8	206	점포주택
			-9	206	
			-10	206	
			-11	206	
			-12	206	
			-13	206	
			-14	206	
			-15	207	점포주택
	6A	2,789	-1	222	점포주택
			-2	222	
			-3	222	
			-4	222	
			-5	222	
			-6	222	
			-7	221	점포주택
			-8	206	점포주택
			-9	206	
			-10	206	
			-11	206	
			-12	206	
			-13	206	
	7A	908	-1	227	점포주택
			-2	227	점포주택
			-3	227	점포주택
			-4	227	점포주택
	8A	1,842	-1	232	점포주택
			-2	230	점포주택
			-3	230	점포주택
			-4	230	점포주택
			-5	230	점포주택
			-6	230	점포주택
			-7	230	점포주택
			-8	230	점포주택
	9A	4,189	-1	225	점포주택
			-2	225	
			-3	225	
			-4	225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5	225	
			-6	225	
			-7	225	
			-8	229	
			-9	225	점포주택
			-10	240	점포주택
			-11	240	
			-12	240	
			-13	240	
			-14	240	
			-15	240	
			-16	240	
			-17	240	
			-18	240	점포주택
	10B	3,414	-1	236	점포주택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7	238	
			-8	220	
			-9	220	
			-10	220	
			-11	220	
			-12	220	
			-13	220	
			-14	220	
			-15	220	점포주택
	11B	2,071	-1	208	점포주택
			-2	208	점포주택
			-3	208	점포주택
			-4	208	점포주택
			-5	208	점포주택
			-6	208	점포주택
			-7	208	점포주택
			-8	208	점포주택
			-9	208	점포주택
			-10	199	점포주택
	12B	561	-1	280	점포주택
			-2	281	점포주택
단독7단지 (점포주택 21필지)	1	1,428.0	-1	244.0	점포주택
12,556.6			-2	238.0	점포주택
			-3	237.0	점포주택
			-4	235.0	점포주택
			-5	238.0	점포주택
			-6	236.0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2	1,618.2	-1	209.9	
			-2	198.9	
			-3	198.9	
			-4	208.9	
			-5	202.0	
			-6	198.9	
			-7	198.9	
			-8	201.8	
	3	2,177.0	-1	221.1	
			-2	217.0	
			-3	214.2	
			-4	211.1	
			-5	212.1	점포주택
			-6	222.1	점포주택
			-7	217.1	
			-8	217.1	
			-9	218.1	
			-10	227.1	
	4	2,206.7	-1	230.0	
			-2	219.1	
			-3	219.1	
			-4	219.1	
			-5	224.0	점포주택
			-6	219.1	점포주택
			-7	219.1	
			-8	219.1	
			-9	219.1	
			-10	219.0	
	5	3,142.9	-1	234.8	
			-2	223.8	
			-3	223.8	
			-4	223.8	
			-5	223.7	
			-6	223.8	
			-7	227.8	점포주택
			-8	223.8	점포주택
			-9	222.8	
			-10	222.8	
			-11	222.8	
			-12	222.7	
			-13	222.8	
			-14	223.7	
	6	1,269.8	-1	213.8	점포주택
			-2	210.8	점포주택
			-3	210.8	점포주택
			-4	210.8	점포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5	209.8	점포주택
			-6	213.8	점포주택
	7	714.0	-1	238.0	점포주택
			-2	238.0	점포주택
			-3	238.0	점포주택
단독8단지 (점포주택 28필지)	1	4,068	-1	230	점포주택
			-2	230	점포주택
7,443			-3	227	점포주택
			-4	227	점포주택
			-5	168	점포주택
			-6	226	점포주택
			-7	227	점포주택
			-8	227	점포주택
			-9	229	점포주택
			-10	233	점포주택
			-11	232	점포주택
			-12	231	점포주택
			-13	231	점포주택
			-14	230	점포주택
			-15	230	점포주택
			-16	230	점포주택
			-17	230	점포주택
			-18	230	점포주택
	2	2,223	-1	232	점포주택
			-2	231	점포주택
			-3	231	점포주택
			-4	231	점포주택
			-5	232	점포주택
			-6	212	
			-7	212	
			-8	213	
			-9	217	
			-10	212	점포주택
	3	1,152	-1	231	점포주택
			-2	232	
			-3	232	점포주택
			-4	231	점포주택
			-5	226	점포주택

2) 구룡지주택(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구룡지1단지	1	3,115	-1	796	
			-2	702	
			-3	760	
			-4	857	
	2	11,810	-1	730	
			-2	899	
			-3	706	
			-4	707	
			-5	716	
			-6	693	
			-7	585	
			-8	742	
			-9	846	
			-10	577	
			-11	621	
			-12	614	
			-13	674	
	3	3,382	-1	777	
			-2	763	
			-3	687	
			-4	596	
			-5	559	
	4	4,535	-1	785	
			-2	794	
			-3	790	
			-4	776	
			-5	686	
			-6	704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5	1,710	-1	862	
			-2	848	
	6	2,594	-1	861	
			-2	889	
			-3	844	
	7	2,391	-1	797	
			-2	797	
			-3	797	
구룡지2단지	1	2,008	-1	674	
			-2	672	
			-3	662	
	2	5,237	-1	692	
			-2	658	
			-3	633	
			-4	673	
			-5	689	
			-6	559	
			-7	560	
			-8	773	
	3	4,584	-1	610	
			-2	645	
			-3	660	
			-4	665	
			-5	659	
			-6	642	
			-7	703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1) 아파트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아파트1단지	1-1	32,276.6	1-1	32,276.6	
	1-2	35,356.5	1-2	35,356.5	
아파트2단지	2-1	29,820.0	2-1	29,820.0	
	2-2	33,649.0	2-2	33,649.0	
아파트3단지	3-1	24,490.2	3-1	24,490.2	
	3-2	31,828.8	3-2	31,828.8	
아파트4단지	-	32,332.0	-	32,332.0	
아파트5단지	5-1	31,991.0	5-1	31,991.0	
	5-2	23,446.0	5-2	23,446.0	
아파트6단지	6-1	64,222.0	6-1	64,222.0	
	6-2	29,805.0	6-2	29,805.0	
아파트7단지	-	15,338.0	-	15,338.0	

2) 테라스하우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테라스하우스	-	36,794	-1	12,264	
			-2	12,265	
			-3	12,265	

3) 타운하우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타운하우스1단지	1	20,367	-1	9,864	
			-2	10,503	
타운하우스2단지	2	44,633	-1	8,459	
			-2	12,411	
			-3	12,449	
			-4	11,314	

3. 상업용지(변경없음)

1) 지구중심상업(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지구중심상업1단지	1	4,589.3	-1	796.2	
			-2	795.2	
			-3	794.2	
			-4	1,140.3	
			-5	1,063.4	
	2	6,014.4	-1	3,627.5	
			-2	1,317.5	
			-3	1,069.4	
	3	3,601.6	-1	719.4	
			-2	719.7	
			-3	719.5	
			-4	719.5	
			-5	723.5	
	지구중심상업2단지	1	7,830	-1	1,951
-2				1,730	
-3				1,100	
-4				1,431	
-5				1,618	
2		3,493	-1	1,203	
			-2	1,016	
			-3	1,274	
3		2,831	-1	953	
			-2	939	
			-3	939	
4		2,920	-1	960	
			-2	980	
			-3	980	
5		1,860	-1	939	
			-2	921	
6		1,967	-1	980	
			-2	987	
7		2,050	-1	1,021	
			-2	1,029	

2) 관광휴양상업(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관광휴양상업1단지	1	13,444.1	-	13,444.1	
	2	15,940.5	-	15,940.5	
	3	13,237	-	13,237	
	4	1,663	-1	755	
			-2	908	
	5	2,247	-1	650	
			-2	681	
			-3	916	
	6	17,717	-1	7,100	
			-2	10,617	
관광휴양상업2단지	1	8,722	-	8,722	
	2	12,365	-	12,365	
	3	2,766	-1	986	
			-2	986	
			-3	794	
	4	2,232	-1	371	
			-2	376	
			-3	380	
			-4	380	
			-5	362	
			-6	363	
	5	3,180	-1	296	
			-2	309	
			-3	316	
			-4	324	
			-5	323	
			-6	323	
			-7	325	
			-8	325	
			-9	324	
			-10	315	
	6	3,832	-1	475	
			-2	465	
			-3	483	
		-4	483		
		-5	478		
		-6	478		
		-7	485		
		-8	485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관광휴양상업2단지	7	3,850	-1	684	
			-2	687	
			-3	687	
			-4	677	
			-5	1,115	
	8	4,017	-1	718	
			-2	743	
			-3	743	
			-4	698	
			-5	1,115	
	9	4,118	-1	945	
			-2	936	
			-3	948	
			-4	1,289	
	10	2,668	-1	332	
			-2	329	
			-3	332	
			-4	330	
			-5	329	
			-6	328	
			-7	328	
			-8	360	
	11	3,091	-1	306	
			-2	311	
			-3	316	
			-4	316	
			-5	316	
			-6	316	
			-7	316	
			-8	316	
			-9	301	
			-10	277	
	12	4,302	-1	482	
			-2	482	
			-3	482	
			-4	482	
			-5	482	
			-6	482	
			-7	482	
			-8	482	
			-9	446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관광휴양상업3단지	1	10,301	-1	1,200	
			-2	863	
			-3	867	
			-4	869	
			-5	869	
			-6	873	
			-7	1,249	
			-8	3,511	
	2	12,109	-1	6,140	
			-2	5,969	
	3	46,055	-1	9,114	
			-2	15,302	
			-3	16,014	
			-4	5,625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근생1	1	1,691.5	-1	209.4	
			-2	210.3	
			-3	210.4	
			-4	210.3	
			-5	213.5	
			-6	211.4	
			-7	212.4	
			-8	213.8	
근생2	1	715.3	-1	234.1	
			-2	227.8	
			-3	253.4	
	2	463.8	-1	234.9	
			-2	233.9	
	3	575.6	-1	290.2	
			-2	285.4	
	4	834.2	-1	208.5	
			-2	208.5	
			-3	208.7	
-4			208.5		
-4			208.5		
근생3	1	891.2	-1	224.3	
			-2	224.3	
			-3	224.4	
			-4	218.2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근생4	1	705.2	-1	235.1	
			-2	235.1	
			-3	235.0	
근생5	1	239.0	-1	239.0	
	2	1,032.0	-1	258.0	
			-2	258.0	
			-3	258.0	
			-4	258.0	
	3	453.0	-1	227.0	
		-2	226.0		
근생6	1	445.0	-1	229.0	
			-2	216.0	
	2	681.0	-1	227.0	
			-2	227.0	
		-3	227.0		
근생7	1	748.0	-1	249.0	
			-2	248.0	
			-3	251.0	
근생8	1	4,486.5	-1	4,486.5	
	2	2,008.5	-1	664.9	
			-2	665.0	
			-3	678.6	
	3	3,856.5	-1	964.0	
			-2	964.0	
			-3	964.2	
			-4	964.3	
	4	4,580.2	-1	457.5	
			-2	457.9	
			-3	458.0	
			-4	457.8	
			-5	458.9	
			-6	459.0	
			-7	457.7	
			-8	458.0	
			-9	458.0	
		-10	457.4		
5	1,619.8	-1	404.8		
		-2	405.1		
		-3	404.9		
		-4	405.0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공공업무1단지	-	27,904.6	-1	4,752.0	
			-2	6,652.6	
			-3	16,500.0	
공공업무2단지	-	2,631.0	-1	651.0	지역정보센터
			-2	660.0	
			-3	660.0	
			-4	660.0	
공공업무3단지	-	6,498.0	-	6,498.0	
공공업무4단지	-	2,665.9	-	2,665.9	
공공업무5단지	-	1,650.0	-	1,650.0	
공공업무6단지	-	5,159.0	-	5,159.0	

6.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산업연구용지	1	21,587	-1	10,853	R&D
			-2	10,734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유1	-	3,150.0	-	3,150.0	
유2	-	2,216.0	-	2,216.0	
초1	-	19,896.7	-	19,896.7	
초2	-	14,729.0	-	14,729.0	
초3	-	16,080.0	-	16,080.0	
중1	-	16,285.0	-	16,285.0	
중2	-	15,292.3	-	15,292.3	
고	-	17,065.0	-	17,065.0	

2)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종교1	-	771.0	-	771.0	
종교2	-	1,089.0	-	1,089.0	
종교3	-	1,750.0	-	1,750.0	
종교4	-	947.0	-	947.0	
종교5	-	754.0	-	754.0	

3)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의료1	-	19,543	-	19,543	
의료2	-	13,206	-	13,206	

4) 어항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어항	-	1,066	-	1,066	

5) 마리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마리나1	-	21,533	-	21,533	
마리나2	-	3,626	-	3,626	
마리나3	-	1,910	-	1,910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차1	-	17,053.6	-	17,053.6	
주차2	-	5,721.0	-	5,721.0	
주차3	-	1,116.6	-	1,116.6	
주차4	-	446.5	-	446.5	
주차5	-	600.1	-	600.1	
주차6	-	398.2	-	398.2	
주차7	-	182.4	-	182.4	
주차8	-	406.5	-	406.5	
주차9	-	402.7	-	402.7	
주차10	-	1,042.9	-	1,042.9	
주차11	-	1,743.0	-	1,743.0	
주차12	-	441.0	-	441.0	
주차13	-	413.0	-	413.0	
주차14	-	793.0	-	793.0	
주차15	-	459.0	-	459.0	
주차16	-	866.0	-	866.0	
주차17	-	3,777.0	-	3,777.0	
주차18	-	3,014.0	-	3,014.0	
주차19	-	2,261.0	-	2,261.0	

7) 수도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배수지1	-	7,566.0	-	7,566.0	
배수지2	-	1,343.0	-	1,343.0	
배수지3	-	400.0	-	400.0	
오수중계	-	2,031.1	-	2,031.1	오수중계펌프장

8)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문화시설	-	2,405	-	2,405	

9) 노유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노유자1	-	622.8	-	622.8	
노유자2	-	1,547.0	-	1,547.0	

10) 에듀파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에듀파크	-	8,856	-	8,856	

11) 마을회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마을회관1	-	298.6	-	298.6	
마을회관2	-	279.5	-	279.5	
마을회관3	-	296.9	-	296.9	
마을회관4	-	229.0	-	229.0	
마을회관5	-	288.4	-	288.4	
마을회관6	-	232.0	-	232.0	

12) 마을공동작업소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마을공동작업소	-	6,240.0	-	6,240.0	

13) 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통신시설	-	233.2	-	233.2	

■ 첨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1) 단독주택(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 8단지	지침도상의 단독1 ~ 단독 8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 모든 필지는 필지의 분할은 금지하고, 필지의 합병은 1회에 한하여 2개의 필지내 에서 허용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 참조(괄호 안은 해당 필지 번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표시(D1) 및 적용 · 단독1단지 : 1(3,4),3(1-3),5(8-12),6(2-5,8-12),10(2-8),11(2-8),14,15블럭-47필지 · 단독3단지 : 4,5,6(5-8),7,8(2-4,5-7),9(2-8),10(2-9),11(2-10)블럭-56필지 · 단독3단지 : 2(7-12),3(1-7,10-16),4,6(1-3)블럭-33필지 · 단독4단지 : 3,4,11,12블럭-29필지 · 단독5단지 : 3,4블럭-25필지 · 단독6단지 : 1A(1-8,11-18),2A(1-6,8-12),5A(2-6,9-14),6A(2-6,9-13),9A(2-8,11-17), 10B(2-14)블럭-75필지 · 단독7단지 : 2,3(1-4,7-10),4(1-4,7-10),5(1-6,9-14)블럭-36필지 · 단독8단지 : 2(6-9),3(2)블럭-5필지 ■ 용도표시(D2) 및 적용 · 단독1단지 : 1(1,2),2,3(4),4(1-3),5(1-7,13),6(1,6,7,13),7,8,9(1-5),10(1,9),11(1,9),12,13, 16,17블럭-63필지 · 단독2단지 : 1,2,3,6(1-4,9),8(1,8),9(1,9),10(1,10),11(1,11),12,13,14블럭-52필지 · 단독3단지 : 1,2(1-6),3(8,9),5,6(4-8)블럭-22필지 · 단독4단지 : 1,2,5,6,7,8,9,10,13,14블럭-47필지 · 단독5단지 : 1,2,5블럭-31필지 · 단독6단지 : 1A(9,10),2A(7),3A,4A,5A(1,7,8,15),6A(1,7,8),7A,8A,9A(1,9,10,18),10B(1,15), 11B,12B블럭-53필지 · 단독7단지 : 1,3(5,6),4(5,6),5(7,8),6,7블럭-21필지 · 단독8단지 : 1(1-18),2(1-5,10),3(1,3-5)블럭-28필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를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는 불허한다.
		세대수	·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3세대 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60%이하	· 지구단위계획 수립전 기허가된 필지는 예외로 함(해당 용도지역상 건축물 입지기 준 적용)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3층 이하(단,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4층까지 가능) - 용적률 산입에서는 제외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괄호 안은 해당 필지 번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지침도 참조)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 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면공지는 전면보도와 같이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주택 건축한계선 1m 지정 - 단독1단지-1,7블럭의 20m도로변, 8,9블럭의 가구 단변 - 단독2단지-12블럭의 10m진입도로변 - 단독3단지-1블럭의 20m도로변 - 단독4단지-1,2,5,6,7,8,9,13,14블럭의 가구 단변 - 단독5단지-1블럭의 22m도로변 - 단독6단지-3A블럭의 15m진입도로변, 3A,7A,11B블럭의 22m도로변, 4A블럭의 12m 도로변,4A,7A,8A,11B블럭의 10m진입도로변, 9A,12B블럭의 15m진입도로변 - 단독7단지-6,7블럭의 15m도로변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 8단지	지침도상의 단독1 ~ 단독 8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기준 ·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대지는 여수시주차장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하나의 필지에는 최소 1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가구주택 및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 8단지	지침도상의 단독1 ~ 단독 8단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p>① 지 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 옥상의 이용은 옥외창고 이용을 규제하며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p>② 외 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 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 8단지	지침도상의 단독1 ~ 단독 8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위치 ·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설치한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2) 구릉지주택(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 모든 대지는 필지분할 및 합병을 금지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2 참조 ■ 용도표시(D3) 및 적용 · 구릉지 1단지, 2단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며 지하층의 주거용도로 사용을 불허한다.
			세대수	· 구릉지주택용지내 1필지당 세대수는 1세대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2층이하 (단,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3층까지 가능하며 용적률 산입에서는 제외)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 진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	■ 주차장의 설치기준	· 구릉지주택용지내 모든 대지는 여수시주차장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 준에 따라 설치하되, 하나의 필지에는 최소 1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 모든 필지는 자수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 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도로 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건축물의 배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 - 경사형 획지로 획지내 지형이 높은 곳에 건축물의 배치를 권장한다.(전면부 녹지확보 및 해안부 조망권 확보) - 경사형 지형에 인공대지(테크)를 조성하는 주택배치를 권장한다. · 원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접한 대지와와의 단차를 최소화하며 옹벽등의 설치는 가능한 배제하고 식재를 통해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태	①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 옥상의 이용은 옥외창고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함) ② 외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재는 환경친화형 자재를 권장한다.(목재, 자연석 활용 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릉지 1,2단지	지침도상의 구릉지 1,2단지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건축물의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한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1) 아파트(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유형	<p>■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2-1단지 · 아파트2-2단지 · 아파트3-1단지 ·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p>■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1-1단지 · 아파트1-2단지 · 아파트5-1단지 · 아파트5-2단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아파트6-2단지, 아파트7단지	150% 이하
				· 아파트4단지, 아파트6-1단지	180% 이하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220% 이하
			건폐율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20% 이하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25% 이하
				· 아파트6-2단지 · 아파트7단지	30% 이하
			높 이	· 아파트6-2단지	12층 이하
				· 아파트3-1단지, 아파트3-2단지 · 아파트4단지 · 아파트6-1단지 · 아파트7단지	15층 이하
				· 아파트1-1단지, 아파트1-2단지 · 아파트2-1단지, 아파트2-2단지 · 아파트5-1단지, 아파트5-2단지	25층 이하
				· 층수제한의 예외(12층제한) - 아파트 3-1, 3-2단지의 보행자도로변(30m) · 층수제한의 예외(7층제한) - 아파트 6-1단지의 단독주택변(50m)	
			· 아파트용지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하로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에 표기된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한다. 			
			<p>■ 건축한계선의 지정(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단지의 20m도로변 · 아파트 2-1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3-1, 3-2단지의 20m, 30m도로변 · 아파트 4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5-1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6-1, 6-2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7단지의 22m도로변 </td> <td>5m</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단지의 20m도로변 · 아파트 2-1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3-1, 3-2단지의 20m, 30m도로변 · 아파트 4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5-1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6-1, 6-2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7단지의 22m도로변 	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단지의 20m도로변 · 아파트 2-1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3-1, 3-2단지의 20m, 30m도로변 · 아파트 4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5-1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6-1, 6-2단지의 22m도로변 · 아파트 7단지의 22m도로변 	5m			
		직각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 서는 상기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pm 22.5^\circ$ 범위내의 배치한다. - 탑상형 또는 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pm 45^\circ$ 범위내의 배치한다. (시행지침 제28조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2-1, 2-2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4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5-1, 5-2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6-1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6-2단지의 30m도로변 · 아파트 7단지의 30m도로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p>■ 층수차이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1개동의 층수 변화는 3개층 이하로 한다. 		
<p>■ 주동의 전면길이 제한</p> <table border="1"> <tr> <td>· 6층이상~15층이하, 15층초과(전용면적 60㎡이하)</td> <td>4호연립 이하</td> </tr> <tr> <td>· 15층초과(전용면적 60㎡초과)</td> <td>2호연립 이하</td> </tr> </table>	· 6층이상~15층이하, 15층초과(전용면적 60㎡이하)			4호연립 이하	· 15층초과(전용면적 60㎡초과)	2호연립 이하
· 6층이상~15층이하, 15층초과(전용면적 60㎡이하)	4호연립 이하					
· 15층초과(전용면적 60㎡초과)	2호연립 이하					
<p>■ 주동의 형태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2-1, 2-2, 4단지의 학교부지인접 주동은 학교에 대한 일조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탑상형의 제한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 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단지내 차량 잔출입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주차장
기타사항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잔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건축물의 규모	높 이	· 아파트3-1, 3-2단지의 중심부에 최고층수허용지역(20층이하)을 설치한다.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배 치	·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권장한다. · 남향위주로 배치를 권장한다. · 가로축과 자연맥락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권장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아파트 1동의 입면적을 3,50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단,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면 입면적의 10%범위 안에서 완화한다. (21층 이상의 주거동의 경우 20%범위 안에서 완화 가능) ·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ㄴ, 타워형으로 된 경우 건축물의 길이는 최장 수평등각선의 길이로 한다. · 지붕 - 아파트의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파트 1층 부분에 개별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통경 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2개층이상의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색 채	·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아파트 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하나의 단지내 2개소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한다.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 단지 외곽도로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허부식생을 조성한 차폐식재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쌈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쌈지공원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따라야 하며 면적은 5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치면적의 조정이 가능하며, 면적의 경우 ±10%이내를 조정범위로 한다.
			단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단지내 보행 및 자전거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은 용천지구 전체의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과 연계 배치한다. · 차량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학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계 설치한다. · 보행자통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하고 바닥포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유사하게 포장한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를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이 경우 아파트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1~7단지	지침도상의 아파트 1~7단지	기타사항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단지내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포장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한다.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친환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지반 면적률 - 아파트용지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투수 면적률 -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 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녹지 면적률 -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사항을 준용한다.
			안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진입도로변에는 경비실을 설치한다. · 주택단지내 공중변소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권장한다.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생활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및 규모 -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범위 내로 설정한다. · 배치 - 가능한 단지 진입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지내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한다.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노인정, 휴게시설 등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과 만나는 결절점 부근에 배치한다. ·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야간경관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3-1, 3-2단지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2) 테라스하우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테라스하우스용지는 동일 사업자의 경우 획지간의 합병을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4 참조 ■ 용도표시(A3) 및 적용 · 테라스하우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150%이하(허용용적률) · 테라스하우스 계획세대수는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규모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건축시 건축구조에 따라 세대수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승인권자가 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건축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용용적률 범위 안에서 세대수의 조정(상향)이 가능토록(단, 세대수 증가시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건폐율	· 50%이하
			높 이	· 4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 출입구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이내의 구간 · 공동주차장은 단지내 도로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도로와 같은 레벨로 지하 부분에 주차하도록 한다.
			단지내 차량출입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 ·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 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85㎡이하 : 85㎡당 1대, - 85㎡초과 : 70㎡당 1대
		기타사항	부대복리 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위주의 배치로 하며, 해안으로의 조망권을 극대화하는 단차형으로 각 세대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건물 1동의 전면길이는 6호 주택 이내가 되도록 한다. · 혼합형(연립형+테라스형)일 경우 연립형 주택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테라스하우스 형태일 경우 중첩비를 70% 이하가 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광 등을 고려 각 세대의 깊이를 6m 이하로 권장 · 건축물의 지붕에는 옥상조경을 하여 윗 세대의 외부공간으로 활용 권장 · 건축물의 최하층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거와 도로사이의 프라이버시 확보 권장 · 각 세대의 폭과 길이의 비는 각 세대가 일정한 경사로 하강 할 수 있을 때 까지 변화하며 세대당 2.7m 높이를 유지하고 최대 3.2m이내를 권장한다.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층주거의 옥상을 상층주거의 테라스로 이용하는 지붕형태 유도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의위원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세대의 폭과 길이의 비는 각 세대가 일정한 경사로 하강할 수 있을때까지 변화하며 세대당 2.7m의 높이차가 적정하다.(최대 3.2m이내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 참조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라스 하우스	지침도상의 테라스하우스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의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단지내 도로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용 계단은 등고선에 수직으로 배치하여 주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위 주거 사이의 보행통로는 채광, 환기 등이 가능하게 배치한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대지를 기준하여 1.5m이하로 한다. · 자연지반 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스하우스용지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투수 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기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녹지 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3) 타운하우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 타운하우스용지는 동일 사업자의 경우 획지간의 합병을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120%이하
			건폐율	· 35%이하
			높 이	· 4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는 상기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 -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 교선에 대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22.5° 범위내의 배치한다. - 탑상형 또는 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에 대 하여 건축물 장변 또는 주전면선의 기울기 ±45° 범위내의 배치한다.
				· 타운하우스1,2단지의 30m도로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층수차이 제한
				· 건축물 1개동의 층수 변화는 3개층 이하로 한다.
				■ 주동의 전면길이 제한
· 6호 연립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하여야 한다.(관련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여수 시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이하 : 85㎡당 1대 - 85㎡초과 : 70㎡당 1대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용지는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초과 : 6/10이상 ※ 지하주차장 설치시 공유수면매립지역에 입지하는 아파트는 방수 /방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와 기타지역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기준이하일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권장한다. · 남향위주로 배치를 권장한다. · 가로축과 자연맥락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권장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ㄹ, 타워형으로 된 경우 건축물의 길이는 최장 수평등각선의 길이로 한다.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통경 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2개층이상의 펠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구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 보조색은 2가지이내로 하며, 2차이상의 혼합색으로 구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구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단지내 조경	단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도록 권장한다. ·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토록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하나의 단지내 2개소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한다.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 단지 외곽도로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허부식생을 조성한 차폐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차량 및 보행동선	단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은 개념전달 차원이며 위치는 건축배치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다.
				단지내 보행 및 자전거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은 옹천지구 전체의 보행동선 및 자전거 동선과 연계 배치한다. · 차량동선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학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계 설치한다. · 보행자통로의 폭은 3m 이상으로 하고 바닥포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유사하게 포장한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를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말고 주차장에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이 경우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1,2단지	지침도상의 타운하우스 1,2단지	기타사항	담 장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블럭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단지내 포장 · 단지내 도로포장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한다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기타사항	친환경 계획 · 자연지반 면적률 - 타운하우스용지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투수 면적률 - 단지내의 우수침투율을 높여 지하수의 보존 및 우수의 하수관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식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지반면적과 인공지반위에 투수성포장을 한 투수기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 녹지 면적률 - 녹지면적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중 식재된 면적을 말하며, 단지내 수목의 식재를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면적을 최대화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친환경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안전에 관한 사항 · 단지 진입도로변에는 경비실을 설치한다. · 타운하우스단지내 공중변소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토록 권장한다.
			단지내 시설물 ·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단지내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생활편의 시설 · 용도 및 규모 -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범위 내로 설정한다. · 배치 - 가능한 단지 진입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지내 동선의 결절점에 배치한다.
		부대복리 시설 ·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노인정, 휴게시설 등은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과 만나는 결절점 부근에 배치한다. ·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야간경관 조명 ·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공동주택 주택건설계획

구 분	주택 유형	면 적 (㎡)	세대수 (호)
계	-	486,349.1	8,441
아파트1-1단지	C	32,276.6	614
아파트1-2단지	C	35,356.5	672
아파트2-1단지	A	29,820.0	662
아파트2-2단지	A	33,649.0	746
아파트3-1단지	A	24,490.2	543
아파트3-2단지	A	31,828.8	706
아파트4단지	A	32,332.0	587
아파트5-1단지	C	31,991.0	608
아파트5-2단지	C	23,446.0	446
아파트6-1단지	A	64,222.0	1,166
아파트6-2단지	A	29,805.0	451
아파트7단지	A	15,338.0	232
타운하우스	C	65,000.0	538
테라스하우스	C	36,794.0	470

주) 1. A :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B :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C : 전용면적 85㎡이하 및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복합)

3. 상업용지(변경)

1) 지구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대지에 관한 계획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지는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으면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5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표시(C1)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1블럭 ■ 용도표시(C2)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중심상업 1단지-1,3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2,3,4,5,6,7블럭 					
		건축물의 규모	높 이	용적률	· 700%이하		
				건폐율	· 7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층수 : 3층이상 · 최고층수 : 10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중심상업 1단지-3블럭 		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중심상업 1단지-1블럭 ·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 · 지구중심상업 1단지-3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1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2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3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4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5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6블럭 · 지구중심상업 2단지-7블럭 				3m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p>■ 건축지정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p>	
				<p>·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2층이상의 벽면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지정선에 2/3이상 접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지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p>	
				<p>· 지구중심상업 1단지-1블럭 · 지구중심상업 1단지-2블럭</p>	4m
				<p>·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형태	<p>·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주변건물과 조화 - 연결된 대지에 먼저 건축한 건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시켜야 하며, 신축건물이 연결대지의 먼저 건축한 건물과 같은 층수일 경우에는 난간벽(파라펫)의 높이도 먼저 건축한 건물과 일치시켜야 한다. 좌우 양측 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파라펫) 높이가 서로 다를 때에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건축물의 외벽면</p>			
		<p>·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p> <p>·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 폭원 30m이상의 도로와 폭원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투시벽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투시형 셔터의 사용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p>			
		<p>· 지구중심상업용지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p>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의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각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로변 및 각각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 및 배차조성방식은 건축부문 시행지침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차량 및 보행동선	보행데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중심상업용지내 보행데크가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2층부분에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데크를 조성하여야 하며, 1층부는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데크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웅천공원 순환도로(대로), 상업지 내부도로((소로)를 횡단하는 보행교량과 연계한 데크를 조성하여야 하고, 데크의 상부바닥마감 높이와 전체적인 형태 및 재질은 공공에서 설치하는 보행교량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유형이어야 한다.(지구단위계획보고서 경관계획편 참조)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 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지침도상의 지구중심 상업1,2 단지	대지내 조경	쌘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쌘지공원으로 지정된 대지는 쌘지공원설치를 권장한다. · 쌘지공원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 쌘지공원의 위치는 각각부 또는 보행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 배치상 불합리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쌘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쌘지공원은 필로티 구조가 가능하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이상이 되어야 한다. · 쌘지공원은 최소규모는 1개소당 45㎡이상, 최소폭은 5m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가로변 및 각각부에 쌘지형 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는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기타사항	주차장	·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인접대지와 의 공동으로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한다.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 한다.

2) 관광·휴양상업용지(변경)

① 규제사항(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으면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보며, 가급적 권장용도를 준수토록 한다.	
			불허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6 참조 ■ 용도표시(C3)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1단지-1,2,6(-1)블럭 ■ 용도표시(C4)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 용도표시(C5)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1단지-3-5,6(-2)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3,7(-5),8(-5),9블럭 ■ 용도표시(C6)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2단지-4-7(-1~4)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8(-1~4),10-12블럭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40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50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1-3,6블럭	70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	70%이하
			높 이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8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1-3,6블럭(최저층수제한)	10층이상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최고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최고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최고층수제한)	7층이하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최고층수제한)	5층이하
				· 층수제한의 예외 - 관광휴양상업1단지의 통경축주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최고층수제한지역	7층이하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1m
				· 관광휴양상업1단지-1,6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2m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3,6,7,8,9,12블럭	3m
· 관광휴양상업1단지-2,3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3블럭	5m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분	구분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건축물의 외벽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 폭원 30m이상의 도로와 폭원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벽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형 셔터의 사용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5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단, 설치시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휴양상업용지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구분	구분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되지 않으면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보며, 가급적 권장용도를 준수토록 한다.	
			불허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6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표시(C3)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1단지-1,2,6(-1)블럭 ■ 용도표시(C4)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 용도표시(C5)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1단지-3-5,6(-2)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3,7(-5),8(-5),9블럭 ■ 용도표시(C6) 및 적용 · 관광휴양상업2단지-4-7(-1~4)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8(-1~4),10-12블럭 	
			용적률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40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50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1-3,6블럭	700%이하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관광휴양상업3단지-3블럭	40%이하
				· 관광휴양상업3단지-2블럭(1~3층)	60%이하
				· 관광휴양상업3단지-2블럭(4~29층)	40%이하
			높이	· 관광휴양상업1단지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블럭	70%이하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80%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6블럭(최고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3단지-2,3블럭(최고층수제한)	29층이하
		높이	· 관광휴양상업1단지-1블럭(최저층수제한)	10층이상	
			· 관광휴양상업1단지-2,3블럭(최고층수제한)	10층이하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최고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최고층수제한) · 관광휴양상업3단지-1블럭(최고층수제한)	7층이하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최고층수제한)	5층이하	
			· 층수제한의 예외 - 관광휴양상업1단지의 통경축 주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최고층수제한지역	7층이하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 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3~12블럭	1m
				· 관광휴양상업1단지-1.6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1~3블럭	2m
				· 관광휴양상업1단지-4.5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3,6,7,8,9,12블럭	3m
				· 관광휴양상업1단지-2,3블럭 · 관광휴양상업2단지-1,2블럭 · 관광휴양상업3단지-3블럭	5m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형 태	·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외벽면	
				·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 폭원 30m이상의 도로와 폭원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벽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시형 셔터의 사용 - 폭원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5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단, 설치시에 한한다)	
· 관광휴양상업용지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 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축 부문 시행지침의「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공개공지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로변 및 가각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 및 배차조성방식은 시행지침의「공개공지 조성방식」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정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라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 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의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색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용도표 등에 제시된 별 표 11의 건축물 색채계획표를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지침도상의 관광휴양 상업1-3 단지	대지내 조경	쌈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에서 쌈지공원으로 지정된 대지는 쌈지공원설치를 권장한다. · 쌈지공원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 쌈지공원의 위치는 각각부 또는 보행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 배치상 불합리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쌈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 쌈지공원은 필로티 구조가 가능하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쌈지공원은 최소규모는 1개소당 45㎡이상, 최소폭은 5m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가로변 및 각각부에 쌈지형 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는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단, 용천공원과 접하는 중대형 필지(관광휴양상업1단지 2, 3블록, 2단지 1, 2블록, 3단지 2, 3블록)는 제외한다.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경관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 관광휴양사업단지 모든 필지에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1)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대지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 필지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7 참조 ■ 용도표시(N)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1단지 · 근생2단지 · 근생3단지 · 근생4단지 · 근생5단지 · 근생6단지 · 근생7단지 · 근생8단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1~7 : 150% · 근생8 : 350%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1~7 : 60% · 근생8 : 70%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 1~7 : 3층이하(단,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4층이하) · 근생8 : 5층이하(단,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6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1단지 · 근생2단지 · 근생3단지 · 근생4단지 · 근생5단지 · 근생6단지 · 근생7단지 <p style="text-align: right;">1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생8단지-1블럭, 2블럭 <p style="text-align: right;">3m</p>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비슷한 재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바닥 마감 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0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녹슬지 않는 재료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붕위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난방, 냉방설치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 전면공지 조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지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관련 시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가급적 직각주차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8	지침도상의 근생1~8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주차는 보행안전 및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공동 주차통로를 확보한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법정 주차산정대수의 10%이상을 지상에 설치토록 권장하여 외부차량이용 및 공지로 활용한다.
		기타사항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내 담장 및 대문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종류의 재료 및 시각적 지배를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가급적 동일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1)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8 참조 ■ 용도표시(O1)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1단지 · 공공업무6단지 ■ 용도표시(O2)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4단지 ■ 용도표시(O3)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 공공업무5단지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1단지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6단지 	5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 공공업무4단지 · 공공업무5단지 	35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1단지 · 공공업무2단지(지역정보센터)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4단지 · 공공업무5단지 · 공공업무6단지 	7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1단지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6단지 	10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3단지 · 공공업무4단지 	5m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 정보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 정보센터)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2호의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공공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라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여야 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주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지구 상징적 건축물 입지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부형태와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30m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소원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하는 대지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 때 조명의 방향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하되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지침도상의 공공업무 1,3,4, 5,6단지, 2단지 (지역정보 센터)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경관 조명	·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는 건축부문 시행지침 중 야간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6.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1) 산업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 대지분할 가능선이 지정된 필지는 그 선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필지의 규모나 형태상 다른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허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9 참조 ■ 용도표시(0) 및 적용 · 산업연구시설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500%이하
			건폐율	· 70%이하
			높 이	· 10층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산업연구시설 30m도로변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중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라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형 권장 · 투시형 담장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연구시설	지침도상의 산업 연구시설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3, 중1~2, 고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분할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지정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유1, 초1~3, 중1~2, 고 : 100%이하		
				· 유2 : 200%이하		
			건폐율	· 유1, 초1~3, 중1~2, 고 : 20%이하		
		· 유2 : 50%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높 이	· 4층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유치원1 · 초등학교 1, 초등학교 2, 초등학교 3 · 중학교 1, 중학교 2 · 고등학교 1	5m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3, 중1~2, 고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중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 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라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3, 중1~2, 고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3, 중1~2, 고	지침도상의 유1~2, 초1~3, 중1~2, 고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1,2,3,4,5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50%이하
			건폐율	· 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1,2,3,4,5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 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1,2,3,4,5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 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1,2,3,4,5	지침도상의 종교 1,2,3,4,5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3) 의료시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1,2	지침도상의 의료1,2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 용도표시(H1,H2) 및 적용 · 의료시설1,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500%이하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선	건폐율	· 70%이하	
				높 이	· 10층이하	
				건축배치	· 건축한계선(상세내용은 지침도면 참조)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 니함.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용도로 활용	
					· 의료시설용지	5m
					· 의료시설1단지의 30m도로변측으로는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병상은 최대한 도 로와 이격하여 배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1,2	지침도상의 의료1,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라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 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1,2	지침도상의 의료1,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옥상녹화	· 옥상녹화는 옥상 바닥면적 50%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의 유효면적은 옥상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옥상녹화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1,2	지침도상의 의료1,2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어항시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어항	지침도상의 어항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100%이하
			건폐율	· 20%이하
			높 이	· 3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어항	지침도상의 어항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라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 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어항	지침도상의 어항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어항	지침도상의 어항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마리나시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리나 1,2,3단지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용도표시(M) 및 적용 · 마리나1,2,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 100%이하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20%이하
			높 이	· 3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리나 1,2,3단지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 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 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리나 1,2,3단지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리나 1,2,3단지	지침도상의 마리나 1,2,3단지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지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차장(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1~19 (P1, P2)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건축물의 용도	지정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표시(P1) 및 적용 · 주차장1~3, 주차장10, 주차장11, 주차장17, 주차장18, 주차장19 ■ 용도표시(P2) 및 적용 · 주차장4~9, 주차장12~16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 주차장17, 주차장19
			· 주차장1		300%이하
			· 주차장3, 주차장10, 주차장11		350%이하
		· 주차장2, 주차장18	400%이하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주차장17, 주차장19	20%이하
				· 주차장1	50%이하
				· 주차장3, 주차장10, 주차장11	70%이하
				· 주차장2, 주차장18	80%이하
		높 이	· 주차장1~3, 주차장10, 주차장11, 주차장17, 주차장18, 주차장19		5층이하 (단 1개층 높이는 4m이상 유지)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1-19 (P1, P2)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라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 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1-19 (P1, P2)	지침도상의 주차장 1-19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문화시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지침도상의 문화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500%이하
			건폐율	· 70%이하
			높 이	· 7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지침도상의 문화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지침도상의 문화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지침도상의 문화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유자시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노유자1,2	지침도상의 노유자1,2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50%이하
			건폐율	· 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노유자1,2	지침도상의 노유자1,2	대지내 조경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는 폭 2m이상, 높이 1m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본이상 밀식 식재 차폐하여야 한다. · 폭 20m이상의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이상 및 높이 1.5m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 식재하고 5m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 간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연면적이 1,000m²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에서 교목 1본당 관목 10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노유자1,2	지침도상의 노유자1,2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노유자1,2	지침도상의 노유자1,2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9) 에듀파크(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에듀파크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50%이하
			건폐율	· 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에듀파크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과 면하여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변과 건축한계선 사이구간을 도로변에 접하여 시선차폐와 소음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폐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시행지침 제30조(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 활용)의 1항 2호의 차폐조경 식재방법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에듀파크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에듀파크	지침도상의 에듀파크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마을회관(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200%이하
			건폐율	· 60%이하
			높 이	· 4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 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차량 및 보행동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권장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건축물의 형태색채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질성토지연과 옹벽설치구간은 예외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백색계통의 옅은색을 권장한다.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회관 1-6	지침도상의 마을회관 1-6	기타사항	지체부 자유자를 위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마을공동작업소(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마을공동 작업소	지침도상의 마을공동 작업소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이하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이하 			

12) 통신시설(변경없음)

① 규제사항(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통신	지침도상의 통신	대지에 관한 사항	대 지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표 별표10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 100%이하
			건폐율	· 20%이하
			높 이	· 4층이하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통신	지침도상의 통신	차량 및 보행동선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련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출입구는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하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수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면에 설치하는 직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0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설치 시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한곳에 2m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다.

■ 첨부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③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별표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단독주택	점포주택	
도면표시	D1	D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 1필지당 3세대 이하 · 지하층에 주거용도 불허 · 점포주택의 경우 지상 1층에 한하여 점포 설치 (연면적의 5분의2 범위 이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2 : 구릉지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도면표시	D3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공관	· 지하층에 주거용도 불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3 : 아파트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도면표시	A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4 : 테라스하우스 및 타운하우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A3	A4	A3	A4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5 : 지구중심상업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1	C2
허용용도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1층	C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C2 -
	전층	C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C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 C1, C2(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별표6 : 관광·휴양상업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3	C4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 C3(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 C4(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5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 허 용 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탁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및 고시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탁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 C5(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 C5(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탁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6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 	
불 허 용 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8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8호 장례식장

※ C6(일반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여야 함
 # 별표7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허용하지 않음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8 : 업무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1,6	업무시설3,4	업무시설2,5
도면표시	O1	O2	O3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9 : 산업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도시형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는 허용하지 않음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10 :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유치원1,2	초등학교1	초등학교2,3	중학교1,2	고등학교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종교, 의료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종교시설
도면표시	종교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6호 종교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도면표시	H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8호 장례식장(종합병원 건립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부대사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 숙박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과 협약을 맺은 자가 건립하는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도면표시	H2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8호 장례식장(종합병원 건립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부대사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 숙박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과 협약을 맺은 자가 건립하는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어항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어항시설
도면표시	어항
허용용도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의 어항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마리나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마리나시설
도면표시	M
허용용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마리나항만시설 및 부대관련시설 (부대관련시설이라 함은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주차장	
도면표시	P1	P2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입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입지 불허)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문화 및 노유자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도면표시	문화	노유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에듀파크 및 마을회관(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에듀파크	마을회관
도면표시	에듀파크	회관
허용용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중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전층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마을공동작업소(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마을공동작업소
도면표시	마을공동작업소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중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중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통신시설(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 용도
	통신시설
도면표시	통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11 : 건축물 색채계획표(변경없음)

■ 색채 용어의 정의

구 분	정 의
주 조 색 (Base Color)	•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깔
보 조 색 (Sub Color)	•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
강 조 색 (Accent Color)	•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

■ 건축물 부위별 색채적용의 예

구 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외벽 측면	●	△	△
외벽 전면	●		
외벽 후면	●(복도난간포함)	●(복도안쪽)	△
발코니 외벽		●	△
발코니 내부 측면		●	△
발코니 내부 천정		●	●
발코니 난간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	△	●	△
엘리베이터실 외벽(계단실)과 접한 발코니 외벽 측면	△	●	●
지붕		●	
옥탑 외벽	△	●	
돌출된 수위실 외벽	△	●	●(부분적)
캐노피		●	●
치마흙통, 선흙통		●	
외벽후면 세대별 출입문		●	●
외벽 후면 가스파이프			●

여수시 공고 제2015-1558호

여수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10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오림동 345-6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나. 명 칭 : 진남수영장 건립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22,984㎡
 - 나. 규 모 : 수영장(3,565.59㎡), 녹지(7,726.91㎡), 도로(2,022.47㎡), 주차장(2,049.91), 복합구장 (7,619.1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 6. 11.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다음
7. 공람기간 : 2015. 9. 10 ~ 2015. 9. 25(15일간)
8. 공람장소 : 여수시 체육지원과, 도시계획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지원과(061-659-3267) 및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물건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1	오림동	348-3	주택	강판 및 슬라브	82.4㎡	김*근	여수시 내동1길 2-1* (오림동)	기정
			차양		11.6㎡			
			화장실	블럭슬래브	10.7㎡			
			창고	블럭슬래브	4.6㎡			
			건사	블럭슬래브	2.2㎡			
			축사	블럭스레트	19.7㎡			
			대문 및 문주	철재 슬래브	1식			
			계단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70㎡			
			장독대		1식			
			담장	블록	49.6㎡			
			물탱크		2식			
			소	쇠, 송아지	2마리			
			닭		4마리			
			개		1식			
			축사	블럭스	11.5㎡			
			대문문주		1식			
			야외부엌		1식			
			화단		1식			
			감나무		2주			
			목련		1주			
			피라칸사스		1주			
			동백나무		5주			
		무화과나무		1주				
		사철나무		1주				
		청목		1주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철쭉		4주			
			장미		1주			
			매실나무		3주			
			앵두나무		1주			
			골당초		2주			
			엄나무		1주			
			고압분무기		1식			
			정미기		1식			
			수압고압 분무기		1개			
			동력풍산이		1대			
			썩썩이	양수기용	4대			
			수동풍산이		1대			
			손작두		2대			
			저울		1개			
			경운기로타리		1대			
			경운기철바퀴		1대			
			동력분무기용 전선	40m	2동			
			살수용인력물통		1개			
			물주는 양철조리		1개			
			수요용 김매는기계		1개			
			농자재용 고무통		3개			
			리어카		1마리			
오림동	348-3		주택	강관 및 슬라브	82.4㎡	김*근	여수시 내동1길 2-1* (오림동)	변경
			차양		11.6㎡			
			화장실	블럭슬래브	10.7㎡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창고	블럭슬래브	4.6㎡			
			건사	블럭슬래브	2.2㎡			
			축사	블럭스레트	19.7㎡			
			대문 및 문주	철재 슬래브	1식			
			계단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70㎡			
			장독대		1식			
			담장	블록	49.6㎡			
			물탱크		2식			
			소	소, 송아지	2마리			
			닭		4마리			
			개		1식			
			축사	블럭스	11.5㎡			
			대문문주		1식			
			야외부엌		1식			
			화단		1식			
			감나무		2주			
			목련		1주			
			피라칸사스		1주			
			동백나무		5주			
			무화과나무		1주			
			사철나무		1주			
			청목		1주			
			철쭉		4주			
			장미		1주			
			매실나무		3주			
			앵두나무		1주			
			골당초		2주			
			업나무		1주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고압분무기		1식			
			정미기		1식			
			수압고압 분무기		1개			
			동력풍산이		1대			
			썩썩이	양수기용	4대			
			수동풍산이		1대			
			손작두		2대			
			저울		1개			
			경운기로타리		1대			
			경운기철바퀴		1대			
			동력분무기용 전선	40m	2동			
			살수용 인력물통		1개			
			물주는 양철조리		1개			
			수요용 김매는기계		1개			
			농자재용 고무통		3개			
			리어카		3개			
2	오림동	346-1	하우스		1,225㎡	정*대	여수시 좌수영로 28* (오림동)	기정
			석류나무		167주			
			컨테이너	4*3	1개			
			물탱크		1식			
	오림동	346-1	하우스		1,225㎡	정*대	여수시 좌수영로 28* (오림동)	변경
			석류나무		167주			
			포도나무		6주			
			컨테이너	4*3	1개			
			물탱크		1식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3	오림동	340-5	비닐하우스	8.5*42	357㎡	김*식	여수시 내동1길 40-* (오림동)	기정
			관정		1식			
			분무기		1식			
			동력분무기		1식			
			양수기		2식			
			관리기		1식			
			쟁기		1개			
			양수기		2개			
			탈곡기		1개			
			정미기		1개			
			풍산이		1개			
			농기계	삽,괘이	9종			
			대나무		1식			
			망사		1식			
			망사		1식			
			하우스 파이프	8m	20개			
			리어카		1개			
			손수레		2개			
			농기계	소시랑2, 삽1개	3개			
			고무호스		1식			
		둔병		1식				
		소형 비닐하우스	35m	5개				
	오림동	340-5	비닐하우스	8.5*42	357㎡	김*식	여수시 내동1길 40-* (오림동)	변경
			관정		1식			
			분무기		1식			
			동력분무기		1식			
			양수기		3식			
			관리기		1식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쟁기		1개			
			양수기		3개			
			탈곡기		1개			
			정미기		1개			
			풍산이		1개			
			제초기		1대			
			농기계	삼, 썬이, 지게	14종			
			대나무		1식			
			망사		1식			
			망사		1식			
			하우스파이프	8m	32개			
			하우스파이프	2.5m	20개			
			리아카		1개			
			손수레		2개			
			농기계	소시랑2, 삼1개	3개			
			고무호스		1식			
			망사	폭4m	6개			
			망사	폭2m	15개			
			둔병		1식			
			소형 비닐하우스	35m	5개			
4	오림동	339	둔병		1식	김*식	여수시 내동1길 40* (오림동)	변경 없음
			소형 비닐하우스	34m	16개			
5	오림동	338-4	관정	소형	1식	김*중	여수시 여서로 134, 10*동 10*호(여서동, 현*아파트)	기정
			양수기		1식			
			원도막	철파이프 차광막	4㎡			
			농막	목조 함석 및 그물망	21㎡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매실나무		11주			
			석류나무		9주			
			뽕나무		3주			
			감나무		32주			
			자두나무		4주			
			무궁화		6주			
			대추나무		5주			
			배나무		4주			
			복분자		5주			
			무화과나무		3주			
			닭		9마리			
			염소		2마리			
오림동	338-4	관정	소형		1식	김*중	여수시 여서로 134, 10*동 10*호(여서동, 현*아파트)	
			양수기		1식			
			원도막	철과이프 차광막	4㎡			
			농막	목조 함석 및 그물망	21㎡			
			매실나무		11주			
			석류나무		9주			
			뽕나무		3주			
			감나무		32주			
			자두나무		4주			
			무궁화		6주			
			대추나무		5주			
			배나무		4주			
			복분자		5주			
			무화과나무		3주			
			복숭아나무		5주			
			사과나무		6주			

변경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꾸찌봉		4주				
			닭		9마리				
			염소		2마리				
6	오림동	350-11	공장	7.3*15.10 (판넬)	110.23㎡	의령남씨충경공파 두평희	여수시 좌수영로 12-1 (서교동)	기정	
			화장실	1.7*1.6	2.72㎡				
			기름저장 창고	블록(2.7*4.7)	12.69㎡				
			수도		1식				
			컨테이너	3*6	1식				
		오림동	350-3	공장	7.3*15.10 (판넬)	110.23㎡	의령남씨충경공파 두평희	여수시 좌수영로 12-1 (서교동)	변경
			화장실	1.7*1.6	2.72㎡				
			기름저장 창고	블록(2.7*4.7)	12.69㎡				
			수도		1식				
			컨테이너	3*6	1식				
7	오림동	350-2	감나무		15주	김*근	여수시 내동1길 2-1* (오림동)	변경 없음	
			복숭아나무		3주				
			매실나무		5주				
			대추나무		1주				
			무화과나무		2주				
8	오림동	350-1	고로쇠나무		1주	김*근	여수시 내동1길 2-1* (오림동)	변경 없음	
			참빗살나무		4주				
			철쭉		2주				
			석류나무		1주				
			오기괴		10주				
			두릅나무		10주				
			골당초		3주				
			물통		1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건사		2개			
			양수기모터		1개			
			닭장	목조스레이트 3.2*3	1식			
			둔병		1식			
9	오림동	348-4	소형비닐 하우스	28m	13개	김*근	여수시 내동1길 2-1* (오림동)	기정
			비닐하우스	(27*16)+(10.5*18)	621m ²			
			보온자동 온도기	(열선 2개)	1식			
			분무기		2개			
			경운기		1개			
			경운기 쟁기		1개			
			관리기		1대			
			예초기		1대			
			물통		2개			
			철재파이프	전기 기둥	7개			
			살대	플라스틱	2개			
			망사	2m	8개			
			망사	4m	2개			
			벼건조포장	6*50m	4개			
			배호스	80m	4대			
			농기구	삽 등	28개			
			부직포	200m	1개			
			보온덮개	4*35m	4개			
			철사다리	3m	1개			
			물통		3개			
		발쟁기		2개				
		논쟁기		1개				
		하우스 파이프	20mm, 4m	130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호스	20mm	80m			
			호스	25mm	200m			
			호스	30mm	35m			
			호스	35mm	30m			
			드럼통		2개			
			보온덮개	75m	1개			
			모판상자		200개			
			물통		1개			
			고추지주		500개			
			경운기		1대			
			전선		60m			
			소형비닐 하우스	26.5m	5개			
			소형비닐 하우스	18m	3개			
			분수형호수	30m*30줄	1식			
			물통		2개			
			전주		1대			
			대나무활죽		200개			
			전기계량기		1대			
오림동	348-4		소형비닐 하우스	28m	13개	김*근	여수시 내동1길 2-1* (오림동)	
			비닐하우스	(27*16)+(10.5*18)	621㎡			변경
			보온자동 온도기	(열선 2개)	1식			
			분무기		2개			
			경운기		1개			
			경운기 쟁기		1개			
			관리기		1대			
			예초기		1대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물통		2개			
			철재파이프	전기 기둥	7개			
			살대	플라스틱	600개			
			망사	2m	8개			
			망사	4m	2개			
			벼건조포장	6*50m	4개			
			배호스	80m	4대			
			농기구	삼 등	28개			
			부직포	200m	1개			
			보온덮개	4*35m	4개			
			철사다리	3m	1개			
			물통		3개			
			발쟁기		2개			
			논쟁기		1개			
			하우스 파이프	20mm, 4m	130개			
			호스	20mm	80m			
			호스	25mm	200m			
			호스	30mm	35m			
			호스	35mm	30m			
			드럼통		2개			
			보온덮개	75m	1개			
			모판상자		200개			
			물통		1개			
			고추지주		500개			
			전선		60m			
			소형비닐 하우스	26.5m	5개			
			소형비닐 하우스	18m	3개			
			분수형호수	30m*30줄	1식			
			물통		2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전주		1대				
			대나무활죽		200개				
			파레트		30개				
			비료		140포				
			벼	40kg	50개				
			벗짚		1식				
			전기계량기		1대				
10	오림동	341-4	소형 비닐하우스	25m	19개	남*창	여수시 내동1길 * (오림동)	기정	
			고무판		130m				
			배수파이프		50m				
			리어카		2대				
			관리기		1대				
			정미기		2대				
			모터용 농약살포기		1대				
			예초기		1대				
		오림동	341-4	소형 비닐하우스	25m	19개	남*창	여수시 내동1길 * (오림동)	변경
			고무판		130m				
			배수파이프		50m				
			리어카		2대				
			관리기		1대				
			정미기		2대				
			모터용 농약살포기		1대				
			예초기		1대				
		홀데		1대					
		씨리		3개					
		쟁기		5개					
		분무기		2대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11	오림동	340-1	망사	500	1식	김*용	여수시 내동길53-*(오림동)	변경 없음
			관정호수		200m			
			철재활대		90개			
			대활대		500개			
			비닐	35*1	2개			
			파이프		12개			
			분무기		1식			
12	오림동	134-9	묘지	단장	1기	남*관	여수시 충무로 54-*(충무동)	변경 없음

광양시 고시 제2015-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양시 마동 마홀지구 임대아파트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2. 주택법에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10

광양시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 : 마동 마홀지구 임대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2. 사업주체(변경)

○ 당 초

- 성명 : 케이에스에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박인식
- 주소 : 전남 광양시 가야로 44(마동)

○ 변 경

- 성명 : 엔에스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마성우
- 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전남 마동 787-9외 51필지
- 대지면적 : 28,148.3㎡(증 1.3㎡)
- 건축면적 : 5,933.3303㎡
- 연 면 적 : 89,666.4214㎡
- 건설주택의 규모 : 555세대(84.8628㎡ : 258세대, 84.854㎡ : 135세대, 84.8676㎡ : 162세대)

4. 사업기간 : 2015. 10. ~2016. 9. 30.

5. 의제사항 : 「주택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법률 일체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89번지 외 29필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 명 칭 : 도시계획도로(중로1-135호선, 중로3-130호선, 중로3-128호선, 중로2-141호선, 소로3-248호선) 개설사업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면 적 : 9,812.6㎡
 - 중로 1-135호선 : 5,035㎡ (폭=23m, 거리=204m, 법면포함)
 - 중로 3-130호선 : 638㎡ (폭=12m, 거리=51m)
 - 중로 3-128호선 : 1,071㎡ (폭=12m, 거리=85.8m)
 - 중로 2-141호선 : 2,212.6㎡ (폭=18.5m, 거리=95.5m)
 - 소로 3-248호선 : 856㎡ (폭=6m, 거리=154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 초
 - 성 명 : 케이에스에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박인식
 - 주 소 : 전남 광양시 가야로 44(마동)
 - 변 경
 - 성 명 : 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성우
 - 주 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변 경 : 2014. 4. 3. ~ 2016. 9. 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첨 1
 -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 인가조건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NO.	지번	지목	지적 (㎡)	신 청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중로 1-135	중로 3-130	중로 3-128	중로 2-141	소로 3-248	계	주 소	성 명	
총 계			36,140.8	5,035	638	1,071	2,212.6	856	9,812.6			
소 계			4,573	144	-	-	1,708	-	1852			
1	780	전	10	10	-	-	-	-	10		광양시	
2	781	전	540	82	-	-	-	-	82	광양시 마동 6**	김홍*	
3	785	전	281	-	-	-	281	-	281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56, 105-***호 (정자동, 상록마을)	이상*	
4	785-1	전	1,035	-	-	-	99	-	99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56, 105-***호 (정자동, 상록마을)	이상*	
5	786-1	전	789	-	-	-	445	-	445	광양시 마동 7**	이상*	
6	787	전	122	-	-	-	122	-	122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엔에스 종합건설(주)	
7	787-1	전	408	-	-	-	408	-	408	광양시 금호동 624-13 사랑아파트 12-***호	피용*	
8	787-5	전	495	-	-	-	93	-	93	광양시 금호동 624-13 사랑아파트 12-***호 광양시 옥곡면 명주로 2**	피용* 조병*	
9	789	전	5	-	-	-	5	-	5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엔에스 종합건설(주)	
10	790	전	9	-	-	-	9	-	9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엔에스 종합건설(주)	
11	791	전	118	-	-	-	118	-	118	여수시 시청로 84, 1-***호(선원동, 금호타운)	하용*	
12	793	전	51	-	-	-	3	-	3		광양시	
13	794	전	353	35	-	-	-	-	35	광양시 마동 1046 송보파인뷰 아파트 102-*** 광양시 중동 1655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101-***	차건* 이중*	
14	794-2	전	232	17	-	-	-	-	17	광양시 중동 1597 대광로제비양1차아파트 101-***	김옥*	
15	803-1	전	125	-	-	-	125	-	125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엔에스 종합건설(주)	

NO.	지 번	지 목	지 적 (㎡)	신 청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중로 1-135	중로 3-130	중로 3-128	중로 2-141	소로 3-248	계	주 소		성 명
소 계			1,026	96	-	-	149	-	245			
16	626-1	답	169	4	-	-	-	-	4	광양시 금호동 694 동백아파트 13-***	허순*	
17	631	답	197	92	-	-	-	-	92	광양시 마동 7**-*	최은*	
18	826	답	660	-	-	-	149	-	149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 주공칠성아파트 312-***호	주낙*	
소 계			20,614.9	1,671	321	1,071	146.6	34	3243.6			
19	1063	임	16,859.3	-	-	-	-	34	34		광양시	
20	1089-1	임	2,138.6	1,671	321	-	146.6	-	2138.6		광양시	
21	산96-14	임	180	-	-	180	-	-	1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대한주택보증(주)	
22	산96-32	임	1,151			605			6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대한주택보증(주)	
23	산96-37	임	206			206			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대한주택보증(주)	
24	산106-13	임	80	-	-	80	-	-	80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엔에스 종합건설(주)	
소 계			792	45	-	-	144	-	189			
25	626	대	549	45	-	-	-	-	45	광양시 증동 1418 무등파크 102-***호	이미*	
26	786	대	243	-	-	-	144	-	144	광양시 마동 7**	이상*	
소 계			8,685.9	3,079	317	-	28	822	4,246			
27	787-2	도	160	-	-	-	28	-	28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	주낙*	
28	1090	도	6,386.2	3,079	-	-	-	-	3079		광양시	
29	1088	도	2,139.7		317	-	-	822	1139		광양시	
소 계			449	-	-	-	37	-	37			
30	984-5	구	449	-	-	-	37	-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광양시 고시 제2015-166호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산123번지 외 5필지 일원의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0

광양시장

1. 사업명 :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 지역에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당초 : 10,598백만원(국비 1,050 지방비 450 민자 9,098)
 - 변경 : 6,28백만원(국비 1,050 지방비 450 민자 5,128)
4. 주요 사업내용
 - 위치 :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산123번지 외 5필지(변경없음)
 - 면적

구분	전체면적	주택건설택지조성	공공시설 및 기타	기타
당초	37,481㎡	16,261㎡(30세대)	21,220㎡	한옥
변경	37,481㎡	11,941㎡(30세대)	25,540㎡	양옥

○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주택건설용지	30호	30호	변경없음
도로	689m(B=9m)	661.2m(B=6~8m)	△27.8
상수도 계획	관로 836m	관로 674m	△162
하수도 계획	우수관로 677m 오수관로 982m	우수관로 653m 오수관로 860m	△ 24 △122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공원 등	공원, 오수처리장 등	△마을회관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획(변경)		증,감
	당초(㎡)	변경(㎡)	
계	37,481	37,481	
마을정비구역지정	37,481	37,481	
전원마을조성	16,261	11,941	△4,320
공공시설용지	5,378	4,689	△689
내부도로	4,543	4,153	△390
마을회관	600	-	△600
오수처리장	235	408	173
배수지	-	128	128
녹지용지	15,482	20,851	5,009
공 원	6,196	6,578	382
원형녹지	5,426	3,550	△1,876
조성녹지	4,220	10,723	6,503

가. 토지이용 계획도(당초) : 다음

나. 토지이용 계획도(변경) : 다음

5.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0~2014

○ 변경 : 201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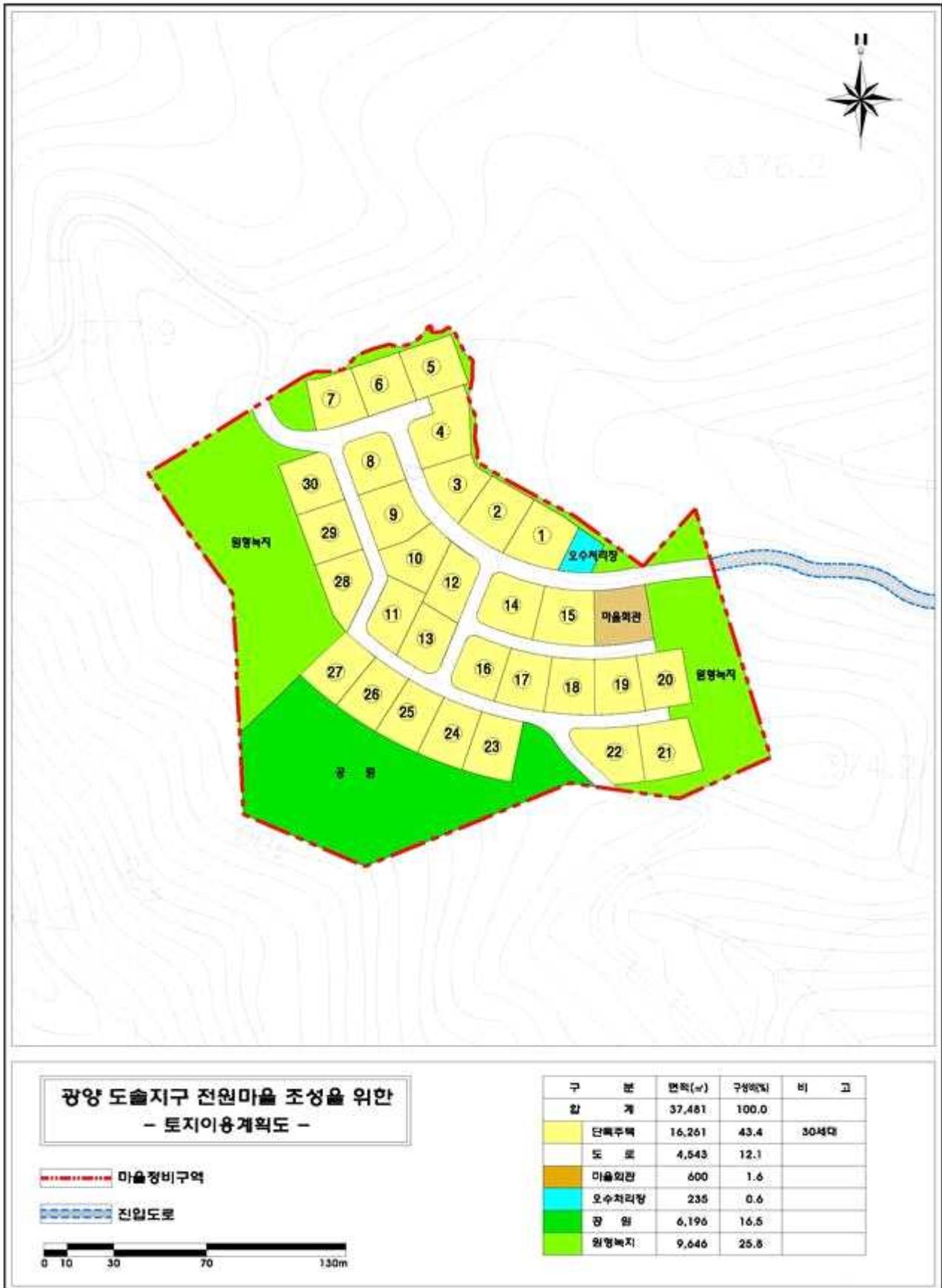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조서(변경없음)

연 번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성 명	주 소	
계					77,304	37,481			
1	봉강	부저	342-2	창	450	450	(유)봉강도솔지구전원 마을정비조합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334-1	
2	봉강	부저	342-4	전	24,195	23,919	(유)봉강도솔지구전원 마을정비조합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334-1	
3	봉강	부저	산121	임	17,455	12	(유)봉강도솔지구전원 마을정비조합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334-1	
4	봉강	부저	산123	임	31,835	9,731	(유)봉강도솔지구전원 마을정비조합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334-1	
5	봉강	부저	335-1	답	3,369	3,369	(유)봉강도솔지구전원 마을정비조합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3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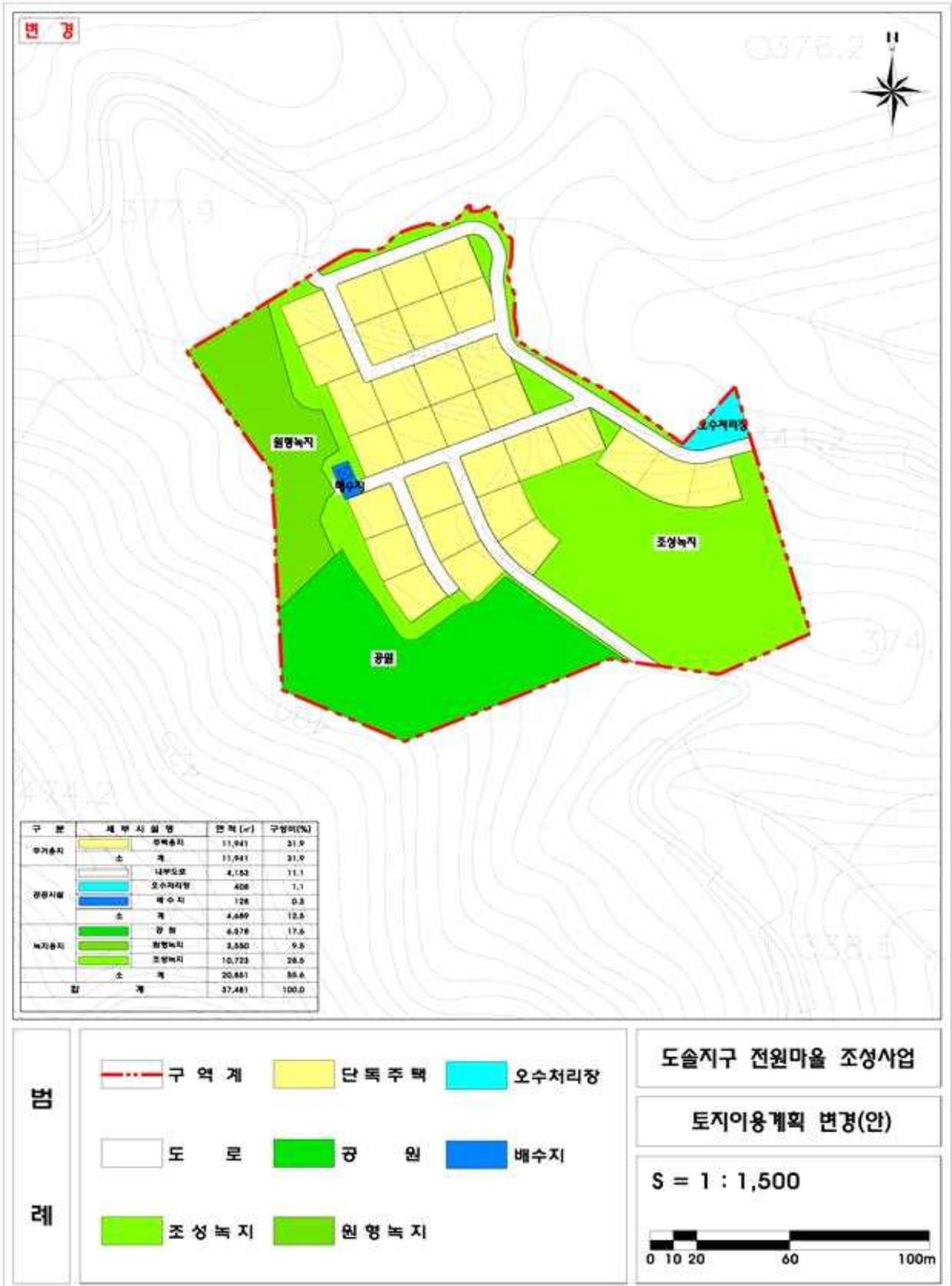
8. 관계도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건설과에 비치)

9.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34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계획도(당초)



토지이용 계획도(변경)



구례군 고시 제2015-42호

구례 군계 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례 군계 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5. 9. 10

구례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구분	명칭	규 모	사업기간	비고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연결공사	계		L=224m	2015. 7. ~ 2016. 1.	
	교통시설	도로 (소로3-8)	L=224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례군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 7.(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6. 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다음
6. 관계도서 : 실음생략(구례군청 안전건설과(061-780-2487))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구분	토지	지 적 (㎡)		소유자		비고
	주소	번지			총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광의면 연파리	870	도	국유지	8480	742		국(건설부)	
2	〃	271	학	사유지	18478	274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3	〃	318-2	도	사유지	10	1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4	〃	490-2	도	사유지	76	76	광의면 연파리	송경환	
5	〃	491-2	도	사유지	20	20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6	〃	489-2	도	사유지	53	53	광의면 연파리	강인서	
7	〃	492-1	전	국유지	638	61		구례군	
8	〃	492-2	도	국유지	40	22		구례군	
9	〃	493-3	도	사유지	132	62	대전리 462	김창용	
10	〃	493-2	답	국유지	430	83		구례군	
11	〃	493-4	도	국유지	17	17		구례군	
12	〃	494-1	임	사유지	1061	44	광의면 광의철쭉동산로 2	정인자	
13	〃	571-2	임	국유지	169	72		국(재정경제원)	
14	〃	494-2	도	사유지	13	13	순천시 조례동 848-9 대림아파트 205-902	김중숙	
15	〃	495-2	도	국유지	7	3		구례군	
16	〃	567-2	도	사유지	182	107	광의면 연파리 560	공북마을회	
17	〃	567-1	대	사유지	337	34	광의면 연파리 560	공북마을회	
18	〃	875	구	국유지	2803	7		국(건설부)	
19	〃	877	도	국유지	3736	9		국(건설부)	
20	〃	615-6	도	사유지	258	8	광의면 연파리 282	김윤곤	
21	〃	615-8	도	사유지	119	9	광의면 연파리 282	김윤곤	
22	〃	320-2	도	사유지	7	7		성우영	
23	〃	474-2	도	사유지	23	23	광의면 연파리 333	조염소	
총 계					37,089	1,756			

보성군 고시 제2015-61호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한국 차·소리문화공원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15. 9. 10

보성군수

1. 위 치 :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 154 일원
2. 관광지명 : 한국 차·소리문화공원 관광지
3. 지정면적 : 당초 236,612㎡ → 변경 287,369㎡(증 50,757㎡)
4. 조성계획 : 당초 236,612㎡ → 변경 287,369㎡(증 50,757㎡)
5. 시 행 자 : 보성군수
6. 사업기간 : 2002. ~ 2017.
7. 조성계획내용 : 다음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다음
9. 관련법에 의한 의제처리 인허가 사항
 - 가.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 나.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 생략
10.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관광정책과(☎061-286-5232), 보성군 문화관광과(☎061-850-52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I.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결정 변경

1. 관광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	한국 차·소리문화공 원관광지	보성읍 봉산리 산154 일원	236,612	증50,757	287,36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관광지	○위치: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면적: 287,369m ²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관광지 조성사업과 생태공 원을 계획적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관광 지로 확대 지정하고자 함

2.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36,612	증50,757	287,369	100.0	
A. 공공편의시설지구	27,843	증7,872	35,715	12.4	
B. 숙박시설지구	18,785	-	18,785	6.5	
C. 상가시설지구	4,330	감4,330	-	-	
D. 운동오락시설지구	14,352	증21,685	36,037	12.5	
E. 휴양문화시설지구	46,846	증12,390	59,236	20.6	
F. 기타시설지구	124,456	증13,140	137,596	47.9	

나.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별 세부조서

구 분		부지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36,612	증) 50,757	287,369	100.0		
A 공공 편의 시설 지구	소계	27,843	7,915	35,758	12.4		
	A-1	도로	14,040	증) 5,352	19,392	6.7	
	A-2	공용주차장	12,154	증) 2,563	14,717	5.1	
	-	공용주차장-1	2,305	감) 2,305	-	-	
	A-2-1	공용주차장-1	1,083		1,083	0.4	
	A-2-2	공용주차장-2	8,766		8,766	3.1	
	A-2-3	공용주차장-3	-	증) 4,868	4,868	1.7	
	A-3	관리사무소	90	-	90	0.0	
	A-4	공중화장실	797	-	797	0.3	
	A-4-1	공중화장실-1	466	-	466	0.2	
	A-4-2	공중화장실-2	331	-	331	0.1	
	A-5	오수처리장	762	-	762	0.3	
B 숙박 시설 지구	소계	18,785	-	18,785	6.5		
	B-1	Tea Cottage	18,785	-	18,785	6.5	
상가 시설 지구	소계	4,330	-	4,330	-		
	-	상가	4,330	감) 4,330	-	-	
C. 운동 오락 시설 지구	소계	14,352	증) 21,642	35,994	12.5		
	C-1	다목적운동장	13,609	감) 211	13,609	4.7	
	C-2	휴게광장	743	증) 465	1,208	0.4	
	-	휴게광장-1	315	감) 315	-	-	
	C-2-1	휴게광장-1	428	-	428	0.1	
	C-2-2	휴게광장-2	-	증) 780	780	0.3	
	C-3	카트경기장	-	증) 21,177	21,177	7.4	
D. 휴양 시설 문화 지구	소계	46,846	증) 12,390	59,236	20.6		
	D-1	소리공원	11,677	증) 1,729	13,406	4.7	
	D-1-1	북루	900	감) 134	766	0.3	
	D-1-2	소리방	1,331	증) 147	1,478	0.5	
	D-1-3	대금가야금방	1,364	증) 55	1,419	0.5	
	D-1-4	소리연습장	3,520	증) 2,248	5,768	2.0	
	D-1-5	수변쉼터	4,562	감) 587	3,975	1.4	
	D-2	전시관	6,911	증) 6,500	13,411	4.7	
	D-2-1	제1전시관	6,911	-	6,911	2.4	
	D-2-2	제2전시관	-	증) 6,500	6,500	2.3	
	D-3	차제조공방	1,904	-	1,904	0.7	
	D-4	전망대	1,360	-	1,360	0.5	
	D-5	식물원	24,994	감) 6,500	18,494	6.4	
	D-5-1	식물원	6,282	-	6,282	2.2	
	D-5-2	초화원	1,300	-	1,300	0.5	
	D-5-3	확목원	1,000	-	1,000	0.3	
	D-5-4	녹차밭	16,412	감) 6,500	9,912	3.4	
D-6	청소년수련원	-	증) 4,917	4,917	1.7		
D-7	종합안내센터	-	증) 5,744	5,744	2.0		
E.기타 시설 지구	소계	124,456	증) 13,140	137,596	47.9		
	E-1	녹차밭	50,070	증) 7,630	57,700	19.9	
	E-1-1	녹차밭-1	22,651	-	22,651	7.9	
	E-1-2	녹차밭-2	27,419	-	27,419	9.5	
	E-1-3	녹차밭-3	-	증) 7,181	7,181	2.5	
E-2	녹지	74,386	증) 5,959	80,345	28.0		

다.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구별 시설물 배치계획

구 분		부지면적(㎡)			건축물						비 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36,612	287,369	50,757	7,202	10,848	3,646	13,916	24,540	10,624	
A 공공 편의 시설 지구	소계	27,843	35,715	7,872	325	325		320	320		
	A-1	도로	14,040	19,349	5,309						
	A-2	공용주차장	12,154	14,717	2,563						
		공용주차장-1	2,305		감)2,305						
	A-2-1	공용주차장-1	1,083	1,083							
	A-2-2	공용주차장-2	8,766	8,766							
	A-2-3	공영주차장-3		4,868	4,868						
	A-3	관리사무소	90	90		50	50		50	50	
	A-4	공중화장실	797	797		275	275		270	270	
	A-4-1	공중화장실-1	466	466		125	125		120	120	
	A-4-2	공중화장실-2	331	331		150	150		150	150	
	A-5	오수처리장	762	762							
B 숙박 시설 지구	소계	18,785	18,785		1,796	1,796		3,344	3,344		
	B-1	Tea Cottage	18,785	18,785		1,796	1,796		3,344	3,344	
상가 시설 지구	소계	4,330		4,330	2,085		감)2,085	4,000		감)4,000	
		4,330		4,330	2,085		감)2,085	4,000		감)4,000	
C 운동 오락 시설 지구	소계	14,352	36,037	21,685	540	624	84	540	624	84	
	C-1	다목적운동장	13,609	13,609		540	540		540	540	
	C-2	휴게광장	743	1,208	465						
		휴게광장-1	315		감)315						
	C-2-1	휴게광장-1	428	428							
	C-2-2	휴게광장-2		780	780						
C-3	카트경기장		21,220	21,220		84	84		84	84	
D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소계	46,846	59,236	12,390	2,456	8,103	5,647	5,712	20,252	14,540	
	D-1	소리공원	11,677	13,406	1,729	285	285	-	260	260	-
	D-1-1	복루	900	766	감)134	75	75	-	50	50	-
	D-1-2	소리방	1,331	1,478	147	120	120	-	120	120	-
	D-1-3	대금/가야금방	1,364	1,419	55	90	90	-	90	90	-
	D-1-4	소리연습장	3,520	5,768	2,248	-	-	-	-	-	-
	D-1-5	수변쉼터	4,562	3,975	감)587	-	-	-	-	-	-
	D-2	전시관	6,911	13,411	6,500	1,263	2,266	1,003	4,600	7,818	3,218
	D-2-1	제1전시관	6,911	6,911	-	1,263	1,263	-	4,600	4,600	
	D-2-2	제2전시관		6,500	6,500	-	1,003	1,003	-	3,218	3,218
	D-3	차제조공방	1,904	1,904	-	388	388	-	410	410	-
	D-4	전망대	1,360	1,360	-	30	30	-	60	60	-
	D-5	식물원	24,994	18,494	감)6,500	490	804	314	382	713	331
	D-5-1	식물원	6,282	6,282	-	490	804	314	382	713	331
	D-5-2	초화원	1,300	1,300	-	-	-	-	-	-	-
	D-5-3	화목원	1,000	1,000	-	-	-	-	-	-	-
	D-5-4	녹차밭	16,412	9,912	감)6,500	-	-	-	-	-	-
D-6	청소년수련원	-	4,917	4,917	-	2,303	2,303	-	7,069	7,069	
D-7	종합안내센터	-	5,744	5,744	-	2,028	2,028	-	3,923	3,923	
E 기타 시설 지구	소계	124,456	137,596	13,140	-	-	-	-	-	-	
	E-1	녹차밭	50,070	57,251	7,181	-	-	-	-	-	
	E-1-1	녹차밭-1	22,651	22,651	-	-	-	-	-	-	
	E-1-2	녹차밭-2	27,419	27,419	-	-	-	-	-	-	
	E-1-3	녹차밭-3	-	7,181	7,181	-	-	-	-	-	
	E-2	녹지	74,386	80,345	5,959	-	-	-	-	-	

II.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7,369	-	287,369	100.0	
관리지역	286,539	-	286,539	99.7	
계 획 관 리 지 역	286,539	-	286,539	99.7	
농 립 지 역	830	-	830	0.3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관광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건축물 7층 이하	236,612	증 50,757	287,369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관광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위치 :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면적 : 236,612→287,369㎡(증50,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관광지 및 생태공원을 계획적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고자 함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원 폐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1	관광녹차 생태공원	문화공원	보성읍 봉산리 1297-6전 일원	49,430	감)49,430	-	보고 65 '12.12.27	

■ 공원 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폐지내용	폐지사유
21	관광녹차 생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신설 1개소 • 면적 49,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차·소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관광녹차 생태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4.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한국 차·소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236,612	증50,757	287,369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한국 차·소리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 면적 : 236,612→287,369㎡(증50,7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관광지 조성사업과 생태공원을 계획적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36,612	287,369	50,757	7,202	10,848	3,646	13,916	24,540	10,624	
A 공공 편의 시설 지구	소계	27,843	35,715	7,872	325	325		320	320	
	A-1 도로	14,040	19,349	5,309						
	A-2 공용주차장	12,154	14,717	2,563						
	공용주차장-1	2,305		감)2,305						
	A-2-1 공용주차장-1	1,083	1,083							
	A-2-2 공용주차장-2	8,766	8,766							
	A-2-3 공영주차장-3		4,868	4,868						
	A-3 관리사무소	90	90		50	50		50	50	
	A-4 공중화장실	797	797		275	275		270	270	
	A-4-1 공중화장실-1	466	466		125	125		120	120	
A-4-2 공중화장실-2	331	331		150	150		150	150		
A-5 오수처리장	762	762								
B 숙박 시설 지구	소계	18,785	18,785		1,796	1,796		3,344	3,344	
	B-1 Tea Cottage	18,785	18,785		1,796	1,796		3,344	3,344	

구 분			부지면적(m ²)			건축물						비 고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상가 시설 지구	소계		4,330		4,330	2,085		감)2,085	4,000		감)4,000	
			4,330		4,330	2,085		감)2,085	4,000		감)4,000	
C. 운동 오락 시설 지구	소계		14,352	36,037	21,685	540	624	84	540	624	84	
	C-1	다목적운동장	13,609	13,609		540	540		540	540		
	C-2	휴게광장	743	1,208	465							
		휴게광장-1	315		감)315							
	C-2-1	휴게광장-1	428	428								
	C-2-2	휴게광장-2		780	780							
	C-3	카트경기장		21,220	21,220		84	84		84	84	
D.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소계		46,846	59,236	12,390	2,456	8,103	5,647	5,712	20,252	14,540	
	D-1	소리공원	11,677	13,406	1,729	285	285	-	260	260	-	
	D-1-1	복루	900	766	감)134	75	75	-	50	50	-	
	D-1-2	소리방	1,331	1,478	147	120	120	-	120	120	-	
	D-1-3	대금/가야금방	1,364	1,419	55	90	90	-	90	90	-	
	D-1-4	소리연습장	3,520	5,768	2,248	-	-	-	-	-	-	
	D-1-5	수변쉼터	4,562	3,975	감)587	-	-	-	-	-	-	
	D-2	전시관	6,911	13,411	6,500	1,263	2,266	1,003	4,600	7,818	3,218	
	D-2-1	제1전시관	6,911	6,911	-	1,263	1,263	-	4,600	4,600		
	D-2-2	제2전시관		6,500	6,500	-	1,003	1,003	-	3,218	3,218	
	D-3	차제조공방	1,904	1,904	-	388	388	-	410	410	-	
	D-4	전망대	1,360	1,360	-	30	30	-	60	60	-	
	D-5	식물원	24,994	18,494	감)6,500	490	804	314	382	713	331	
	D-5-1	식물원	6,282	6,282	-	490	804	314	382	713	331	
	D-5-2	초화원	1,300	1,300	-	-	-	-	-	-	-	
	D-5-3	화목원	1,000	1,000	-	-	-	-	-	-	-	
	D-5-4	녹차밭	16,412	9,912	감)6,500	-	-	-	-	-	-	
	D-6	청소년수련원	-	4,917	4,917	-	2,303	2,303	-	7,069	7,069	
	D-7	종합안내센터	-	5,744	5,744	-	2,028	2,028	-	3,923	3,923	
	E 기타 시설 지구	소계		124,456	137,596	13,140	-	-	-	-	-	-
E-1		녹차밭	50,070	57,251	7,181	-	-	-	-	-	-	
E-1-1		녹차밭-1	22,651	22,651	-	-	-	-	-	-	-	
E-1-2		녹차밭-2	27,419	27,419	-	-	-	-	-	-	-	
E-1-3		녹차밭-3	-	7,181	7,181	-	-	-	-	-	-	
E-2		녹지	74,386	80,345	5,959	-	-	-	-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6	1,651	12,764			2	911	8,819	4	740	3,945
	변경	10	1,651	19,349	-	-	-	3	1,061	9,172	7	1,290
중로	기정	-	-	-	-	-	-	-	-	-	-	-
	변경	1	320	1,107	-	-	-	-	-	-	1	320
소로	기정	6	1,651	12,764			2	911	8,819	4	740	3,945
	변경	9	2,031	18,242	-	-	-	3	1,061	9,172	6	970

나) 도로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	13	국지도로	320	1459-89구	1454-11답	일반도로	카트경기장		
기정	소로	2	1	9.5	국지도로	692	산154 입	산154 입	일반도로	주차장	'14. 07.10	
기정	소로	2	2	9.5	국지도로	219	산154 입	산154 입	일반도로	숙박시설	'14. 07.10	
신설	소로	2	3	9.0	국지도로	150	1297-33전	1459-89구	일반도로	종합안내센터 및 카트경기장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226	산154 입	산154 입	일반도로	녹차밭	'14. 07.10	
기정	소로	3	2	7	국지도로	39	산140-3 입	산154 입	일반도로	주차장	'06.11.13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299	1270 답	산154 입	보행자전용도로	소리청	'06.11.13	
기정	소로	3	4	7	국지도로	176	산154 입	산154 입	일반도로	전시관	'14. 07.10	
신설	소로	3	5	5	국지도로	74	1297-33전	1459-89구	일반도로	녹지		
신설	소로	3	6	3	국지도로	156	산79-37입	1-62입	일반도로	종합안내센터		

다)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1	신설(폭원 13m 연장 320m)	카트경기장에 진입도로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2-3	신설(폭원 9m 연장 150m)	종합안내센터 및 카트경기장 연결 도로 신설
-	소로3-5	신설(폭원 5m 연장 375m)	농로 연결 도로
-	소로3-6	신설(폭원 3m 연장 375m)	종합안내센터 진입도로에 따른 도로 신설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49	증4,868	14,717		
기정	3(주1)	주차장	보성읍 봉산리 1265 일원	1,083	-	1,083	'06.11.13	
기정	3(주2)	주차장	보성읍 봉산리 1359-4 일원	8,766	-	8,766	'03.8.16	
신설	3(주3)	주차장	보성읍 봉산리 1297-6 일원	-	증4,868	4,868		

나) 주차장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주3)	주차장	신설(면적 4,868m ²)	종합안내센터를 찾는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3)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4,456	증13,140	137,596		
기정	3(녹1)	녹지	경관녹지	봉산리 산154임일원	72,891	-	72,891	'03.8.16	
기정	3(녹2)	녹지	경관녹지	“	9,981	-	9,981	'03.8.16	
기정	3(녹3)	녹지	경관녹지	“	35,511	-	35,511	'03.8.16	
기정	3(녹4)	녹지	경관녹지	“	3,216	-	3,216	'03.8.16	
기정	3(녹5)	녹지	경관녹지	“	415	-	415	14.7.10	
기정	3(녹6)	녹지	경관녹지	“	2,442	-	2,442	14.7.10	
신설	3(녹7)	녹지	경관녹지	봉산리 1297-6 일원	-	증12,439	12,439		
신설	3(녹8)	녹지	경관녹지	영천리 1-60 일원	-	증701	701		

나) 녹지 결정(변경)(안)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비고
3(녹7)	녹지	신설(면적 : 12,439m ²)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의 변경
3(녹8)	녹지	신설(면적 : 701m ²)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4	1BL	134,055	B-1	18,785	Tea Cottage
			E-2	6,911	제1전시관
			E-3	1,904	차제조공방
			E-4	1,360	전망대
			E-5-1	6,282	식물원
			E-5-2	1,300	초화원
			E-5-3	1,000	화목원
			E-5-4	16,412	녹차밭
			F-1-2	27,419	녹차밭-2
			F-2-1	50,240	녹지
4	2BL	9,981	F-2-7	2,442	녹지
4	3BL	26,183	F-2-2	9,981	녹지
			A-4-1	466	화장실
			D-1	13,609	다목적운동장
			E-1-5	4,562	수변쉼터
			C-1	4,330	상가
4	4BL	30,743	F-2-3	3,216	녹지
			F-1-1	22,651	녹차밭-1
			F-2-4	4,228	녹지
4	5BL	9,735	F-2-5	3,864	녹지
			E-1-1	900	복루
			E-1-2	1,331	소리방
			E-1-3	1,364	대금/가야금방
			E-1-4	3,520	소리연습장
			D-2-1	315	휴게광장-1
4	6BL	3,019	A-2-1	2,305	공용주차장-1
			A-2-2	1,083	공영주차장-2
			A-4-2	331	공중화장실-2
			A-5	762	오수처리장
			D-2-2	428	휴게광장-2
4	7BL	8,856	F-2-6	415	녹지
			A-4	90	관리사무소
4	기타	14,040	A-2-3	8,766	공용주차장-3
4	계	236,612	전지역	14,040	도 로
				236,612	

2)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4	1BL	B-1	134,055	보성읍 봉산리 1212-10번지 일원	18,785	Tea Cottage
		D-2-1		보성읍 봉산리 1206-2번지 일원	6,911	제1전시관
		D-2-2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6,500	제2전시관
		D-3		보성읍 봉산리 1191-3번지	1,904	차체조공방
		D-4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1,360	전망대
		D-5-1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6,282	식물원
		D-5-2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1,300	초화원
		D-5-3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1,000	화목원
		D-5-4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9,912	녹차밭
		E-1-2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27,419	녹차밭-2
		E-2-1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50,240	녹지
		E-2-7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2,442	녹지
		4		2BL	E-2-2	9,981
4	3BL	A-4-1	26,183	보성읍 봉산리 1210번지 일원	466	화장실
		C-1		보성읍 봉산리 1210번지 일원	13,609	다목적운동장
		D-1-5		보성읍 봉산리 1210번지 일원	3,975	수변쉼터
		D-6		보성읍 봉산리 1277-4번지 일원	4,917	청소년수련원
		E-2-3		보성읍 봉산리 산140번지 일원	3,216	녹지
4	4BL	E-1-1	30,743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22,651	녹차밭-1
		E-2-4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일원	4,228	녹지
		E-2-5		보성읍 봉산리 산154번지	3,864	녹지
4	5BL	D-1-1	9,431	보성읍 봉산리 1272번지 일원	766	복투
		D-1-2		보성읍 봉산리 1272번지 일원	1,478	소리방
		D-1-3		보성읍 봉산리 1272번지 일원	1,419	대금/가야금방
		D-1-4		보성읍 봉산리 1272번지 일원	5,768	소리연습장
4	6BL	A-2-2	3,019	보성읍 봉산리 1264번지 일원	1,083	공영주차장-1
		A-4-2		보성읍 봉산리 1359-4번지 일원	331	공중화장실-2
		A-5		보성읍 봉산리 1270번지 일원	762	오수처리장
		D-2-2		보성읍 봉산리 1264번지 일원	428	휴게광장-2
		F-2-6		보성읍 봉산리 1272-2번지 일원	415	녹지
4	7BL	A-4	8,856	보성읍 봉산리 1264번지 일원	90	관리사무소
		A-2-3		보성읍 봉산리 1264번지 일원	8,766	공용주차장-2
4	8BL	C-3	21,220	보성읍 봉산리 1454-3번지 일원	21,220	카트경기장
4	9BL	A-2-3	24,532	보성읍 봉산리 1297-6번지 일원	4,868	공용주차장-3
		C-2-2		보성읍 봉산리 1297-6번지 일원	780	휴게광장-2
		D-7		보성읍 봉산리 1297-6번지 일원	5,744	종합안내센터
		E-1-3		보성읍 봉산리 1297-6번지 일원	7,181	녹차밭-3
		E-2-8		보성읍 봉산리 1297-6번지 일원	4,600	녹지
		E-2-9		보성읍 봉산리 1297-6번지 일원	658	녹지
		E-2-10		보성읍 영천리 1-60번지 일원	701	녹지
4	기타	전지역	19,349	전지역	19,349	도 로
	계		287,369		287,369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공공편의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5	A-3	용도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관리사무소
			5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5	A-4-1 A-4-2	용도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중 공중화장실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변경	5	A-3	용도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관리사무소
			5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기존건물 사용
			색채	· 기존건물 사용
	5	A-4-1 A-4-2	용도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목 중 공중화장실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경사형 지붕 설치(지붕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계획)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2) 숙박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5	B-1	용도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의 숙박시설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변경	5	B-1	용도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의 숙박시설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경사형 지붕 설치(지붕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계획)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3) 상가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5	C-1	용도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사목 중 차관련 제조업소, 차목, 러목 중 노래연습장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4층 이하
폐지				

4) 운동오락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5	C-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공연장 및 제 13호 운동시설 중 다목적 운동장
			5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변경	5	C-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공연장 및 제 13호 운동시설 중 다목적 운동장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경사형 지붕 설치(지붕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계획)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5	C-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건축물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관리사무소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경사형 지붕 설치(지붕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5) 휴양문화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5	E-1-1 E-1-2 E-1-3 E-3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중근린생활시설 마목 중 소리관련 공연장, 사목 중 차제조공방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중 소리관련 공연장
			5	· 60%
			5	· 150%
			5	· 2층 이하
	5	E-2-1 E-2-2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 중 전시장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5층 이하
	5	E-5-2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관광휴게시설 바목 중 전망탑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2층 이하
	5	E-6-1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목 중 식물원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5	E-8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호 수련시설 니목 중 청소년수련원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4층 이하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변경	5	D-1-1 D-1-2 D-1-3 D-3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목 중 소리관련 공연장, 아목 중 차제조공방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중 소리관련 공연장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지붕 : 경사형, 평지붕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5	D-2-1 D-2-2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 중 전시장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지붕 : 경사형, 평지붕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5	D-4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라목 중 전망탑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지붕 : 경사형, 평지붕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변경	5	D-5-1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목 중 식물원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2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지붕 : 경사형, 평지붕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5	D-6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호 수련시설 니목 중 청소년수련원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지붕 : 경사형, 평지붕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5	D-7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별표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휴양문화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다목 중 관람장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면 참조	
형태			· 지붕 : 경사형, 평지붕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주조색(70%이상)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권장 (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3. 총괄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1	보성읍 봉산리	1190	전	215	215	보성군	
2	보성읍 봉산리	1191	전	2,032	2,032	보성군	
3	보성읍 봉산리	1191-1	대	990	990	보성군	
4	보성읍 봉산리	1191-2	대	187	187	보성군	
5	보성읍 봉산리	1191-3	대	4,647	4,647	보성군	
6	보성읍 봉산리	1193	전	157	157	보성군	
7	보성읍 봉산리	1193-1	대	15	15	보성군	
8	보성읍 봉산리	1195	전	175	175	보성군	
9	보성읍 봉산리	1196	전	350	350	보성군	
10	보성읍 봉산리	1196-1	대	1,829	1,829	보성군	
11	보성읍 봉산리	1197	전	179	179	보성군	
12	보성읍 봉산리	1198	천	33	33	보성군	
13	보성읍 봉산리	1199	전	583	583	대한다업주식회사	
14	보성읍 봉산리	1199-1	전	2,714	2,714	보성군	
15	보성읍 봉산리	1199-2	전	415	415	보성군	
16	보성읍 봉산리	1199-3	대	946	946	보성군	
17	보성읍 봉산리	1200	대	436	436	보성군	
18	보성읍 봉산리	1203	전	676	676	대한다업주식회사	
19	보성읍 봉산리	1203-1	전	14	14	보성군	
20	보성읍 봉산리	1203-2	대	778	778	보성군	
21	보성읍 봉산리	1206	전	70	70	대한다업주식회사	
22	보성읍 봉산리	1206-1	전	155	155	보성군	
23	보성읍 봉산리	1206-2	대	1,762	1,762	보성군	
24	보성읍 봉산리	1209	답	1,173	1,173	장기선	
25	보성읍 봉산리	1209-2	대	81	81	보성군	
26	보성읍 봉산리	1209-3	답	472	472	보성군	
27	보성읍 봉산리	1210	대	13,932	13,932	보성군	
28	보성읍 봉산리	1211	전	245	245	보성군	
29	보성읍 봉산리	1212-9	대	131	131	보성녹차리조트주식회사	
30	보성읍 봉산리	1212-10	대	13,592	13,592	보성녹차리조트주식회사	
31	보성읍 봉산리	1212-11	대	1,592	1,592	보성녹차리조트주식회사	
32	보성읍 봉산리	1212-12	대	3,128	3,128	보성녹차리조트주식회사	
33	보성읍 봉산리	1212-13	임	35	35	보성녹차리조트주식회사	
34	보성읍 봉산리	1259	답	216	136	보성군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35	보성읍 봉산리	1260	답	50	50	보성군	
36	보성읍 봉산리	1262	답	453	453	보성군	
37	보성읍 봉산리	1263	답	132	132	보성군	
38	보성읍 봉산리	1264	답	2,373	2,341	보성군	
39	보성읍 봉산리	1264-2	답	106	96	보성군	
40	보성읍 봉산리	1264-3	대	88	88	보성군	
41	보성읍 봉산리	1265	답	555	525	보성군	
42	보성읍 봉산리	1266	답	45	45	보성군	
43	보성읍 봉산리	1270	답	557	557	보성군	
44	보성읍 봉산리	1272	대	9,192	9,192	보성군	
45	보성읍 봉산리	1272-1	대	125	125	보성군	
46	보성읍 봉산리	1272-2	대	76	76	보성군	
47	보성읍 봉산리	1274	답	169	169	보성군	
48	보성읍 봉산리	1275-1	답	1,340	1,340	보성군	
49	보성읍 봉산리	1275-2	답	569	569	보성군	
50	보성읍 봉산리	1275-3	답	590	590	보성군	
51	보성읍 봉산리	1276	전	60	60	보성군	
52	보성읍 봉산리	1277-4	답	1,788	1,788	보성군	
53	보성읍 봉산리	1277-5	답	371	371	보성군	
54	보성읍 봉산리	1277-6	답	63	63	보성군	
55	보성읍 봉산리	1277-7	답	345	345	보성군	
56	보성읍 봉산리	1277-8	전	2	2	보성군	
57	보성읍 봉산리	1277-9	전	84	84	보성군	
58	보성읍 봉산리	1277-10	전	31	31	보성군	
59	보성읍 봉산리	1277-11	전	238	238	보성군	
60	보성읍 봉산리	1277-12	답	13	13	보성군	
61	보성읍 봉산리	1277-13	답	157	157	보성군	
62	보성읍 봉산리	1279	전	162	162	보성군	
63	보성읍 봉산리	1295-1	전	304	304	보성군	
64	보성읍 봉산리	1295-2	도	33	33	보성군	
65	보성읍 봉산리	1295-3	도	53	53	보성군	
66	보성읍 봉산리	1296-1	답	1,665	1,559	보성군	
67	보성읍 봉산리	1296-2	도	119	119	보성군	
68	보성읍 봉산리	1296-3	답	1,527	1,527	보성군	
69	보성읍 봉산리	1296-4	도	13	13	전라남도	
70	보성읍 봉산리	1297-3	답	238	146	보성군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71	보성읍 봉산리	1297-5	답	1,111	964	보성군	
72	보성읍 봉산리	1314-6	천	969	788	국(건설부)	
73	보성읍 봉산리	1358	도	595	595	국(건설부)	
74	보성읍 봉산리	1359-4	잡	1,944	1,597	보성군	
75	보성읍 봉산리	1359-7	잡	46	17	국(재경부)	
76	보성읍 봉산리	1367	잡	130	130	보성군	
77	보성읍 봉산리	1367-1	대	303	303	보성군	
78	보성읍 봉산리	1367-3	잡	51	51	보성군	
79	보성읍 봉산리	1369	구	2,202	1,792	국(농림부)	
80	보성읍 봉산리	산127-1	임	467	370	고순길	
81	보성읍 봉산리	산127-7	임	11	4	국(건설부)	
82	보성읍 봉산리	산 140	임	59,900	2,365	농성구씨보성시랑중과중종	
83	보성읍 봉산리	산140-3	임	3,588	2,862	보성군	
84	보성읍 봉산리	산140-5	임	1,055	411	보성군	
85	보성읍 봉산리	산140-1	임	193	193	보성군	
86	보성읍 봉산리	산140-11	임	1,282	1,282	보성군	
87	보성읍 봉산리	산141-2	임	56	56	보성군	
88	보성읍 봉산리	산142-2	임	342	342	보성군	
89	보성읍 봉산리	산154	임	151,555	141,793	보성군	
90	보성읍 봉산리	산154-3	임	183	183	보성군	
91	보성읍 봉산리	산154-4	임	39	39	보성군	
92	보성읍 봉산리	산154-8	임	3,120	3,120	보성군	
93	보성읍 봉산리	산252	구	77	77	국(농림부)	
94	보성읍 봉산리	산253	구	23	23	국(농림부)	
95	보성읍 봉산리	1297-6	전	15,753	15,577	보성군	
96	보성읍 봉산리	1297-8	전	4,178	3,524	보성군	
97	보성읍 봉산리	1297-20	잡	660	660	보성군	
98	보성읍 봉산리	1297-21	전	1,053	1,006	보성군	
99	보성읍 봉산리	1297-32	도	264	245	보성군	
100	보성읍 봉산리	1297-33	전	673	653	보성군	
101	보성읍 봉산리	1454-2	답	3,421	3,421	보성군	
102	보성읍 봉산리	1454-3	답	211	3,993	보성군	
103	보성읍 봉산리	1454-4	답	1,061	1,009	보성군	
104	보성읍 봉산리	1454-5	답	2,900	2,753	보성군	
105	보성읍 봉산리	1454-6	답	3,082	2,913	보성군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106	보성읍 봉산리	1454-7	답	608	569	보성군	
107	보성읍 봉산리	1454-8	답	775	717	보성군	
108	보성읍 봉산리	1454-9	답	1,298	1,156	보성군	
109	보성읍 봉산리	1454-10	답	349	311	보성군	
110	보성읍 봉산리	1454-11	답	289	251	보성군	
111	보성읍 봉산리	1454-12	답	145	81	보성군	
112	보성읍 봉산리	1454-13	답	40	6	보성군	
113	보성읍 봉산리	1456-1	답	2,410	2,410	보성군	
114	보성읍 봉산리	1459-89	구	4,414	2,338	국(농림수산식품부)	
115	보성읍 봉산리	1459-90	구	3,077	974	국(농림수산식품부)	
116	보성읍 봉산리	1460-48	도	1,874	186	국(농림수산식품부)	
117	보성읍 봉산리	1297-37	답	3,870	374	국(국토교통부)	
118	보성읍 봉산리	1359-1	도	1,404	32	국(국토교통부)	
119	보성읍 봉산리	1359-2	도	137	55	국(국토교통부)	
120	보성읍 봉산리	1454-18	답	499	157	국(기획재정부)	
121	보성읍 봉산리	1454-19	답	617	360	국(국토교통부)	
122	보성읍 봉산리	1454-28	답	209	67	국(기획재정부)	
123	보성읍 봉산리	1454-29	답	269	156	국(국토교통부)	
124	보성읍 봉산리	1459-138	구	1,252	36	국(농림수산식품부)	
125	보성읍 영천리	1-26	도	5,394	29	최명숙	
126	보성읍 영천리	1-59	전	853	853	보성군	
127	보성읍 영천리	1-60	전	3,017	2,768	보성군	
128	보성읍 영천리	1-61	임	570	404	보성군	
129	보성읍 영천리	1-62	임	931	639	보성군	
130	보성읍 영천리	산79-37	임	8,017	38	최명숙	
총 계				386,458	287,369		

화순군 고시 제2015-85호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우리군 도곡면 효산리 169-2번지 일원 고인돌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5. 9. 10

화순군수

1.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다음
2.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화순군청 도시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㉔	고인돌 공원	문화 공원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일원	64,150	-	64,150	전남고시 2006-74호 (2006.5.26)	

2.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4,150	100.0	5,885.18	8,099.18	31동
조경 시설	하천, 연못, 목교	2,346	3.8	-	-	
휴양 시설	전망대 및 숲, 피크닉장	8,893	13.9	-	-	
교양 시설	연구소, 전시관, 야외공연장, 식물원, 문화원, 체험장 등	23,538	36.6	5,699.18	7,913.18	28동
편의 시설	주차장, 화장실, 샤워실/화장실	2,902	4.5	186	186	3동
도로 및 광장	산책로 및 유적탐방로, 돌멘광장, 다목적광장	9,763	15.2	-	-	
녹지 시설	조성녹지	16,708	26.0	-	-	

나. 시설계획 세부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4,150	100.0	5,885.18	8,099.18	31동
조경 시설	소 계		2,346	3.8	-	-	
	1-1	하천	1,710	2.7	-	-	
	1-2	연못	604	1.0	-	-	
	1-3	목교	32	0.1	-	-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 계		8,893	13.9	-	-	
	2-1	전망대 및 숲	5,359	8.4	-	-	
	2-2	피크닉장	3,534	5.5	-	-	
교양 시설	소 계		23,538	36.6	5,699.18	7,913.18	28동
	3-1	연구소 및 전시관	2,012	3.1	1,760	3,974	지하2층, 지상1층 (1동)
	3-2	야외공연장	2,200	3.4	-	-	
	3-3	식물원	2,514	3.9	3,100	3,100	1동
	3-4	장묘문화원	922	1.4	-	-	
	3-5	거석문화원	5,271	8.2	-	-	아시아원, 아프리카원, 유럽원, 아메리카원
	3-6	어로체험장	1,693	2.6	-	-	
	3-7	선사생활체험장	4,920	7.7	609.23	609.23	19동
	3-8	농경생활체험장	2,472	3.9	-	-	
	3-9	고인돌 및 주거발굴체험장	1,135	1.8	229.95	229.95	7동
	3-10	원시사냥 체험장	399	0.6	-	-	
편의 시설	소 계		2,902	4.5	186	186	3동
	4-1	주차장	2,419	3.8	-	-	77면 (장애인3면, 대형3면포함)
	4-2	화장실	199	0.3	154	154	2동
	4-3	샤워실/화장실	284	0.4	32.0	32.0	1동
도로 및 광장	소 계		9,763	15.2	-	-	
	-	산책로 및 유적탐방로	6,148	9.6	-	-	도로결정조서 참조
	5-1	둘레광장	2,651	4.1	-	-	
	5-2	다목적광장	964	1.5	-	-	
녹지 시설	소 계		16,708	26.0	-	-	
	-	조경녹지	16,708	26.0	-	-	파고리6개소

다. 도로계획 세부조서

구분			규모				기능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합 계			-	2,198	6,148	-	-	-	-	
신 설	소로	2	1	8	77	615	연결로	소로3-1	효산리172-1	보행자도로
	소로		1	5	260	1,341	국지도로	효산리173-4	효산리178-42	일반도로
	소로		2	5	90	448	연결로	월곡리672	효산리169-3	보행자도로
	소로		3	5	42	167	연결로	소로3-1	효산리169-2	보행자도로
	소로		4	5	86	344	연결로	효산리1345	소로3-1	보행자도로
	소로		5	3	7	23	연결로	소로3-4	효산리1332-4	보행자도로
	소로		6	2	69	139	연결로	소로3-9	효산리172-2	보행자도로
	소로		7	2	52	103	연결로	소로3-9	소로3-6	보행자도로
	소로		8	2	40	79	연결로	소로2-1	소로3-9	보행자도로
	소로		9	2	122	244	연결로	소로2-1	효산리172-1	보행자도로
	소로		10	2	64	130	연결로	소로3-3	소로2-1	보행자도로
	소로		11	2	37	74	연결로	소로3-12	소로3-3	보행자도로
	소로		12	2	121	243	연결로	소로3-2	효산리169-3	보행자도로
	소로		13	2	336	673	연결로	소로3-18	효산리173-2	보행자도로
	소로		14	2	27	54	산책로	소로3-14	월곡리503-1	보행자도로
	소로		15	2	19	39	산책로	소로3-14	월곡리503-1	보행자도로
	소로		16	2	129	262	산책로	소로3-14	소로3-20	보행자도로
	소로		17	2	59	123	산책로	소로3-17	소로3-21	보행자도로
	소로		18	2	43	92	산책로	소로3-18	소로3-14	보행자도로
	소로		19	2	70	140	산책로	소로3-18	소로3-12	보행자도로
	소로		20	2	25	51	산책로	소로3-20	월곡리672	보행자도로
	소로		21	2	34	67	산책로	소로3-2	소로3-23	보행자도로
	소로		22	2	136	312	연결로	효산리1345	효산리1345	보행자도로
	소로		23	2	114	219	연결로	효산리1345	효산리1346	보행자도로
	소로		24	1.2	46	55	산책로	소로3-2	효산리173-1	보행자도로
	소로		25	1.2	54	65	산책로	소로3-14	효산리173-1	보행자도로
소로	26	1.2	39	46	산책로	소로3-14	효산리173-1	보행자도로		

강진군 공고 제2015-365호

강진 군계획시설(중로 2-10)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강진군 고시 제2009-22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강진 군계획시설(중로2-10)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서류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10

강진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진읍 평동리 257-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 나. 명 칭 : 중로 2-10(동화주유소~3.1탑 구간)
3. 사업시행 규모 : L=560m, B=15m

규 모				기 능	연장(m)	면적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538	434	중 1-11	중 2-1	일반도로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강진군수
 - 나.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일 : 2009. 6.
 - 나. 준공 예정일 : 2017. 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세목 조서 : “다음”
7. 관련설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8.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015. 9. 10. ~ 2015. 9. 25. (15일간)
 - 나. 장 소 : 강진군 지역개발과 도시경관팀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지역개발과 도시경관팀(061-430-3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유권 및 권리 명세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상 소유자		비고
				총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합 계				17,988	8,913			
1	강진읍 평동리	257-25	답	385	385		강진군	
2	강진읍 평동리	262-2	구거	152	2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강진읍 평동리	262-3	답	375	375		강진군	
4	강진읍 평동리	262-5	답	462	462		강진군	
5	강진읍 평동리	263-26	답	5	5		강진군	
6	강진읍 평동리	264-15	답	31	31		강진군	
7	강진읍 평동리	264-16	대	71	71		강진군	
8	강진읍 평동리	264-17	대	141	141		강진군	
9	강진읍 평동리	264-18	답	12	12		강진군	
10	강진읍 평동리	264-9	답	196	196		강진군	
11	강진읍 평동리	266-5	답	608	608		강진군	
12	강진읍 평동리	266-7	답	414	414		강진군	
13	강진읍 평동리	273-2	구거	152	15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4	강진읍 평동리	273-3	대	162	162		강진군	
15	강진읍 평동리	273-5	대	72	72		강진군	
16	강진읍 평동리	273-8	대	16	16		강진군	
17	강진읍 평동리	273-9	대	136	136		강진군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상 소유자		비고
				총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8	강진읍 평동리	274-1	대	13	13		강진군	
19	강진읍 평동리	274-2	대	27	27		강진군	
20	강진읍 평동리	275-2	구거	10	1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1	강진읍 평동리	275-3	대	10	1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48-12	이철수	
22	강진읍 평동리	275-6	대	59	5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75	김유웅	
23	강진읍 평동리	275-7	대	43	25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75	김유웅	
24	강진읍 평동리	337	구거	6,039	185		국(농림부)	
25	강진읍 서성리	58-3	도	284	284		국(재정경제부)	
26	강진읍 서성리	58-8	도	7	7		강진군	
27	강진읍 서성리	58-9	도	10	10		국(건설부)	
28	강진읍 서성리	58-10	도	112	112		국(건설부)	
29	강진읍 서성리	58-12	도	460	94		국(건설교통부)	
30	강진읍 서성리	58-13	대	83	83		강진군	
31	강진읍 서성리	58-29	대	76	76		국(건설부)	
32	강진읍 서성리	58-30	대	155	155		국(건설부)	
33	강진읍 서성리	58-47	도	230	56		국(건설부)	
34	강진읍 서성리	58-48	도	42	42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767	(유)대동주택건설	
35	강진읍 서성리	58-51	도	48	48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767	(유)대동주택건설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상 소유자		비고
				총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36	강진읍 서성리	58-61	대	42	42		강진군	
37	강진읍 서성리	58-62	대	1	1		강진군	
38	강진읍 서성리	59-2	도	245	245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12	양신식	
39	강진읍 서성리	59-6	대	97	97		강진군	
40	강진읍 서성리	59-7	대	15	15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59-3 한별어린이집	최정인	
41	강진읍 서성리	60-2	도	628	51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430	김정식	
42	강진읍 서성리	61-1	도	360	36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57	김해김씨경과구서당 중증	
43	강진읍 서성리	61-3	대	130	130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16-6 외	윤정웅 외 5명	
44	강진읍 서성리	62-1	도	99	99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12	최경현	
45	강진읍 서성리	62-4	도	99	99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길 104-401호 (봉천동, 산장맨션)	김향임	
46	강진읍 서성리	62-5	대	21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길 104-401호 (봉천동, 산장맨션)	김향임	
47	강진읍 서성리	63-9	답	801	801		강진군	
48	강진읍 서성리	64-8	도	271	164		강진군	
49	강진읍 서성리	65	도	83	83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중증재산)김종진	무등기
50	강진읍 서성리	333-10	대	30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114-604 외	이경미외9인	
51	강진읍 서성리	333-12	대	211	2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114-604 외	이경미외9인	
52	강진읍 서성리	333-4	구거	281	1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3	강진읍 서성리	334-14	답	273	273		강진군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상 소유자		비고
				총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54	강진읍 서성리	334-13	대	19	19		강진군	
55	강진읍 서성리	334-5	구거	205	1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6	강진읍 서성리	577-4	도	225	225		국(건설부)	
57	강진읍 서성리	577-7	종	24	4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63-5	에덴교회	
58	강진읍 서성리	577-8	도	496	496		국(건설부)	
69	강진읍 서성리	578-12	도	2,234	297		국(건설부)	